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국가인권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도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진영중** (성공회대학교 영어과 교수, 인권평화센터 소장)

공동연구자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고은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영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임은주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서영표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연구원)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2007년 12월 14일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머 리 말	1
1부. 학생인권에 관한 국제인권준칙	4
I. 참고한 기준	4
II.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의 열쇠말	7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8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10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12
4. 감당할 만한 교육	15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19
6. 아동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21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22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25
9.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26
10. 권리구제에 대한 보장	27
2부. 학생인권 침해 사례와 학생인권지침	30
I. 학생인권 침해 유형	30
II. 학생인권지침(안)-학생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지침 .. 50	
I. 전문(全文)	51
II. 총칙	54
1. 목적	54
2. 용어의 정의	54
3. 학교당국의 기본 의무	55
4. 학생 인권 지침의 이행을 위한 권한	56
III. 지침의 기본 원칙	58
IV. 학생의 기본적 권리	60
V.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 보장	62
1.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62
2. 차별 금지	65
3. 교육에 대한 권리	74
4. 학생 자치와 참여	81
5. 신체의 자유	85
6. 사상, 양심, 종교	88
7. 학생의 표현	90
8. 사생활과 개인정보	95

9. 정보 접근	100
10. 건강	103
11. 안전	109
12. 쉼, 놀이, 문화	111
13. 사건 조사와 징계	113
14.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118
15. 권리를 지킬 권리	122
VI. 인권침해 발생 시 해결 조치	124
VII.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	125
VIII. 학생 인권 수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	127
III. 학생인권지침에 비추어본 사례 분석	128
1. 일방적 규정 개악과 집회 원천봉쇄	128
2. 교사의 언어폭력	131
3. 성폭력 피해 학생 실명 공개	132
4. 장애학생의 교육 배제	134
5. 10대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136
6. 폐교 위기에 몰린 공고	138
7. 강제 보충수업 등 거부한 교사 해임	140
8. 일방적 두발규정과 강제이발	142
9. 이름뿐인 학생회	145
10. 학교의, 학생에 대한 특정 종교 강요	146
11. 국가에 대한 충성 강요	149
12. 교내 집회 금지	150
13. 별 걸 다 묻는 설문조사	153
14. 학교의 생체정보 수집	155
15. 학생의 자기정보 접근 제한	156
16. 성장을 위한 정보	157
17. 위생 불량 급식 사고	158
18. 등하곳길 위협받는 안전	160
19. 통제받는 쉬는 시간	161
20.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 퇴학	163
21.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에 눈감은 학교	165
22.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에 눈감은 학교	167
23. 폭력 중지시킨 학생 퇴학	170
IV. 학생인권지침 관련한 법령 모음	172
1.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172
2. 차별금지	174
3. 교육에 대한 권리	183
4. 학생자치와 참여	187
5. 신체의 자유	189
6. 사상, 양심, 종교	191

7. 학생의 표현	192
8. 사생활과 개인정보	194
9. 정보접근	197
10. 건강	199
11. 안전	206
12. 쉼, 놀이, 문화	208
13. 사건의 조사와 징계	209
14.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211
15. 권리를 지킬 권리	217

3부.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해외 사례	218
I. 참여	221
II. 차이	224
III.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	229
IV. 권리구제 (UN 아동권리협약 12조)	231
V. 감당할만한 교육	235
VI. 개인과 공동체	238
VII. 연대와 네트워크	240
VIII. 사회권	242
<클리브스 학교(the Cleves School)의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 사례>	244

머 리 말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존엄성과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문장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명제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곧 바로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고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회적이 관계 속에서만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의미가 실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 명제로서의 인권도 사회적인 다양한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의미가 있는 법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많이 거부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인권자체가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과거가 있다. 사회적인 관계는 모두 구체적이고, 특수한 관계들이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가 보편적인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한 관계에 속한 인간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인권을 여러 가지로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과제를 받아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가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로 본 보고서가 나왔다.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는 전체 연구 과제의 기획과 진행 및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해외 사례를 담당하였다. 인권연구소 “창”은 학생인권에 관한 국제인권 준칙을 정리했으며, 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 침해 사례와 학생인권지침을 만들어 발로 뛰면서 만들어 냈다.

학생인권에 관한 국제인권준칙을 제 1부에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논의를 인권의 보편성에서 출발하기 위해서였다. ‘학생’, ‘아동’, ‘청소년’으로서의 특수한 입장보다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학생 인권에 접근하고자 했다. 사실 인권에 관한 “문서의 바다”라 할 만큼 국제인권준칙은 방대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구체적인 학생인권으로 우리를 인도해줄 수 있는 10개의 핵심영역을 추려서 학생인권의 보편성을 정리하였다. ‘학생’이라는 구체적인 사회적 존재도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존재와 중첩되어 논의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또한 학생이라는 사회적인 존재는 다른 사회적 존재와 함께 학생의 사회적인 보편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인권’도 학생이라는 특수한 입장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 ‘아동’ 그리고 ‘교육’이라는 더 넓은 범주에서

함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논의에 이어서 제 2부에서는 학생인권 침해사례와 학생인권지침을 실었다. 이 부분은 본문에서도 설명하듯이 “국제권리장전과 아동권리 협약 등 국제인권 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들을 학교 현장에 대입한 세밀화다.” 하지만 보편적인 인권기준을 우리의 학교현실에 대입한 세밀화가 “학생인권 침해 유형”으로 시작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냉혹한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학생 인권 침해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를 통하여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의 인권피해 사례를 사전에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이 지침서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준수되어야 할 학생 인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인권이 증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3부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실었다. 학생/청소년을 성인과 똑 같은 존엄성을 가지는 사회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학생/청소년의 권리를 보편적인 인권개념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동, 서양을 막론하고 있어왔다. 하지만 영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학생들이 보편적인 권리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실천사례들을 이해하기를 기대한다. 학생이나 아동의 권리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 공동체에서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다. 그러므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학교안에서 학생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제 1부, 2부, 3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하듯이 학생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주체로 설 수 있기 위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포괄적 권리에 관한 것이다.

제 2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도 청소년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많은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령은 최소한의 장치이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생/청소년 “권리의 법제화와 제도화는 실제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동반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며, 자원이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는 가능하지 않다. 즉 아동인권의 실현은 아동에게 자원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의사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다양한 역량강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인권의 보편성을 제 1부에서 국제인권준칙들에 나타난 핵심 주제어를 통하여 정리하였고, 이것을 다시 구체적인 우리의 학교현실에 적용하여 인권침해 사례와 이러한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학생인권 지침(안) - 학생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지침”으로 제 2부에서는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지침이 왜곡되고 억압적인 우리 학교현실을 보편성에 입각하여 제자리를 잡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영국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 3부에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최대한의 자료 검토와 사례분석 및 모범사례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보편적인 인권의 바다에서 건져낸 학생인권을 위한 핵심적인 주제어를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에서 비추어서 최대한의 학생인권에 대한 사례와 고려해야할 경우를 제시하였다. 보편적인 인권의 바다가 구체적인 학교로 흘러넘치는 자료와 논의의 저수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 연구팀은 이 보고서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원한다. 인권은 정치, 사회적인 관점을 요구한다. 본 연구팀은 우리의 관점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자료를 집대성한 본 보고서를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재구성하여 구체적인 학교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독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드린다. 국가 인권위원회도 본 보고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각급 학교에서 살아 숨 쉬는 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하기를 기대한다. 이때 본 보고서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 있는 존재로 불러내는 주문” 역할을 할 것이다.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헌신적으로 연구에 매진한 연구진에 깊은 존경을 보내며, 본 연구가 가능하게 해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뿐만 아니라 본 보고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가신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맡아준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의 이선주님께 특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소장 **진영중**

1부. 학생인권에 관한 국제인권준칙

국제인권준칙은 ‘인간의 권리’를 다루는 것이기에 그 어느 것도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서의 바다”로 일컬어지는 국제인권준칙의 방대함 속에서 집중점을 찾을 필요가 있기에 ‘아동’, ‘청소년’, ‘교육’을 열쇠말로 하여 현 학교 인권 실태를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지침을 제공하는 관련항목을 추렸다.

아동에 집중한 ‘국제인권조약, 선언, 권고, 행동프로그램, 보고서 및 지침’을 참고했으며, 같은 내용이 반복강조되기에 중요성이 높은 것을 우선으로 했다. 국제인권준칙이란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박하게 요구되는 주제와 대상에 대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에 여기서 제시된 목록은 예시에 불과하다.

한정될 수 없는 기준 목록 중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이정표라 할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이다. 협약은 아동의 인권을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 체계와 기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이점은 특히 학교에 있어서 그러하다. 학교는 아동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인격적 및 사회적 환경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아동’(child)은 협약의 기준에 따라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일컫는 말이고, 맥락상 강조돼야 할 경우에만 학생 또는 청소년이라 했다.

I. 참고한 기준

- 1948 세계인권선언, 특히 26조 교육의 권리
- 1960 유네스코, 교육에서의 차별방지협약
- 1966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규약, 특히 13조 교육의 권리
- 1966 유엔시민·정치적권리규약, 특히 17조 프라이버시, 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24조 아동의 권리
- 1966 유네스코/ILO 교사의 지위에 대한 권고
- 1973 고용 최저 연령에 관한 ILO 138호 조약
- 1974 유네스코, ‘교육: 국제이해, 협력 및 평화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련된 교육에 관한 권고’
- 197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특히 10조 교육분야에서의 남녀평등

1982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7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의 금지’

1985 소년사법; 유엔 소년사법을 위한 최소 규범 기준(베이징 규범)

1989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12 ‘여성에 대한 폭력’

1989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17 ‘아동의 권리’

1990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에 관한 세계 선언”

1990 청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 가이드라인(Riyadh Guidelines) 유엔총회 결의안 45/112

1990 자유를 상실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엔 규범, 유엔총회 결의안 45/113

1990 제1차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 ‘국가행동계획’ 개발 약속;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에 관한 세계 선언 및 1990년대의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1992 유엔인권위원회,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 방지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결의안 1992/74) 교육 제 18-23항.

1992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20, ‘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금지’

1993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비엔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

1993 유엔인권위원회, ‘아동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결의안 1993/79, annex

1993 인권교육 10년, 유엔 총회 결의안 48/127, 비엔나 선언 78-82항에 기초 인 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1996.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권고

1998 유네스코,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리스본 선언

1999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와 철폐를 위한 즉각 행동에 관한 ILO 182호 조약

1999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3 ‘교육의 목적’

1999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1 ‘초등교육에 관한 행동계획’

1999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2000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4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2000 유네스코 Dakar 행동 구조(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우리의 집단적 약속 지키기, 세계 교육 포럼에서 채택

2000 유엔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0 유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0 ILO, 모성보호에 관한 183호 조약

2000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0/6)

2001 유엔사무총장;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한 연구 착수, 유엔총회 결의안 56/138

200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교육의 목적’

2001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연례보고서(E/CN.4/2001/52)

200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

2002 아동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기;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2002.1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2/60)

2002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5 ‘물에 대한 권리’

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3 ‘HIV/AIDS와 아동의 권리’

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청소년의 건강’

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아동권리협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권고

2003.1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3/9)

2004 유엔사무총장 세계청소년보고서 2005에서의 권고(A/60/61-E/2005/7)

2004.1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4/45)

2004.12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5/50)

2004.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25 ‘잠정적 특별 조치’

2004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XXX’

2005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6 ‘모국 외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처우’

2005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8 ‘노동의 권리’

200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 ‘유아기의 아동권 이행’

200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체벌과 기타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벌형태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200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9 ‘장애아동’

2006.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7-2011)

2006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6/45)

200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0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

기타:

유니세프, 아동친화적 학교(child friendly school)

WHO, 영양 친화적인 학교(NFSI: Nutrition friendly schools Initiative)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 공동캠페인 (FRESH: Focusing Resources on Effective School Health: A FRESH Start to Improving the Quality and Equity of Education)

II.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의 열쇠말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인권에 관한 4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일반원칙은 협약의 전반적인 해석지침이자 모든 권리 영역에 적용된다.

첫째, 비차별의 원칙(2조):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서는 안 된다. 이는 “아동 자신과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둘째, 아동 최상의 이익(3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학교 등에 모두 적용된다.

셋째,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6조):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 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가능한 한 최대 한”이라는 의미에서 “발달”은 질적인 면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12조):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아동의 의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정당하게 존중돼야 한다. 이 조항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상의 일반원칙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국제인권준칙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이 원칙에 기반하여 유니세프는 ‘권리에 기반한 아동친화적 학교의 특성 체크 리스트’¹⁾를 개발했다. 이 체크 리스트를 참조하고 연구자들간의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열쇠말 10가지를 뽑아 다양한 국제인권준칙들을 배치하였다.

1) www.unicef.org/lifeskills/files/CFSchecklist.doc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의 열쇠말 10가지>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4. 감당할 만한 교육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6.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9.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10. 권리구제에 대한 보장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속에서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이다.

•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제13조)

•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발전.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유엔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과 강화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과 강화.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선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행, 평화, 관용, 성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과 강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9조 1항)

• 세계인권대회는 인권교육, 훈련과 공공정보가 공동체들 사이의 안정되고 조화로운 관계의 신장과 성취, 상호이해와 관용 및 평화의 조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교육의 방향을 인간개성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

중의 강화에 맞추어야 한다. 국제인권법규와 지역인권법규들에 규정된 것처럼, 인권 교육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기여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한 공통된 이해와 자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정의를 포함해야 한다.(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IV부 인권교육)

- 이상과 같은 교육의 목적은 모든 아동에게 부여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아동의 평등 및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려 한다.…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협약 제29조 1항에서 인정된 가치의 준수는 학교가 용어상의 모든 의미에서 아동우호적이어야 하며 존엄성에 대한 전적인 존중을 견지해야 함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1항, 8항)

- 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한다. 아동은 부모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단순히 관심의 대상이지도 않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47항)

-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하여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적절한 지도와 훈육을 받는다면 완전하고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역량이 있는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7항)

- 교육은 기본적인 권리다. 따라서 교육을 ‘인간 자본’(human capital)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간 자본 개념은 각 인간에 내재된 가치를 문제시하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서 교육의 역할을 손상시킨다. 인간 자본의 시장가치 사상은 경제가 인간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생각을 뒤엎는다. 인간-자본 접근은 교육을 단지 경제적으로 관련된 지식·기술·능력을 지향한 것으로 만들며 인권의 가치를 손상시킨다.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부모됨 또는 정치적 참여를 준비하게 하고 사회적 결집과 관용을 강화하게 해야 한다. 교육의 생산력주의 관점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의 상당부분을 고갈시킨다. “인간 지식의 생산적 유용성”은 교육의 많은 목적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 생산적 유용성으로 교육을 단순화하는 것은 인간 인격의 완전한 발전으로 교육을 정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며, 지식을 거래하기 보다는 지식을 공유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인권교육의 기초를 창조하는 것을 방해하며, 경쟁보다는 협력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한다.(유엔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0/6 67-70항)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는 아동의 ‘권리’이다.

-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 아동이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와 이를 적당한 비중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모 및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아동을 위해 일하는 다른 성인들은 신뢰, 정보공유, 경청하는 역량과 의사결정과정 등에서 아동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지도에 기반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8항)

- (아동과의)협약이 유의미하려면 자료 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교적 큰 도전이 아니며, 그들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동의 견해를 듣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그를 통해 국가가 아동과 상호 교류하고 아동을 위한 국가의 행위가 아동 권리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협약 12조는 지속적이고 진행형인 제도를 요구한다. 아동의 참여 및 아동과의 협의는 명목상의 것이어서는 안되며 대표적 견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12항)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제12조가 아주 어리거나 좀더 나이가 많거나 불문하고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적용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권리의 보유자로서, 가장 어린 아동일지라도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견해와 감정을 표현할 권리는 가정 및 아동의 공동체에서의 아동의 일상생활에 정착되어야 한다. …참여권의 달성은 성인이 아동중심적인 자세를 취하고, 유아에게 귀 기울이며, 그들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성인은 유아의 이익, 이해의 정도와 선호하는 의사소통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인내심과 창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 14항)

협약 5조는 “능력발달”의 개념을 아동이 그들의 권리 및 권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 지식, 능력 및 이해를 점진적으로 획득하는 성숙과 학습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능력발달은 긍정적이고 가용한 과정으로 여겨져야 하며, 아동의 자율과 자기 표현을 제한하는 권능을 부여하는 아동의 상대적인 미성숙과 사회화의 필요를 지적하여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온 권위적 관행에 대한 변명이어서는 안된다. 부모 그리고 기타의 사람들은 대화 및 예를 보임으로써 참여권 및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아동중심적인 방식으로 ‘감독과 지도’를 하는 것이 장려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 17항)

- 빈곤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의 그러한 조치의 개발에 적절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 적절한 경우에 정보가 청소년에게 인지적 방식으로 이해되고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정보분석에 참여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12-13항)

- 청소년 비행방지는 사회의 범죄 예방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인류애적 지향성과 인생관을 채택함으로써 청소년은 범죄를 야기하지 않는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성공적인 청소년 비행방지는 이른 아동기부터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청소년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전 사회의 노력을 요구한다. 항상 아동을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청소년은 사회속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파트너쉽을 가져야 하며 사회화 또는 통제의 단순한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기본원칙). 비행방지 정책과 과정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의뢰, 청소년 자조, 피해자 보상 및 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9-h항). 교육과정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참여자로서 청소년의 참여(21-c항). 학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과 규범을 증진해야 한다. 학생들은 훈육정책을 포함하여 학교 정책을 형성하는 기구들과 의사결정에서 대표되어야 한다(31항). (청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 Riyadh Guidelines)

- 위원회는 협약 12조에 따라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재개정하라. 그리고 법원, 행정기구, 학교 및 교육기관의 징계과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를 더욱 존중하고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 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의견청취와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 권고 35항)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학교는 아동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 어떤 아동도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아서 안 되며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세계인권선언 제26조)

- (교육에서) “차별”이라 함은 특히 (a)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일정 유형이나 단계의 교육에 관한 접근을 배제시키는 것, (b)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을 저급한 수준의 교육에만 한정시키는 것, ... (d)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유네스코 교육 차별금지협약 제1조)

- (교육에서) 차별을 불식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a) 교육에서 차별과 관련된 모든 법률조항 및 행정지침을 폐지하고, 관련된 모든 행정관행을 중단한다. (b)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을 통하여 학생이 교육기관에 입학할 때 차별이 없을 것을 보장한다. ... (d) 공공당국이 교육기관에 부여하는 지원의 형태에 있어서, 학생들이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한 제한이나 특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e) 자국 내 외국인 거주자에게 자국민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유네스코, 교육상의 차별금지협약 제 3조)

- 같은 단계의 모든 공교육 기관에서의 교육수준이 동등하도록 보장하며,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관련된 여건들 또한 동등하도록 보장한다.(유네스코, 교육상의 차별금지협약 제4조 (b))

-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다. 다양성은 다른 문화간의 사회생활에서 명백히 나타나며 사람간의 차이를 존중한다. 발전이란 민주화와 반차별이 존엄한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사람들이 경험해야 하는 집단적인 학습 과정이다. 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학생 자신의 문명과 다른 문명을 존중하게 하는 것이고, 다문화적 관계에 대한 토론이 모든 교육체제의 자연스런 특질이어야 한다.(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70-71항)

- 모든 아동은...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제24조 1항)

-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 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b)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 건물 및 장비의 수혜, (c)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d)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g)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 청소년기는 성적 및 생식능력의 성숙을 포함한 빠른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이다. 차별의 근거는 또한 청소년들의 성적지향과 건강상태도 포함한다. 차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학대 및 다른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더욱 취약하며, 그들의 건강과 발달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2항, 6항)

- 비차별의 원칙은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들의 권리의 인정과 실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개별아동과 아동집단을 찾아낼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특히 차별이나 잠재적인 차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될 수 있는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차별을 해결하는 데는 입법, 행정,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변화 및 태도 변화를 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12항)

- 비시민권자들, 특히 시민권이 없는 노동자의 자녀와 배우자와 관련하여 다층적 차별에 관한 문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비시민권자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향유, 특히 교육, 주거, 고용 및 건강과 관련한 영역에서의 권리 향유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공공교육기관은 당사국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비시민권자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에게 개방할 것을 보장한다. 초·중등 교육에서, 또한 고등 교육에의 접근 가능성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한 비시민권자의 격리된 학교 교육과 비시민권자의 처우에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피한다.(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일반권고 XXX 8항, 29-31항)

- 학부모, 아동, 교사 및 일반대중을 겨냥하여 인식 향상과 교육 운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학교, 여가시설을 포함하여 공공 건물과 공공 영역에 대한 장애아동의 물리적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라. 또한 유치원 및 초·중·고 단계에서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확대하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 권고 51항)

-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당사국 관할권 내의 모든 이에게 차별없이 접근가능하여야 한다.

... 모든 이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어떠한 금지된 근거에 의한 차별 없이 교육은 법률상·사실상 접근가능하여야 한다(6항). 차별의 금지는 점진적 실현이나 자원의 가용성에 의해 제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교육의 모든 측면에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금지된 모든 차별의 근거를 포괄한다(31항). 비차별 원칙은 타국민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학 연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적용됨을 확인한다(34항). 서로 다른 지리적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상이한 교육의 질을 야기하는 지출 정책의 심각한 불균형은 규약상 차별을 구성할 수 있다(35항). 당사국은 사실상의 차별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정책, 기관, 프로그램, 지출 형태 및 기타 관행을 포함하여 교육을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 교육 자료는 규약에서 금지된 차별의 사유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37항).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 오늘날에는 많은 국가의 학교 프로그램이 장애인이 일반교육체제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규칙은 “국가는 장애아동·유소년·성인이 초등·중등·고등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규학교에서 장애 아동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를 훈련하고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당해 아동이 사용해야 하고 전반적 사회환경 속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하는 수화가 별도의 언어로 인정돼야 한다.(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5, 35항)

- 여아의 교육권은 젠더(gender) 문제와 따로 다뤄질 수 없다. 젠더 문제는 여성의 권리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남성다움’을 그럴 필요성을 부과한다. 새로운 형태의 남성다움이란 평등, 정의, 연대에 대해 보다 민감하며 책임지며 적극적인 것을 말한다.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6/45, 3항)

- 젠더에 근거한 차별이 소녀들의 성적활동에 대한 금기, 부정적 혹은 비판적인 태

도와 결합되어, 종종 그들이 예방적 조치나 기타 서비스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도 우려상황이다.…협약 2조(비차별조항)에서의 “기타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에서 “기타의 신분”은 아동이나 그들의 부모의 HIV/AIDS 감염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HIV/AIDS와 관련된 차별과 낙인찍기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3, 8-9항)

4. 감당할 만한 교육

모든 교육이 선한 것은 아니다. 아동의 과중한 학습노동, 상급학교 진학에 불모로 잡힌 교육, 체벌과 혹독한 훈육에 의지한 교육,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교육 등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정서적·물질적·문화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아동이 감당할 만한 교육이란 아동에게 적합하며 아동의 권리 실현을 증진할 수 있는 내용과 질을 가져야 한다.

- 아동은 배우는 능력을 타고 났지만 (잘못된 교육에 의해) 아동의 학습 능력은 손상되고 때로 파괴될 수 있다. 아동친화적인 학교는 배움과 학습자에 초점을 둔 학교 문화, 교수방법 및 교과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로서의 아동의 성장 능력을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지한다.(유니세프, 아동친화적인 학교)

- 아동의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권리: “휴식 및 여가,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 및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협약 31조의 이행에 당사국 등이 충분히 유의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놀이는 초기 유년기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아동은 혼자 놀든, 혹은 다른 아동과 함께 놀든 간에 놀이를 통해 즐기는 동시에 자신의 현재 능력에 도전한다. 초기 유년기에서의 창조적인 놀이와 탐구적인 학습의 가치는 널리 인정되었다. 그러나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권리의 실현은 흔히 아동중심적이고 안전하며 지원과 격려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과 접촉하고 놀며 상호작용할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방해받았다. …놀이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또한 경쟁적인 학업에 의해서도 좌절될 수 있다.…마을, 여가와 놀이시설에 대한 계획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아동이 그들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당사국이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권리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자원(인적 및 물질적)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배치할것을 장려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 34항)

-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

한다.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 권고 52-53항)

- 아동의 입장에서 교육의 수용성(acceptability)을 보면 이는 부모의 교육선택의 자유를 넘는 문제이다. 학교는 아동친화적이고 아동권리에 입각한 것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얻으며, 논쟁하고 반대하고, 시험하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창조적이고 자발적이며,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어야 한다.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1999/49 67항)

- 유엔자유권위원회는 교육 또는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체벌을 포함한 신체형에까지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의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7, 2항)

- 어떤 아동이나 청소년도 가정, 학교 또는 기타 어떤 기관에서도 가혹하거나 모욕적인 교정 또는 처벌 조치를 받아서는 안된다.(청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 Riyadh Guidelines 54항)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6년까지 100개국 이상이 학교 및 아동에 대한 형사체제에서 신체적 처벌을 금지할 것으로 생각한다(5항). 본 위원회는 체벌의 사용이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의 징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님을 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분명히 확인하였다(7항). 본 위원회는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기 위하여 법제화하거나 법률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8항). 본 위원회는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을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된 모든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부분은 손이나 도구-채찍, 막대기, 벨트, 신발, 나무 손가락 등으로 때리는 것(“찰싹찰싹 때리는 것”, “뺨을 때리는 것, 혹은 철썩하고 때리는 것”,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예를 들면, 차는 것, 혼드는 것 혹은 아동을 던지는 것, 할퀴는 것, 꼬집는 것, 무는 것,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뺨을 때리는 것,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화상을 입히는 것, 데게 하는 것 혹은 억지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신체적인 처벌은 항상 굴욕적이라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잔혹하고 굴욕적이어서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기타 비 물리적인 형태의 처벌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위협하는 것, 겁을 주는 것 혹은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11항). 본 위원회는 아동의 양육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잦은 물리적인 행동과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일정한 정도의 고통, 불편함 혹은 굴욕을 유발하는 고의적이고 징벌적인 힘의 사용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성인으로서 우리는 보호를 위한 물리적인 행동과 징벌적인 폭력과의 차이를 알고 있다. 아동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 이러한 구별을 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모든 국가에서 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간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비징벌적이며 필요한 물리력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14항). 아동 혹은 기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촉발된 물리력의 사용과 처벌을 위한 물리력의 사용간의 분명한 구별이 존재한다. 필요한 최단기간동안의, 필요한 최소한의 힘의 사용이라는 원칙은 항상 적용되어야만 한다. 제재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사용되는 모든 방법이 안전하고, 상황에 대해 비례적이며, 통제의 형태로서 고통을 고의적으로 가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상세한 지침과 훈련이 또한 필요하다(15항). 더욱이 협약 제28조 2항에서는 학교규율을 언급하고 있으며 당사국들에게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19항). 유엔사회권위원회도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1999년의 일반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본위원회의 견해로는 체벌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양규약의 각 전문에 기술된 국제인권법의 근본적인 지도원칙, 즉 개인의 존엄성에 위배된다. 학교 규율의 다른 측면,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 역시 인간존엄성에 위배될 수 있다”(22항). 유럽인권재판소는 일련의 판결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에 대해 점진적으로 유죄판결을 해왔으며, 첫 번째는 형사체제에서 두 번째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에서, 가장 최근엔 가정에서의 체벌을 인권침해로 결정했다(23항). 아동의 발달상의 필요는 존중되어야만 한다. 아동은 성인들의 말뿐 아니라 성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학습한다.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이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굴욕을 준다면 성인들은 인권의 경시를 보여주며 이러한 것들이 갈등의 해결이나 행동의 변화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라는 강력하고 위협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46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 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이를 주목한다. 위원회는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의 마찬가지로의 견해를 보라, E/C.12/1/Add.79, para 36].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과 관련된 결정을 개별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형태의 체벌이 수용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를 조성하려는 교육적 조치를 훼손하고 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b)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공공교육 캠페인을 수행하라. 그리고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 형태를 조성하라.(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 권고 38-39항)

- 환경 특별 제언: 학교와 그 외 교육환경

모든 아동은 비폭력의 상황에서 학습해야 하고, 학교는 안전하고 친아동적이어야 하며, 교과과정은 권리기반으로 이뤄져야 하고, 또한 폭력을 묵과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는 시정되고 비폭력적 가치들과 행동이 학습되어야 함을 숙지하면서,

(a) 국가는 학교가 성차별 고정관념과 행동, 그리고 차별의 다른 형태들과 관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b) 국가는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비폭력 교수법 및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두려움, 위협, 모멸감 혹은 신체적 폭력에 기반 하지 않는 교실 운영과 훈육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c) 비폭력적인 분쟁해결방법과 같은 기술들의 수립을 장려, 위협적이지 않는 정책의 시행, 학교내의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 촉진을 포함하는 학교 환경 실태 보고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d) 교과과정, 수업진행 및 기타 학교에서의 관행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과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 A/61/299, 111항)

- 학교에서의 규율: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견해에서 체벌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 및 양 규약의 전문에 규정된 국제인권법의 기본원칙, 즉 개인의 존엄성에 위배된다. 학교 규율의 다른 측면,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 역시 인간 존엄성에 위배될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징계도 식량권 등 규약에 규정된 다른 권리를 위반하여서는 안된다.(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41항)

- 교육의 물리적 접근성: 교육은 합리적으로 편리한 지리적 장소로의 등교(예를 들어 동네학교)에 의해, 혹은 현대 기술(예를 들어 원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통해 안전한 물리적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교육의 경제적 접근성: 교육은 누구나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수용성: 교과과정 및 교수법 등 교육의 형태와 내용은 학생이 그리고 적절한 경우 학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예를 들어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양질이어야 한다)

교육의 적응성: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호연관된 필수적 요소”의 적절한 적용을 고려함에 있어 학생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6-7항)

- 초등교육은 ‘무상’; 이 의무의 본질은 명백하다. 무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아동,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정식화됐다. 정부, 지방당국 또는 학교에 의해 부과되는 수업료와 기타 직접적 비용은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향유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권리 실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비용부담은 사실상 종종 역행적일 수 있다. 비용의 제거는 행동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학부모에게 강제징수 등(실제적으로는 강제적이면서 자발적인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는) 간접비용, 또는 비교적 값비싼 교복 착용 의무 등도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1, 7항)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아동의 프라이버시 등 개인으로서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 아동은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와 책임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아동은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는 삶의 기술을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열쇠말 5는 열쇠말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제17조)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제18조)

-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 아동은 개인으로서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에 명시된 모든 시민적 권리의 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권리를 명시함에 있어 동 규약의 몇몇 규정은 성인보다 미성년자가 더 많은 보호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 아동의 인격 발달을 돕고 그들이 동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 특히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17, 2-3항)

- 국제인권준칙에서 천명한 교육의 목적을 향해 교육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정

책이 교실의 현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학교에서의 절차(교육환경, 행정, 교과과정, 학생-부모 공동체) 변화를 증진시키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배움에 동기를 부여하고 양질의 교육에 버팀목이 되는 가치(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 능력, 능동적 시민되기)의 관점에서 볼 때, 학습 과정의 행위자인 학생과 교사의 요구가 확인돼야 하며,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학교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민주적 시민권의 행사는 교육당국의 명령 또는 지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실과 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다.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하며, 스스로 생각할 자유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자유를 이해하는 장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포함한다.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115-117항)

- 수많은 건강 관련 상황에 대한 법률,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들을 진흥하려면 적절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의 권리가 결정적이다.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당사국들이 건강 문제에 대한 조언과 상담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사생활과 비밀의 권리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장려한다. 보건 의료제공자들은...청소년에 관한 의학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정보는 단지 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혹은 성인의 비밀에 대한 위반에 적용되는 동일한 상황에서만 공개될 수 있다.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의 참석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은 사생활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치료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비밀유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10-11항)

-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 권고 36-37항)

- 교육의 자유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제13조 3항은 두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당사국이 학부모와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제13조 3항의 이 요소가 종교와 윤리의 일반적인 역사 같은 과목에 대한 공립학교의 수업이 의견,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편견 없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그러한 수업을 허용한다는 견해이다. 본 위원회는 특정 종교나 신념에 대한 수업을 포함하는 공교육은 학부모 및 후견인의 희망사항을 수용하는 비

차별적 면제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 13조 3항에 어긋난다고 본다.(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28항,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22, 6항)

-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그것이 신흥 종교라는 이유로, 또는 지배적인 종교 사회의 적대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종교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등의 어떤 이유로 종교나 신앙을 차별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사상 또는 종교나 신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강요받아서 안된다. …종교나 신앙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는 현재의 종교나 신앙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무신론적 시각을 취할 권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교나 신앙을 유지할 권리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종교나 신앙에 대한 표명은 전쟁의 선전이나,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증오의 고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22, 2-7항)

6. 아동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학교는 아동의 학습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총체적 삶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동을 총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아동이 학교 체제 속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과 아동이 교실을 떠난 후에 ‘가정, 지역사회, 일터’에서 아동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유념하는 것이다.

- 학교는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원이고 위탁센터로서 복무해야 한다. 특히 학대, 방임, 피해 및 착취로 고통받고 특별한 필요를 가진 청소년에게 그렇다(26항).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및 기타 성인, 학생들은 청소년,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혜택이 적고, 취약하고, 인종적 및 기타의 소수자이고 저소득 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문제, 요구 및 인식에 민감해야 한다(27항). 출석규범에 부응하기 어려워하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중퇴자”에 대해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30항).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 Riyadh Guidelines)

- “배우고 번다”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필수이다. 아동 대신에 가족의 성인 구성원에게 일을 보장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국가의 경제능력의 제한 내에서 아동이 학교에 가는동안 지불가능하도록 가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직업교육을 대학교육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것의 변화가 필수적이다.(유엔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0/6 61-65항)

-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고 고용 또는 노동이 허용되는 최저연령을 연소자

의 심신이 완전히 발달하는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올리기 위한 국내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제1조) …최저고용연령은 의무교육 완료연령보다 낮아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미만인 되어서는 아니된다.(제 3조) 본 조약은 아동 및 청소년이 일반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을 위하여 학교에서 하는 노동이나 기타 훈련기관에서 하는 노동, 그리고 14세 이상자가 기업에서 하는 노동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정한 조건에 부합되며 다음 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부분인 노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학교 또는 훈련기관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교육과정이나 훈련과정. (b) 주로 또는 전적으로 사업장내에서 행하여지는 훈련계획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계획. (c) 직업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안내 및 예비교육 계획이나 일련의 훈련계획(ILO, 고용최저연령에 관한 제138호 조약)

- 학교는 많은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학습, 발달과 사회화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기에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경제영역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혹은 임금을 벌기 위해 학교를 떠나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활동참여는 건강 및 교육을 포함한 청소년의 기타의 다른 권리의 향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청소년의 발달에 이로울 수 있다.…노동하는 청소년이 일하는 작업환경과 조건을 규제하고…이들이 완전히 보호받고 법적 구제메커니즘에 접근권을 갖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17-18항)

- …아동의 성장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형태의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자신의 완전한 발전을 추구하고, 기술 및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8, 15항)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아동의 모든 권리는 상호불가분하고 상호연관된다. 아동의 각 권리는 전체 맥락과 떨어져 있거나 분리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강화·보완·통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자유의 행사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물적 조건이 요구되는 한편 아동의 어떤 권리, 가령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아동의 프라이버시 등 여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열쇠말 5에서 다른 ‘자유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는 열쇠말 7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사회적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국제사회는

인권을 전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또 동일한 비중을 두고 다루어야 한다. 물론 민족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에 유념해야 하겠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계를 떠나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3절)

- 건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건강문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구하고 입수하고 전파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정보의 접근성은 개인의 건강 정보가 비밀 유지의 조건하에 다루어져야 하는 권리를 손상해서는 안된다(12항). 당사국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생존 기술을 터득하고, 적절한 정보를 입수하고, 상담을 받고, 자신의 건강관련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기회를 보장하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청소년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 건강권의 실현은 비밀유지와 사생활을 존중하고 적절한 성 및 생식 관련 건강서비스를 포함하는 청소년 친화적인 보건의료의 발전에 달려있다(23항).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

- 아동은 친절하며, 지지가 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범위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접근이 가능하며, 적절하고, 비공개적이며, 비판적이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차별없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20항). 보건서비스에 접촉하는 아동과 관련된 보건의료 제공자에 의해 다른 의료적 조건이나 기타, 그러한 검사의 위험성과 이익이 충분히 조사되어, 충분히 고지된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23항). 건강과 사회복지 기반을 포함한 영역에서 아동의 사생활의 권리의 보호의무(제16조)에 의해 HIV 검사결과의 비밀을 보장해야만 한다. 아동의 HIV 상태에 대한 정보는 동의없이 부모를 포함한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해야만 한다(24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3)

- 성과 생식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족계획, 피임, 조기임신의 위험, HIV/AIDS의 예방과 성감염질환(STDs)의 예방과 치료가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혼인 여부 및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청소년의 특정한 권리와 특성에 적합하고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27항).

정신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부적절한 압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정신적 장애를 둘러싼 차별과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싸우도록 촉구한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모든 청소년은 가능한 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치료받고 간호받을 권리를 지닌다...필요하다면 이러한 청소년들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한다. 당사국들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청소년들

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족구성원 외의 개인적인 대리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29항).

성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재화, 서비스 및 정보가 이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a)피임 및 성병예방에 관한 청소년의 필요성에 대한 문화적 시가의 변화 및 청소년의 성을 둘러싼 문화적 및 기타 금기를 다루는 목적의 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HIV를 포함, 성병에 대한 청소년의 감염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이미 이에 감염된 청소년의 소외 원인이 되는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하고, 정보, 콘돔과 같은 예방조치, 간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 촉구된다(30항).

조혼과 조기임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하며, 임신한 소녀들은 그들의 권리 및 특정한 필요에 민감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인 부모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치도 취해야만 한다...성 및 생식관련 보건 서비스와 적절하고 종합적인 산부인과 간호과 상담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과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청소년 부모역할에 대한 긍정적이고 지원적 태도를 고양시키고, 청소년인 어머니들이 그들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31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 교육 시설과 가정에서 적절한 물이 부족하거나, 물을 구하는 부담 때문에 아동이 그들의 인권을 향유하지 못해서는 안된다. 현재 적절한 식수가 없는 교육시설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긴급 사안으로 다루어야만 한다.(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5, 16-b항)

-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핵심내용: 개인의 식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추고 있고 해로운 물질이 없으며 해당 문화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식량이 이용가능한 상태. 이러한 식량이 지속가능하고 기타 인권의 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가능한 상태(8항). 식이적 필요란 식사가 전체로서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발전 및 유지, 그리고 일생의 전 단계에서 성별과 직업에 따른 생리적 필요를 포함하여 신체적 활동을 위한 영양분의 혼합을 포함함을 의미한다(9항). 해로운 물질이 없을 것은 식량이 불순물 및/또는 불량한 환경 위생이나 여러 단계의 공급과정 중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 안보 및 공적·사적 수단을 통한 일련의 보호조치에 대한 요건을 정한다. 또한 자연발생적 독소를 검출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박멸하기 위한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10항). 문화적 수용성 또는 소비자 수용성은 음식 및 음식 소비에 부여되는 인지된 비영양적 가치, 그리고 접근가능한 식량의 성질에 대한 정보력 있는 소비자의 우려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고려하

여야 할 필요를 내포한다(11항). 가용성은 생산지나 기타 자연자원으로부터 직접 먹을 것을 구할 가능성 또는 수요에 따라 식량을 생산지로부터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원활한 유통, 가공 및 시장 시스템의 가능성을 의미한다(12항). 접근성은 경제적 접근성과 물리적 접근성을 모두 포함한다. 경제적 접근성은 적절한 식사를 위한 음식물의 획득과 관련된 개인 또는 가정의 재정적 비용이 다른 기본적 필수품의 획득 및 충족을 위협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접근성은 사람들이 음식을 조달하는 획득 유형이나 조달할 자격에 적용되며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향유를 위해 충분한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 물리적 접근성은 적절한 식량이 유아, 아동 등 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이에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3항)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 “적절한 장학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규약의 비차별 및 평등 규정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장학 제도는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의 개인을 위하여 교육 접근성의 평등을 증진하여야 한다.(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26항)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아동 권리의 이행에는 아동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 교사, 부모, 지역사회, 민간단체 및 기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관련되는 곳이다. 학교를 학교당국자만의 관할 구역인 폐쇄공간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을’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아동의 인권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아동의 발달상태가 인권침해행위에 특히 취약하며 아동의 견해는 여전히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은 투표권이 없고 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하지도 못하며 아동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그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찾기 위해 사법적 체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며 아동의 권리보호를 해줄 단체에 대한 아동의 접근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의 보호와 증진이 ‘주류화’되는 것과 국내에 현존하는 모든 인권기관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함께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 5항, 7항)

- 청소년비행 방지 정책 및 조치가 취해야 할 것들 5-b)법, 과정, 기관, 시설 및 서비스 전달 네트워크에 기반한 전문화된 철학과 접근. 6.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발전돼야 한다. 아직 r이런 기관이 전혀 설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특히 그렇다. 사회적 통제의 공식 기관들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돼야 한다.(청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 가이드라인 Riyadh Guidelines)

- 아동권리의 이행은 당사국의 의무이나, 아동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 부분의 참여가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책임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국가가 통제하는 서비스 및 기관을 넘어서서 아동, 부모와 광범위한 가족, 기타 성인, 비국가서비스와 조직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성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동의한다. “국가만이 규약의 당사자이며 궁극적으로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보건 전문가를 포함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 정부간 조직 및 비정부 조직, 민간기업부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조직-이 건강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러한 책임의 실행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해야만 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56항)

아동의 인권보장, 보호 및 감독을 위한 비정부기구와의 제휴와 연대의 발전을 환영하며 정부가 그들에게 비지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비정부기구와의 긍정적인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59항)

-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증진은 어떠한 학교 개선 과정의 성공과 유지에도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파트너십은 협력, 헌신, 공동소유감을 양산한다. 그런 파트너십은 공공인식과 요구를 강화한다.(유네스코 등 ‘교육의 질과 형평성 증진을 위한 신선한 출발(A FRESH Start to Improving the Quality and Equity of Education)’)

9.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교육의 물질 토대를 비롯해 교육환경을 고려치 않고 학생에 대한 인권존중을 교사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학생인권에 초점을 둔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요구된다.

- 교육의 진보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크게 달려 있으며 개별 교사의 인간적, 교육자적 및 기술적 자질에 달려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교사의 지위는 교육의 목적에서 판단된 교육의 필요에 적합해야 하고, 교사의 적절한 지위와 교사 직업에 대한 정당한 공적 보상이 교육의 목적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가르치는 일은 전문직으로 인정돼야 한다. 가르치는 일은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공적 서비스이며, 이런 지식과 기술은 엄격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획득·유지된다. 가르치는 일은 또한 그들의 책무로서 학생의 교육과 복지에 대한 개인적이고 협력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교직의 준비와 고용의 모든 측면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교사의 노동조건은 효과적인 가르침을 최상으로 향상시키고 가르치는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교사 조직은 교육의 진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인정돼야만 하고 따라서 교사 조직은 교육정책의 결정에 결합해야 한다.(유네스코/ILO, 교사의 지위에 대한 권고 3-9항)

-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제13조 1-(e)항)

-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 시스템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자이다. 교사는 그러한 학교의 변화를 위한 옹호자이자 변화의 촉매자여야 한다. 어떤 교육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단계의 교육체계에서 교사는 존중받아야 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의 직업적 환경과 가르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과 사회에 대한 교사로서의 전문적 책임성을 받아들이고 둘다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이해 수준과 공부 스타일, 학생의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에 대해 이해하며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며 참여적인 학습 환경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유네스코 다카 행동 계획 (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69-70항)

10. 권리구제에 대한 보장

아동이 갖는 인권이 의미가 있으려면 권리침해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 권리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이 요건은 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6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아동의 특별하고 의존적인 지위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따라서 국가들은 구제조치가 실효적이고 아동에 민감한 절차가 아동 및 그들의 대표자에게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아동 우호적인 정보, 조언 및 자기 변호를 위한 지원을 포함한 옹호, 필요한 법적 및 기타 조력으로 독립된 청원절차나 법원 접근 제공을 포함해야 한다. 권리의 침해가 발견되면 협약 제39조의 요구대로 배상 및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적·심리적 회복, 재활 및 복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적

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24항)

- 회복 및 사회 재통합 서비스 제공: 법률적 지원과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보건과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 범죄 재판, 사회복지 제도는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추어 고안되어야 한다.

아동참여보장: 아동폭력의 예방, 대응, 모니터링의 모든 방면에 대한 아동의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폭력에 대처하고자 하는 아동기구와 아동중심프로그램들을 지원받아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접근 가능한 그리고 친아동적인 신고체계와 서비스의 수립: 아동폭력 신고와 관련, 각 국가는 안전하고 널리 홍보가 되어 있고 비밀이 보장되고 아동 및 아동의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들을 세워야 한다. 모든 아동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 A/61/299, 101-104항)

-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적인 진정과 청원을 심사하고, 아동이 직접 혹은 아동을 대리하여 제출한 진정과 청원을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기구는 권리의 어떠한 침해든간에 아동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독립적인 자문, 변호와 진정절차)를 모색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기구는 그 기구의 이름으로 아동의 문제에 관련된 사건을 제소할 권리와 그 사건에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하여 법원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개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아동이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지지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지리적 및 물리적으로 모든 아동이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 가장 취약하고 불이익을 받는 아동집단을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 13-15항)

- 청소년은 사생활의 권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가 보장되는 적절한 사법적 구제 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개인적 제소에 용이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9항)

- 예를 들어 학교나 기타의 시설, 대안양육과 같은 가족 밖에서 체벌의 금지 및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체벌이 발생한 경우에 기소는 합리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다른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나 면직에 대한 위협은 또한 명백한 억제책으로써 작용할 것이다. 모든 체벌 혹은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처벌의 금지 및 이러한 처벌이 가해진 경우 부과될 제재는 아동 및 모든 환경에서 아동과 함께 혹은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징계 시설 및 아동에 대한 처우의 감독은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시설과 장소에서 관리감독의 일부여야 한다. 모든 그러한 장소에 있는 아동과 그들의 대리인들은 필요하다면

법적 및 기타 조력을 받아 아동인지적 조언, 옹호 및 고발절차와 중국적으로는 법정
에 즉각적이며 비밀유지가 되는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시설에서는 모든 폭력사건에
대한 보고와 검토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43항)

2부. 학생인권 침해 사례와 학생인권지침

I. 학생인권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의 침해 유형과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적이다.

본 연구팀은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정리하기 위하여 학생 당사자·교사모임과의 사례 조사 워크숍, 언론에 보도된 학생인권 사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에 접수된 사례 조사, 주요 관련 단체 방문 조사, 학생인권 관련 논문과 연구보고서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1차로 사례를 정리하였다. 1차로 정리된 사례는 서면 의뢰를 통해 인권활동가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아래와 같이 보완되었다.

표의 [권리] 항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초로 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바를 15가지 권리 항목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침해 유형]에서는 개별 사례들을 유형별로 묶어 정리했다.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에는 문헌·의견 조사를 통해 확보된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정리하여 담았다.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1.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정당성을 잃은 학교 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칙의 규정 자체가 학생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교사나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일방적으로 교칙을 재·개정하는 경우 ○ 학생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의 문항이 개방적이지 않아 특정 방향의 선택을 유도하거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학생 의견을 조사하고서도,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에 더 큰 비중을 두어 결정을 내리는 경우 ○ 방과 후,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교외 교육활동 기간, 방학기간 중 ‘학생관리방침’ 등을 통해 무리하고 일방적인 규칙 준수를 강요하는 경우 ○ 학생 기숙사에서 정도를 벗어난 통금시간 제한, 출입 통제, 아침운동 빠질 때 벌점화 등으로 과도한 규칙 준수를 강요하는 경우 ○ 담임교사가 학생의 자리 배치, 교우관계, 등교시간, 학급규칙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학생에게 준수를 강요하는 경우 ○ 학생에게 학생생활규정을 포함한 교칙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공개 요구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1.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p>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내용의 건의서(예: 두발규정과 관련한 건의서)는 아예 제출도 못하게 하거나 건의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리는 등 학생의 규율 개정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
	강요된 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수업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교사의 지시 하에 일괄 동의서를 받아내는 경우 ○ 보충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진도를 나가는 경우 ○ 1교시 전이나 방과 후에 자율학습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방과 후 하교증을 발급함으로써 방과 후 학습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 ○ 합당한 이유 없이 교사가 저자인 교과서나 저서의 구입, 교사가 관여한 공연 관람 등을 요구하고 그것을 수행평가 점수와 연결시키는 경우 ○ 강제 보충, 강제 자습 등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수업 강요 ○ 학생 자신이 아니라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서 빠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언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인격이나 잠재력을 무시하는 말 : “네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 학생의 신체적 특성을 놀림거리로 삼는 말 : “똥땡아~” ○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형태를 모욕하는 말 : “너네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집이 그 모양이니...” 등 ○ 소수자를 희화화하거나 모욕하는 말 : “사내자식이 하는 짓이 이게 뭐냐? 호모새끼도 아니고...”, “하는 짓이 꼭 애자네”, “IQ가 도대체 몇이냐”, “너네 둘 사귀냐?”(장난을 치는 동성 친구에게)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시설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좁은 방에 여러 명을 몰아넣는 등 열악한 숙박시설을 선정한 경우 ○ 주변 환경이 교육활동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수련회의 훈련 조교나 수학여행 때 관광가이드 등 교육 관련자들이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고 기합을 주는 경우
	학생들과의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건의나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무시하는 경우 ○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우 ○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실시, 규정 개정 등을 약속해 놓고서도 해명 없이 차일피일 약속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학생 표현물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학생의 표현물을 외부에 전시하거나 출판, 출판 등에 2차 활용하는 경우
2. 차별 금지	<p>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p> <p>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가정의 경제적 수준, 성적, 가족형태, 성, 인종, 외모 등에 따라 시설 이용, 학생생활 지도나 징계, 포상 등에서 달리 대우하는 경우 ○ 학생회 임원 자격 규정에 성적, 징계 유무, 학년 구분, 성별, 종교 등의 차별 규정을 두는 경우 ○ 키 번호나 남학생 앞 번호 등 신체적 특성이나 특정 정체성을 근거로 번호를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경우 ○ 각종 대회 참가나 시상 등에 있어 구체적 능력이나 합리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차별적 제한을 두는 경우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2. 차별 금지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학생, 채식을 하는 학생, 무슬림 학생 등 문화적, 종교적, 신체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식 식단을 짜는 경우 ○ 특정 정체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나 참고도서를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경우 ○ 학부모나 보호자의 잘못을 이유로 학생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경우 ○ 시설 개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특정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예) 학생은 중앙현관 출입 금지, 운동부가 아닌 일반 학생은 체육관 사용 금지 등의 규정을 두는 경우
		성적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우수자에게만 도서관 이용을 개방하는 경우 ○ 기숙사 입사 조건에 성적 제한 규정을 두거나 성적에 따라 기숙사 방을 배정하는 경우 ○ 신입생 반 편성고사에서 최고득점자에게 입학 선서를 시키는 등 성적우수자를 우대하는 경우 ○ 외부에서 들어온 학교지원금을 소수 성적 우수자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성별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통금 시간을 성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 ○ 여학생은 두발 길이 자유인 데 반해 남학생에게는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에 불리한 규정을 달리 두는 경우 ○ 성별 구분 없는 의사 수렴이 오히려 여학생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 ○ 남학생에게는 짐을 옮기는 일, 여학생에게는 실내 장식이나 청소 일을 시키는 등 은연중에 전통적인 성별 분업을 재생산하는 경우 ○ 남학생만 참여 가능한 경기를 열고 여학생에게는 응원을 시키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학 상담 때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따라 진로를 유도하는 경우
		학년 또는 나이에 따른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의견을 수렴할 때 상급학년의 의견만 반영하는 경우 ○ 급식 순서를 정할 때 늘 고학년 먼저 먹도록 하는 경우 ○ 하급학년이 상급학년 교실 근처에서 떠든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주거나 혼내는 경우 ○ 학생 대표를 정할 때 동수의 표를 얻는 사람 가운데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당선자로 확정하는 경우 ○ 하급학년과 상급학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하급학년에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경우
		빈곤 학생에 대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가정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혼내거나 체벌하는 경우 ○ 빈곤가정의 학생이나 보호자를 무능력하거나 게으른 사람 혹은 문제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묘사하는 경우. ○ 학내 복지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시키는 경우 ○ 급식 지원 대상임을 공개하는 경우 ○ 수학여행, 수련회 등에서 가정의 경제 형편에 따라 장소나 교통편을 달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2. 차별 금지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 빈곤 학생에 대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 정하는 경우 ○ 빈곤가정의 학생을 지원할 때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를 전혀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원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 교내 방송, 칠판에 이름 적기, 급식 바코드 설치, 담임의 호명 등 급식비 미납자를 함부로 공개시키는 경우 ○ 학생대표에게 학부모 찬조금을 낼 것을 은연중에 요구함으로써 빈곤가정의 학생은 대표 역할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경우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을 예비 문제아처럼 취급하거나 동정하는 경우 ○ 교과서나 교사의 교육 내용, 학교의 행사 내용 등에서 특정 가족형태만을 예시로 제시하는 경우 : 예) 어버이날에 ‘엄마아빠 발 씻어드리기’와 같은 숙제를 내주는 경우 ○ 결손가정, 편부/편모 가정 등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편견이 깔린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가족형태를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 가출 학생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 경험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면서 유경험자를 문제아로 취급하는 경우 ○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 가출의 원인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는 데 급급해 학생을 다시 위험에 몰아넣는 경우
	소수 정체성에 대한 차별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만 허용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역할 수행을 강요하는 등 여남 차별적인 교육이나 지도를 행하는 경우 ○ 남학생이나 남교사가 폭력적인 성경험이나 성매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 ○ 화장실에 생리대 판매기가 미설치되어 있거나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 ○ 남학생과 함께 사용하는 보건실에 생리대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여학생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 개수가 남학생 화장실에 설치된 대소변기 개수에 비해 적은 경우 ○ 보건실에 남학생과 여학생 이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무리한 순결교육을 강요하거나 특정 성 경험을 여학생의 성 관념의 문제로 몰아 교육하는 경우 ○ 성교육 시간에 비혼 임신 여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임신이나 섹스 경험,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고도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육이 부재한 경우 ○ 생리 자체를 불결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검증 자료로 의사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생리 공결 처리에 까다로운 절차를 두어 이용률을 낮추는 경우. ○ 여학생의 성 관련 문제행동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지도하거나 남교사가 여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 교사가 성희롱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예) “너는 엉덩이가 커서 애 잘 낳겠다”, “밤에 뭘 했길래 이렇게 좋아?” ○ 비혼 임신 사실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임신을 이유로 퇴학 또는 전학을 강요하는 경우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2. 차별 금지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을 여학생만의 잘못으로 간주하고 여학생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경우
	소수 정체성에 대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 미설치, 편의시설 부족, 교사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장애를 가진 학생의 입/전학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 거주지와 학교가 멀어 통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 장애 유형과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 경사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아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예) 장애인 화장실이 한 층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폭이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학습 보조물이나 보조교사 등의 지원이 미비한 경우 ○ 예체능이나 과학 실험 등 활동이 많은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에게 학교에 상주하여 보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장애학생을 홀로 특수학습 반에 방치하는 경우 ○ 저시력 장애 등 경증 장애, 사회성 장애 등을 겪는 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필요한 교육적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장애학생이 생활과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원책을 찾아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운동회나 학예회 등 학교 전체 행사 때 특수학급 재학생에게 가정학습을 유도하는 경우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참가 포기를 유도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예) 학부모가 실비를 내고 참가할 경우에만 장애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데 드는 경비를 보호자에게 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 ○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 ○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장애학생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나 따돌림, 위협 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 장애를 빚댄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상급학교 진로 상담 시나 생활지도 시 통합교육의 중단을 유도하는 경우 ○ 별다른 연수 없이 통합학급을 맡기거나 일상적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경우
이주민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입/전학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 졸업장이 아니라 수료증만 발급하여 상급학교 진학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 한국어 교육 등 필요한 학습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이주민 학생만 따로 학급에 분리 배치하여 불필요한 격리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 ○ 생활이나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체계가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2. 차별 금지	소수 정체성에 대한 차별	<p>이주민 학생</p> <p>인종적 소수자, 복출신 이주민</p> <p>전무한 경우 ○ ‘공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어떤 민족은 게으르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갖고 대함으로써 이주민 학생의 자존감과 학습 동기를 낮추는 경우 ○ 교과서나 교사의 발언이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를 강조함으로써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경우 ○ 특정 대륙이나 국가는 미화하고, 다른 대륙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잘못된 편견을 유포하는 경우 ○ 타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 개인의 문제행동을 특정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비난하는 경우 ○ 학생이나 보호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체류자격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주변인에게 유출함으로써 보호자가 강제 출국되어 가족이 헤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 ○ 학생의 상황과 바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한국어 수준으로만 학년을 배치하여 또래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경우 ○ “사람 고기 먹어봤나”는 등 상처를 해집는 질문을 함부로 던지거나 “빨갱이”, “북한 놈”, “깜둥이” 등으로 모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신 국가나 지역을 함부로 공개, 노출시키는 경우</p>
	성소수자	<p>성소수자</p> <p>○ 성소수자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언어, 이성애만을 정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유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예) “동성애자는 변태다”, 호모, 동성연애자 등 ○ 성소수자라는 낙인을 부여하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성적체성을 폭로하는 경우 ○ 특정 외모나 몸놀림, 생활양식 등을 규제하고 낙인을 부여하는 경우 예) 짧은 커트머리는 레즈비언이다, 여자끼리 손잡고 다니면 레즈비언이다, 목소리가 저런 걸 보니 호모자식이다 ○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징계를 주거나 부당한 감시를 하는 경우 예) 소지품 검사, 전학이나 자퇴 종용, 선배와 인사 금지, 손잡고 다니기 금지 등 이른바 ‘이반검열’을 하는 경우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따돌림, 폭력 등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 자신의 성적 지향을 탐색하고 있는 학생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거나 문제아처럼 대우하는 경우</p>
3. 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 목표를 벗어난 활동	<p>○ 학교교육의 목표나 교사의 교육 지도, 급훈 등에 경쟁을 가열시키거나 반인권적인 가치를 유포하는 경우 ○ 체육, 예체능 교육 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0교시, -1교시, 강제 야간학습, 과도한 자격증 시험 준비 등 과중한 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 각종 경시대회, 글짓기 대회, 일제교사 등으로 경쟁을 과열시키고 기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운동회, 학예회, 작품전시회 등 전시성 학교 행사를 과도하게 준비함으로써 정상적인 수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소한 잘못에도 벌점을 자주 주거나 벌점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p>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3. 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 목표를 벗어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부나 학생대표 등에게 떠들거나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적발하는 일을 시키거나 떠든 학생의 이름을 쪽지에 적어 내도록 하는 등 동료들을 상호감시자로 만들고 특권의식을 심어주는 경우 ○ 교사 부재시 정숙 유도 등을 이유로 학생들 몰래 교실 상황을 녹음 또는 촬영하는 경우.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스파이가 있다는 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 학교 밖 수련회, 현장학습, 극기훈련, 전문계고 현장실습 등에서 교육 목표와 거리가 먼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생을 배제한 교육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함을 설치해 두고서도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해두는 경우 ○ 학교 또는 학년 교육과정 수립 시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경우. 현장학습 장소, 수학여행 장소나 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 학기 초 학사 일정이나 수업계획, 학교의 주요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학교 통폐합, 학교 부지 이전, 학교 계열의 변화 등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전혀 듣지 않거나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 ○ 평준화 해지 등 입시나 교육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경우 ○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을 위해 협의할 수 있는 틀이 부재한 경우 ○ 교육 내용이나 학사 운영 등에 대한 이의 제기나 비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는 경우
	유명무실한 교육 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목임에도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자율학습 시간에 특정 과목의 공부를 강요하는 경우 ○ 방과 후 교육이나 보충수업을 개설할 때 특정한 과목 수강을 강요하거나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는 경우 ○ 상급학교 선택 시 소위 명문대 지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학생의 교육 선택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경우
	부적절한 학습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높아 개별적인 관심과 수준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학교 건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학생들이 열악한 임시 공간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경우 ○ 실습 기자재 등이 부족하여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 학습준비물 구입에 써야 할 학교 예산을 아껴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학교운영지원비를 원천 징수하는 등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 ○ 컴퓨터, 인쇄기, 복사기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습권 박탈의 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간에 복도에 내보내는 등 학습권을 박탈하는 일을 손쉬운 처벌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 ○ 교문지도에서 걸린 학생들을 남겨 단체기합을 주느라 1교시 수업에도 못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3. 교육에 대한 권리	학습권 박탈의 남용	<p>들어가게 하거나 늦게 들여보내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열등이나 정신이상 등을 징계 사유로 교칙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부등교 학생이나 부적응 학생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수업료 체납자에 대해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졸업장을 주지 않는 경우 ○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수업시간 중에 학생을 불러내거나 교내 봉사를 시키거나 사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답을 불러주면서 문제를 풀게 하는 등 형식적 지도로 일관하는 경우 ○ 작은 잘못에도 자퇴나 전학을 강요하는 경우 ○ 학생과 보호자의 신중한 자퇴 결정을 모욕하는 경우
	교육 접근의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여행, 수련회 등 비용 부담이 큰 교육활동을 잡아 참여를 못하는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는 경우 ○ 합당한 이유 없이 전학, 복학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거나 꺼려하는 경우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혹한 훈련, 단체 기합, 폭력 등으로부터 학생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경우 ○ 선수 지도자에 의한, 혹은 학생 선수들 사이의 폭력을 알면서도 학교당국이 이를 묵인하는 경우 ○ 과도한 출전과 훈련으로 수업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 선수 지도자에게만 전권이 위임되어 있어 담임교사도 학생의 생활지도나 교육 등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경우 ○ 합숙소의 열악한 시설 상태나 생활 실태에 대해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해 열악한 조건에 학생 선수들을 방치해 두는 경우 ○ 합숙 기간이 너무 길거나 합숙소 외에 별도의 생활공간이 없는 학생에 대해 아무런 보살핌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진학이나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중단하는 학생을 위한 보살핌이 전혀 없는 경우
4. 학생 자치와 참여권	자치나 참여의 기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공간, 자치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생 자치를 위해 배정되어 있는 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학교당국에 면담을 요청해도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 학부모단체나 회장단 어머니들에게 학교 행사에 꽃다발과 다과를 준비하게 하거나 금품, 행사 참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 보호자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경우
	학생 대표 기구의 자치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대표, 전교 학생 대표 선출시 간선제를 운영하는 경우 ○ 학생회 입후보 자격에 교사 추천, 징계경력 없음, 품행단정 등의 요건을 두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경우 ○ 학생회 선거 공약을 사전 검열하는 경우 ○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대표에 대해 학교당국의 승인절차를 두는 경우 ○ 일부 학생의 선거 참여가 아예 불가능한 날에 선거일을 잡는 경우 ○ 대의원회의 소집 시 학교장이나 자문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경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4. 학생 자치와 참여권	학생 대표 기구의 자치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 ○ 회의 안건이나 활동 내용을 교사들이 정해주는 경우 ○ 학생회 예산에 관한 권한, 회칙 개정권 등을 포함하여 자치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아예 주지 않는 경우 ○ 학생회 집행부를 학교가 대신 임명하는 경우 ○ 학생회 활동을 위한 공간이나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학생회실 열쇠를 교사가 갖고 있는 경우 ○ 학생회의 1년 목표를 교사가 대신 정해주는 경우 ○ 학생회에 각종 성금 모금, 캠페인, 선도활동 등을 학교당국이나 교사가 지시하는 경우 ○ 학생회가 기획한 행사를 포함하여 회의 결정 사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허하는 경우 ○ 타 학교 학생회와의 연합 활동을 불허하는 경우 ○ 학생대표의 방문이나 답변 요구를 이유없이 거절하는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가로막혀 있거나 회의록 공개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동아리 활동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설립 허가제를 두거나 까다로운 설립 절차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 ○ 학교가 인정하는 동아리 가입만 허용하거나 특정 동아리에 대한 선입견을 함부로 유포하는 경우 ○ 특정 동아리의 축제 참여를 배제하거나 공연에 필요한 공간 이용을 불허하는 경우 ○ 방송부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동아리만 지원하고 다른 동아리에 대해서는 활동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설립 취지와 관계없는 활동으로 때워지는 경우
5. 신체의 자유	모욕적인 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벌, 단체기합 등 학생의 존엄을 모욕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벌을 주는 경우 ○ 연대 책임을 묻는 집단적인 벌을 주는 경우 ○ 교실이나 복도, 교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는 경우 ○ 바닥에 엎드려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경우 ○ 엎드려뺨쳐를 시키거나 엎드리게 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내모는 경우 ○ 과도한 줄 세우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욕박을 지르는 등 학생에게 위협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경우 ○ 낙서를 했다고 분필을 물고 서 있게 하거나, 다툼 학생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거나, 다른 학생이나 교사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하는 등 모욕하는 벌을 세우는 경우 ○ 벌을 받고 있는 학생의 머리를 건드리거나 모욕적인 말로 추가적인 벌을 가하는 경우 ○ 가위나 바리깡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머리를 깎거나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를 깎게 만드는 경우 ○ 성기를 건드리거나 바지를 벗기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벌을 주는 경우 ○ 교문에서 이미 벌을 받았는데 교실에서 다시 똑같은 이유로 벌을 주는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5. 신체의 자유	모욕적인 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연거푸 벌을 주는 경우 ○ 준비물 부족이나 성적 등을 이유로 체벌을 가하는 경우 ○ 급식 지도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나 위협을 통해 음식을 먹게 하는 경우 ○ 수업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 중 화장실에 아예 못 가게 하거나 가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가하는 경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신체 부위를 뺀히 쳐다보거나 만지거나 껴안는 등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 학생이 수용하지 않는데도 학생을 껴안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경우 ○ 흡연 단속 등을 이유로 강제로 검진 행위를 실시하거나 금연침 등을 강제로 시술하는 경우
	강제 노동 과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나 행정직원의 사적 용무를 위해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무실이나 교장실, 교사 휴게실, 직원 화장실 등에 대한 청소나 관리를 학생들에게 맡기는 경우 ○ 학생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교내외 행사에 참여를 강제하거나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 특정 동아리를 학교급식 지원이나 교내행사 지원 등의 일에 함부로 배정해 원치 않은 일을 시키는 경우 ○ 뚜렷한 교육목적도 없고 전체 학생이 참석할 이유도 없는 각종 교과외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경우 : 예) 체육대회 응원, 학교 시설 기공식이나 개장식, 교육청 주관 글쓰기 대회 등 ○ 봉사활동 시 성산업 관련 전단지 수거 일을 학생에게 맡기거나 특정 목적의 집회에 참가를 동원하는 등 교육 목적에서 벗어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숙 생활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성적 이상 학생 등의 기준을 정해 기숙사 입소를 강제하는 경우 ○ 기숙사 규율에서 과도한 통금 시간, 아침 운동 강요, 빠질 때 벌점 처리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 합리적 기간을 넘어서는 장기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6.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서약의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식 때 미리 읽어보지도 못한 교칙에 대한 준수 선서를 신입생 대표에게 시키거나 입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제하거나 특정 국가관을 강요하는 경우 ○ 국기에 대한 맹세나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교사가 원하는 대로 반성문의 내용을 받아 적게 하거나 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일방적 생각의 주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차별 대우하는 경우 ○ 운동장 애국조회, 반성조회, 방송조회, 사랑의 매 전달식 등 일방적인 의사 전달을 위해 전체 학생을 한 데 집합시키는 경우 ○ 반공 포스터 그리기, 반일 글짓기 등 특정 사상에 대한 맹목적인 주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종교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종교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 ○ 종교 의식 참여나 종교과목 수강을 강제하는 경우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6.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종교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개인의 종교를 포교할 목적으로 경전이나 종교서적 읽기나 쓰기를 과제로 내주는 경우 ○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학교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은연중에 차별하는 경우 ○ 학생회 부서에 종교부를 두고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도서 등에 대한 검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신문 구독을 금지하는 경우 ○ 특정 사상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신문이나 도서의 도서관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 사회과학도서, 정치적 소수자를 다루거나 정치적 소수자가 쓴 도서의 소지를 금지하거나 읽기를 중단시키는 경우
7. 표현의 자유	복장과 두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생에게 교복 착용, 교복 착용 시 양말, 속옷 색깔, 구두 등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 각종 용의복장 규정을 획일적으로 두고 단속하는 경우 ○ 실내 외투나 목도리 착용이나 반한용 덮개 등을 규제하는 경우 ○ 두발의 길이, 색깔, 모양, 미용 도구 등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 화상이나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용의 복장 기준을 강제하는 경우
	매체 활동에 대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지나 학교신문에 대한 기획, 편집 과정에서 사전 검열이 이루어지는 경우 ○ 교지나 학교신문의 내용을 이유로 무리한 배포 금지나 폐간 조치를 취하는 경우 ○ 학생 매체가 아예 없거나 학생 매체의 편집권이 사실상 교사에게 있는 경우 ○ 매체의 내용을 이유로 편집부 등 학생 동아리를 해산시키거나 활동을 중지시키는 경우
	표현물과 의견 조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 전단지를 제외하고, 특정 내용의 전단지 배포나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경우 ○ 특정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학생이 단 배지 착용을 금지시키는 경우 ○ 학생들이 활용할 만한 게시판이 아예 없거나 게시물에 대한 까다로운 사전 승인 절차를 두어 게시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학급 게시판이 작품 전시 공간 또는 학사일정 알림판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 학생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설문조사나 서명운동을 중단시키거나 용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특정 내용의 표현물이나 특정 형태의 표현물 소지를 금지하는 경우 ○ 학교 행사 시 동아리의 공연 내용에 대해 함부로 검열하는 경우 ○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내부 대화방에서의 실명제 운영, 게시판에 쓸 수 있는 주제의 제한 등으로 사실상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로막히는 경우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 정당한 이유 없이 게시된 글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	○ 학내외 집회 개최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처벌을 주는 경우 혹은 처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 학내 집회를 가로막으려는 목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벌이거나 처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 집회 참여자 명단을 파악하거나 집회 참여자들의 언행을 감시하는 경우 ○ 집회, 시위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유포하는 경우
	교외 활동 규제	○ 교외 토론회 참석 등 의사 표현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을 금지하거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위협하는 경우 ○ 교외 동아리나 단체 활동, 학생회 연합 활동,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위원회 등의 활동 중단을 요구하거나 활동 내용을 문제 삼아 해체나 탈퇴를 강요하는 경우 ○ 학생의 교외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아예 금지하는 교칙을 두고 있는 경우
8.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사적 기록물에 대한 침해	○ 일기장을 검사하거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상하는 경우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기 내용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외부에 출판하는 경우 ○ 학생이 쓰거나 받은 편지, 쪽지, 다이어리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함부로 열어보거나 반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경우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앨범 등 사적 기록을 함부로 열어보거나 공개하는 경우
	개인 소지품과 공간에 대한 침해	○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물품이 아님에도 휴대전화, 만화책, 미용도구, 카메라, 게임기, 장신구 등 특정 물품의 소지를 아예 금지시키거나 빼앗는 경우 ○ 휴대전화를 아침에 일괄 수거하거나 쉬는 시간에도 전원을 꺼놓게 하는 등 통신활동을 아예 금지하는 경우 ○ 디지털카메라 소지나 촬영을 원천 금지시키는 경우 ○ 가방, 사물함, 책상 서랍, 기숙사의 생활실 등 개인 공간을 함부로 뒤지거나 검사하는 경우 ○ 학생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소지품검사를 몰래 실시하거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불시에 무차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 소지품검사에서 나온 물건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하면서 수치심을 주는 경우 ○ 합리적 기간을 넘어 압수한 물건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 ○ 탈의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는 경우 ○ 탈의공간의 배치가 부적절하여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게 노출해야 하는 경우 ○ 사물함 등 자기만의 수납공간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개인 정보 침해	○ 학교가 가정환경을 조사하면서 보호자의 직업, 재산, 주민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우 ○ 탈부착이 불가능하도록 이름표를 교복에 아예 박음질해 놓은 경우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8. 사생활과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악되는 정보의 내용을 충분히 공지하거나 동의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외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학생에게 설문조사나 DNA 검사를 시키는 경우 ○ 교사가 학생의 학원 수강 시간, 종교, 친구관계, 연애 등 사적 정보를 과도하게 파악하는 경우 ○ 학급 학생들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등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 외부 학원 등에 재학생 정보나 졸업생 명단 등을 넘겨주는 경우 ○ 졸업앨범 뒤에 졸업생 명단과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는 등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 사법 당국이나 언론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학생의 정보를 함부로 넘겨주는 경우 ○ 학생의 가족형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급식지원 여부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의 개인 정보나 사진 등을 함부로 노출시키는 경우 ○ 학생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면서 손을 드는 방식 등으로 공개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경우 ○ 학생 정보 입력을 학생들에게 대신 입력시키는 경우, 시험지 채점을 학급 임원들에게 시키는 경우 ○ 신체검사나 보건실에서 파악되는 건강정보, 학생의 병력 등을 함부로 노출시키거나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는 경우 ○ 학교 급식 관리를 위해 지문을 수집하거나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 관련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시험성적, 수행평가 결과를 복도에 게시하거나 성적순으로 자리를 앉히는 등 정보를 일방 유포하는 경우 ○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정보에 대해 성격별로 달리 취급하지 않고 모두 보호자에게 일을 공개해버리는 경우 ○ 상담을 통해 파악된 학생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감시 장비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명찰 등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학생의 위치를 보호자가 추적할 수 있게끔 하는 알람 서비스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당사자의 동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복도, 교사, 기숙사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 CCTV의 목적, 촬영 시간, 범위, 보관 기간, 접근권자, 삭제 방법 등에 대한 공지 없이 그냥 설치하는 경우 ○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수단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CCTV를 폐기하지 않는 경우
	관계와 소통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관계나 연애 관계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 특정 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 연애를 이유로 전학을 종용하거나 적발시 벌점을 주는 경우 ○ 싸운 친구들을 꺼안게 하여 강제로 화해시키는 등 학생들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 의해 수집, 기록, 보관된 정보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합리적 이유 없이 잘못 기록된 학생의 개인 정보에 대한 수정 요구를 무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9. 정보 접근 권		시하는 경우
	성장을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도서가 부족하고 희망 도서를 신청해도 반입되지 않는 경우 ○ 까다로운 이용 규정, 사서교사의 과도한 통제나 처벌 등으로 도서관이 기피 공간이 되는 경우 ○ 짧은 대여기간, 대여 권수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도서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 ○ 컴퓨터실 이용이 수업시간에만 허락되어 있거나 휴게 공간, 기숙사 등에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인터넷 이용 기록을 감시하거나 접근 제한 영역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
	참여를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고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 학생의 요구가 없더라도 학생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마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10. 건강 권	학교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치수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 ○ 시력을 저해하는 조도의 조명기구를 방치하거나 환풍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환경 검사와 정비가 불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 화장실 위생 상태가 불결하거나 비누나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교실 커튼 등 큰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기구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교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 학교 주변의 공사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거나 분진과 소음으로 학습과 건강을 침해하는 경우 ○ 기숙사 등 학생들이 다수 생활하는 공간의 위생 관리가 불철저하거나 너무 많은 수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 ○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정신 건강에 대한 배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불안 등의 정신 건강을 보듬는 교육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상담 전담 교사가 없는 경우 ○ 학생이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처벌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학생의 정신력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경우
	몸이 아픈 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이 아파 조퇴를 하거나 병원에 다녀오려 해도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불허되는 경우 ○ 침상 등 보건실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보건실이 높은 층에 있거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후미진 곳에 위치한 경우 ○ 보건교사가 아니라 담임교사의 입실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보건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보건교사가 없어 응급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건교사의 개인차에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10. 건강권	몸이 아픈 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	<p>따라 응급 처치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 중 보충수업이 진행되는데도 보건실은 운영되지 않는 경우 ○ 기숙사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따로 응급약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보건실 문을 잠그고 교사가 자주 자리를 비워 보건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좋은 먹거리에 대한 보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 지원 아동에 대한 공개나 낙인, 차별적인 시선 등으로 급식 지원 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경우 ○ 학교 외에 다른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 ○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 급식 식단을 짤 때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 급식비 미납 학생을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독촉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영양 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 급식 식단만 공개되고 원산지나 식재료, 식재료의 질 등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 ○ 위탁 운영 시, 급식업체 선정 과정이나 운영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 급식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전문 인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위탁급식업체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 ○ 학교 매점에서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적절한 건강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검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학년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거나 문진 위주로 이루어지는 등 학생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부적절한 검사 장비로 건강 검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 체육관 등 공개적인 장소나 엿보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 건강 검진 시 파악되는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경우
	건강 촉진 활동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비가 올 때 대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 ○ 학생의 체형과 특성에 맞는 운동 기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장애학생, 여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나 체육 교육이 부재한 경우 ○ 체력검사 결과를 점수화하거나 무리한 등급화를 시도하는 경우 ○ 성 보건, 불법 낙태의 위험성 등을 포함하여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 격리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력 단련, 비만 치료 등을 명분으로 학생을 일찍 등교시키거나 방과 후에 남겨서 따로 과도한 운동을 시키는 등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경우 ○ 비만 특별 관리반을 두고 특정 학생을 포함시켜 낙인의 대상으로 만드는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강제 격리 조치	<p>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환자 발생시, 별다른 대책 없이 학생을 격리시키는 방식으로만 처리하는 경우
11. 안 전 권	학내 안전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인트, 바닥재 등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 교실 창문이나 복도 난간에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높은 놀이시설 아래 모래 등 충격 흡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골대나 농구대 등 운동기구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안전유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안전사고 예방을 명목으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의 책임을 당사자나 교사 개인에게만 돌리는 경우 ○ 과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을 다룰 때 안전장치나 안전을 위한 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 ○ 위험물질이 가득한 과학실험실에 학생들끼리 있도록 방치하는 경우
	위험한 학교 밖 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 등 학교 밖 교육활동시설을 선택할 때 화재나 추락사 예방 등 안전을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현장실습이나 훈련 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학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험한 등하굣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로에 인도나 횡단보도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통학로에 위험한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대체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등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통학수단을 타당한 이유 없이 일괄 규제하는 경우
	안전교육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나 사고 시 응급 처치 방법 등 긴급 대응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식중독 사고나 안전사고 발생 등 사고가 난 이후에야 전체 학생을 모아 놓고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이나 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산업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산업체 현장실습을 내보내는 경우 ○ 현장실습 기간에 일어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산업체에 요구하지 않거나 산업재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
	쉬는 시간에 대한 부당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등교시간을 함부로 당기거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향유하는 놀이의 유형이나 놀이 공간에 대해 부당한 통제를 가하는 경우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12.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쉬는 시간에 대한 부당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에 관계없이 만화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독이나 소지를 금지하거나 빼앗는 경우 ○ 쉬는 시간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음악재생기를 통제하거나 빼앗는 경우 ○ 학교 운동장이나 교정에서 편히 쉬거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교 운동장을 학생 선수의 훈련 장소로만 전용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놀이 공간을 빼앗는 경우 ○ 편히 쉴 수 있는 실내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
	문화 활동에 대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활동을 하는 동아리의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문화 동아리의 활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 소음 방지 설비를 갖추지는 않고 동아리가 연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경우 ○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문화공연 관람을 결정할 때 학생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 값비싼 공연을 의무적으로 보게끔 하여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 학생이 가진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유형의 문화만 관람하는 경우 ○ 극장, 유원지 등 학생의 교외 놀이 활동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 등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13. 적법 절차 를 누릴 권리	정당성을 벗어난 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는데도 가벼운 징계에서부터 중징계까지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징계 규정 자체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 성문화된 징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건을 맡은 교사마다 처리 방식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 ○ 징계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 행위에 비해 가중한 징계를 부여하는 경우 ○ 징계(선도)를 담당하는 기구의 구성이 학생에게 불리한 경우 ○ 조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조사 중인 사건을 이유로 또는 징계 사실만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전학이나 자퇴를 종용하는 경우 ○ 교내 도난사건, 폭력사건 등을 조사하면서 특정 학생을 범인으로 공개 지목하는 등 수치심과 심리적 충격을 주는 경우 ○ 도난사건 조사, 시험 부정행위 예방 등을 이유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을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
	정당성을 잃은 징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절차가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 사건을 맡은 교사마다 처리 절차가 다른 경우 ○ 사실이 확인되기 이전에 예단을 갖고 학생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등 곤장 징계를 주는 경우 ○ 상습적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간소화시켜 해당 학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조사 과정에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자백이나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 학교가 행사할 수 있는 징계 권한을 넘어서는 교도소 감금 등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하여 학생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경우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13.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정당성을 잃은 징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과 관련 없는 질문을 던지거나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 ○ 긴급성이 없는데도 오랜 시간 상담실에 남겨 두어 수업을 못 듣게 하거나 교내 봉사를 수업 시간 중에 시키는 경우 ○ 폐쇄된 공간에서 남교사가 여학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한국어에 서툰 이주인 학생이 이해하기 힘든 언어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학생의 특성과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 학생을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조사하지 않고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 불러내어 혐의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경우 ○ 징계 심의 기구의 개최 이유와 일시,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거나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한 일시를 잡아 일방 고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 학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직접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보조인과 함께 징계 심의 기구에 출석하여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학생의 변론권 행사를 변명이라고 여기면서 입막음을 하거나 가중 처벌을 가하는 경우 ○ 학생이나 보호자의 재심 요구를 학교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여 추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재심 요청을 정당한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징계 기록의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사유나 징계 사실을 게시하거나 공개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학생 징계 대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접근권자 이외에도 징계 기록을 볼 수 있게끔 방치하는 경우 ○ 재학 중의 징계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여 학생의 졸업 이후 삶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 법적 보관 의무가 없는 징계 기록을 졸업과 동시에 또는 일정 기간을 경과한 뒤 폐기하는 방식으로 사면복권 제도를 두지 않는 경우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이나 규정 위반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응징에만 무게를 두어 학생을 대하는 경우 ○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피해 학생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무게를 두기보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의 보호자와 피해 학생의 보호자 사이의 합의를 중용하는 데만 급급한 경우 ○ 문제 학생에게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문제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외부 상담 지도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경우
	학대받는 학생에 대한 보살핌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안에서 학생이 학대 받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 학대 받는 학생의 발견, 구제를 위한 조치 등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겨두고 있는 경우 ○ 학생을 가해한 보호자의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 ○ 방임 형태의 학대를 받는 학생에 대해 동료 학생들의 놀림이나 따돌림,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14. 특 별 한 노 동 법 에 반 영 권 리	학대받는 학생에 대한 보살핌 소홀	<p>폭력 등이 이루어지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학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년간, 학교급간 연계가 되지 않아 피학대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 무의탁 학생, 일시 보호시설이나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등을 위한 상담 지원 등 특별한 보살핌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법절차에 놓인 학생에 대한 보살핌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도중에 경찰이 학교를 찾아와 학생에 대해 참고인 또는 용의자 조사를 벌이는 경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 체포영장의 소지 여부, 긴급성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학생을 경찰에 인계하는 경우 ○ 보호자나 보조인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을 경찰에 인계하는 경우 ○ 사법절차, 참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학생이 수사를 받도록 방치하는 경우 ○ 사법절차에 놓였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범죄인 취급하는 등 모욕적으로 대하는 경우 ○ 사법절차에 놓였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의 명예 실추 등의 책임을 물어 전학을 종용하거나 추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관련 사실을 함부로 공개해 당사자의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일하는 학생에 대한 보살핌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아르바이트를 학교당국이나 교사가 금지시키는 경우 ○ 일하는 학생을 문제아로 보거나 아르바이트의 동기는 유희비 마련이라는 식의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경우 ○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당한 피해로부터 학생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 학생의 잘못으로 매도해버리는 경우 ○ 산업체 현장실습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성격(파견업체인지 여부 등), 일의 내용과 강도, 업체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실습 계약을 맺는 경우 ○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에 대한 추후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교육보다 경제적 착취나 노동력 이용만을 목적으로 현장실습을 이용하는 업체와 재계약하는 경우 ○ 노동법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내용을 포함하여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교육이 부재한 경우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살핌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에 의한 폭력, 선후배나 동료 학생 사이의 폭력, 성희롱, 선도부의 체벌이나 기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학생들 사이의 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면서도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은 묵인하거나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 ○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을 문제 원인을 제공한 사람처럼 대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오히려 전학을 요구하는 등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피해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을 분리시키지 않는 경우 ○ 학교의 명예를 이유로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가해 학생과의 억지 화해를

권리	침해 유형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
	<p>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살핌 소홀</p>	<p>강요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폭력 경험을 묻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게끔 하여 보복의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이름이나 피해 사실이 공개되어 2차 피해의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 학내 성폭력을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 폭력 예방 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p>15. 권리를 지킬 권리</p>	<p>이의를 제기한 학생에 대한 불이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심에 따라 옳지 않다고 생각한 교사나 학교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교사의 부당한 체벌 등 잘못된 혐의 행사를 중지시켰다는 이유로,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 책임을 물어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교사나 학교 관리자, 이사회 등의 자질과 관련한 비판 의견을 말하거나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심적 압박을 가하거나 특별 관리나 감시 대상에 올려 편파적인 징계를 주는 경우
	<p>구제절차에 대한 접근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교사에 의한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제보 학생의 신원을 밝히고 학생을 학교당국에 오히려 인계하는 경우 ○ 외부 기관에 권리 구제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학교가 언론사나 외부 권리구제 기관에 제보한 학생의 신원을 파악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 ○ 제보자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소지품 검사나 탐문 조사 등을 벌이는 경우 ○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p>연대 방어에 대한 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 학생이 당하는 인권침해에 중단을 요구하거나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교사나 학교당국의 부당 행위에 대한 증언이나 증거 수집 등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처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 교사나 학교당국의 부당 행위에 대해 증언하거나 증거 제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Ⅱ. 학생인권지침(안)

- 학생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지침

□ 전체 구성 □

- I. 전문(全文)
- II. 총칙
- III. 기본 원칙
- IV. 학생의 기본적 권리
- V.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 보장
 - 1.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 2. 차별 금지
 - 3. 교육에 대한 권리
 - 4. 학생 자치와 참여
 - 5. 신체의 자유
 - 6. 사상, 양심, 종교
 - 7. 학생의 표현
 - 8. 사생활과 개인정보
 - 9. 정보 접근
 - 10. 건강
 - 11. 안전
 - 12. 쉼, 놀이, 문화
 - 13. 사건 조사와 징계
 - 14.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 15. 권리를 지킬 권리
- VI. 학생 인권 침해 발생 시 해결 조치
- VII.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체계
- VIII. 학생 인권 수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

I. 전문(全文)

■ 학생 인권이 선 자리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인권의 대원칙은 여전한 폭력과 차별,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비껴가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은 어리고 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져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부당한 통제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입시에서의 성공만이 강조되는 경쟁적인 교육 풍토와 오랜 시간 굳어져온 권위주의문화는 학생의 인권이 숨 쉴 틈을 구조적으로 틀어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는 인권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학생은 학교 교육을 통해 사람됨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자연과의 공존 등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의 학교 현실을 살펴보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이러한 교육목표가 너무나 초라하게 버려져 있지는 않은지 자문하게 된다. 학생의 인권이 제 대접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학생이 다양성을 존중받으면서 생각을 키우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열어주지 못한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고 양심에 반하는 생각을 거짓으로 고하고 부조리를 눈감아야 하는 학교에서 학생이 권리의 주인이자 삶의 개척자로 자라나길 바라는 것은 헛된 바람이 되기 쉽다. 그래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삶의 지혜와 ‘사람들이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는 비로소 권리일 수 있다’는 오랜 깨우침을 다시 되새김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와 사회가 외면한 학생의 인권을 본디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학생들의 힘겨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학생 인권을 특별한 날에만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미사여구이거나 극단적인 사건에 직면해 불안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구조와 문화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설계도의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이 지침의 위상

○ 이 지침서는 국제권리장전과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들을 학교 현장에 대입한 세밀하다. 학생 인권에 관한 세부 지침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학생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지침서는 학생 인권을 지지하고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에서도 학교와 그 구성원들이 일구어낼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제안서다. ‘학교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온 관행에서 벗어나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은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 더 큰 변화를 낳을 수 있다.

○ 이 지침서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불러내는 주문이다. 자유, 평등, 정의, 차이에 대한 존중 속에서 학생은 생활하고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유권과 사회권, 소수자의 인권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인권 지침을 통해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 학생의 인권도 보장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밑그림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 이 지침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지침서는 학생 당사자를 비롯해 학생의 인권을 옹호해온 교사들과 인권단체들의 고민과 실천의 소산이다. 학생·교사와의 공동 워크숍, 관련 단체 방문 조사, 인권단체와 언론에 보고되었거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의뢰된 관련 사례들에 대한 검토, 학생 인권 전문가에 대한 서면 의뢰, 선행 연구 논문과 실태 보고서, 토론회 자료집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먼저 사례를 발굴했다. 발굴된 사례는 다시 학교 상황에 맞게 15가지 유형으로 묶였으며, 학생 인권을 대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으로 탄생했다.

■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학생 인권은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당연시되어 왔다. 이 지침서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 주체로서의 학생

: 권리를 유보하고 통제받는 데 길들여져 온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 지침서가 학생이 자기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에 대한 부당한 억압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구체적인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옹호자로서의 교사

: 교사는 학교의 변화를 불러오고 학생의 권리 행사를 지지하는 옹호자가 될 수 있다. 이 지침서는 학생 인권에 관한 교사의 감수성과 의식, 실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 인권의 실현을 위한 학교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이 지침서를 활용하여, 교사가 응당 감당해야 할 몫보다 더 크게 짊어져야 했던 부담을 벗고 학생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책임자이자 지휘자로서의 학교당국

: 학교당국은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 주체이자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일구는 변화를 이끌어 나갈 지휘자이기도 하다. 학교마다 처한 조건이 다르고 그에 따라 실천 가능한 계획과 변화의 호흡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학교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성취되기 힘든 요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당국은 조건의 차이와 권한의 한계 속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분명한 지향 아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계획과 오랜 기간 지속되어야 실현될 계획을 함께 짤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침서를 통해 학교당국이 변화 계획을 수립하고 변화 흐름을 지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총칙

1. 목적

이 지침서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준수되어야 할 학생 인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 인권이 증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학생 :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국·공립, 사립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입학과정 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립학교에는 대안학교도 포함된다.

•보호자 : 학생의 부모나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기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지지·지원해주는 후견인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이른다. 학생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 외에도 매우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자라고 있다. 보호자는 교직원, 학생과 더불어 학교 운영의 한 주체이다.

•징계 : 학교의 선도(징계)규정 위반이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사건 발생 이후 선도(징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진행되는 처벌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이나 회부되지 않더라도 사건과 관련되어 행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북출신 이주민 학생 :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 남으로 삶을 옮긴 학생을 뜻한다. 흔히 탈북자 자녀, 새터민 자녀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의 동기는 다양하다. 북을 떠난 동기가 무엇이든, 북을 떠나와 새로운 곳에서 삶을 일구었다는 의미를 담아 ‘북 출신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성소수자 :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이다.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나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을 찾아 성소수자로 정체화한 사람뿐 아니라 성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이 글에서 성적 정체성은 자신을 동성애자, 이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로 자각하는 성 정체성(sexual identity)과 생물학적 성이 무엇이든 자신을 여성 혹은 남성으로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 사용된다.

•인종적 소수집단 : 이주 동기와 시기에 관계없이, 부모 양쪽 혹은 한쪽이 다른 나라에서 나고 자랐거나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부모 모두가 이주노동자인 사람, 부모 중 한쪽이 노동이나 결혼을 매개로 이주한 사람, ‘혼혈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

•비혼모(非婚母) :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거나 출산한 여성을 이른다.

3. 학교당국의 기본 의무

학교당국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 그것은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로 다음과 같다.

○ 존중의 의무

: 학교 당국은 학생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이 권리를 누리는 데에 방해요소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을 교육활동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아리 설립을 불허하여 학생의 결사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 위험한 놀이시설을 방치하는 일 등은 학생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합당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입증 없이 두발규제 등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칙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에 해당한다.

○ 보호의 의무

: 학교당국은 제3자에 의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나 친구·선후배에 의해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학생 보호와 해결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피해학생이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일, 수련회 장소에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하지 않아 사고 위험에 학생을 노출시키는 일 등은 보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실현의 의무

: 인권은 모든 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향유는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학생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학생이 알아야 할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 인권에 관

한 교육과 행사를 기획하는 일, 학생 인권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학교당국은 실현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해야 할 책임도 아울러 갖는다.

학생 인권을 위한 노력과 실천은 오롯이 학교의 몫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학교를 넘어 가정, 지역사회, 교육당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교 밖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힘써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수준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4. 학생 인권 지침의 이행을 위한 권한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해서는 학교당국은 물론 학생 인권 옹호자로서의 교사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학교당국과 교사는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생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기 위한 학교당국과 교사의 요청은 존중되어야 한다.

○ 학교 당국에 대한 교사의 권한

: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교사이다. 교사는 학생 인권의 가장 든든한 옹호자일 수도 있고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조치를 전달, 집행하는 집행관이 될 수도 있다. 때로 교사는 자신의 교육적 신념과 인권의식에 반하여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학교당국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압력을 받기도 하고, 그릇된 교육적 신념과 인권의식의 부족으로 부지불식간에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 전체를 향해 ‘가해자’라는 화살을 돌리는 것은 교사의 학생 인권 옹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해서는 교사가 변화의 촉매자로서 합당하고도 충분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학교의 구조와 교육정책에 눈감는다면 개별 교사들의 노력은 이내 어려움에 처하고 물거품으로 변하기 쉽다. 교사는 학생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학교당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학교당국은 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 교육당국에 대한 학교당국의 권한

: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침을 준수하려는 학교당국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교육당국의 지원과 법적·행정적 여건 조성 노력이 필수적이다. 학교당국은 학교 구성원에게 현재 조건을 인내할 것을 요구하기보다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교당국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 조정과 예산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교육당국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당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Ⅲ. 지침의 기본 원칙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 아동기 혹은 학창시절은 성숙을 기다리는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학생은 학교 생활 전반에서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서 대접받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변화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권한과 권리행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학생을 조작이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 자체이자 능동적 행위자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의견을 표현할 진정한 기회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에 대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명목적인 참여, 장식적인 참여, 조작된 참여는 진정한 참여일 수 없다. 학교는 학생에게 능동적인 참여, 의사 결정,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 학생은 특정한 규범이나 삶의 양식에 종속당하기를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존재 그대로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는 다양성을 교육의 주춧돌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학생이 부당하게 구별되거나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혹은 잠재하는 차별을 확인하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뒤따라야 한다.

4. 감당할 만한 교육

: 학교 교육은 학생이 감당할 만한 교육이어야 한다.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교육은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교육은 학생 친화적이고 학생 중심으로 짜여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물론 교육의 내용과 과정, 학교의 규율 등은 학생의 존엄성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 학생은 학교 교육을 통해 자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삶에 대한 준비는 질서 유지나 통제의 강박에서 나오는 강압적 지도를 통해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인권에 대한 상호존중, 이

해와 평화,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야말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6.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 학교는 학생의 삶에서 중요한 인격적, 사회적 환경이다. 학교는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에 학생이 보여주는 모습만으로는 학생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불가능하다. 학교는 아동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학교에 들어오기 전과 학교를 떠난 후 학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 학생의 삶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은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기초해야 한다. 건강, 안전, 성장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기회를 제공받고 인격을 존중받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 학생 인권 보장은 교사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었을 때 실현될 수 없다. 학생 인권은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요구한다. 학교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비롯한 학교 밖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학교 밖 자원을 적극 끌어들이 수 있어야 한다. 학교가 연대의 공간으로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행위자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9.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 교사의 연대 없이 학생 인권은 보장될 수 없다. 교사의 연대는 그들의 책임에 대한 강조뿐 아니라 충분한 권한과 역량의 확보를 통해서야 가능하다. 교사는 학교의 변화를 이끌 옹호자이자 변화의 촉매자로서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아야 하고, 학생 인권에 목소리를 내는 데 필요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0. 권리구제에 대한 보장

: 학생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울 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그 호소가 경청되는 경험을 갖기 힘들다.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에 접근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없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 침해가 예방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학교 안팎의 구제 절차를 알고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생 권리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IV. 학생의 기본적 권리

모든 학생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1.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4. 학생은 적합한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 사람됨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차별 없이 누릴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자연과의 공존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 학생은 노예적 형태의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노예적 형태의 교육이란 학생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 학생의 존엄을 해치는 벌이나 대우, 자유로운 정신적 성장을 속박하는 교육,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과 정도의 교육 등을 의미한다.
6.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7.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수업이나 학교운영 등 학교생활 전반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8.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 강제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9.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는 강요될 수 없다.
10.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1. 학생은 말이나 글, 몸, 매체, 벽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12. 학생은 머리모양, 복장 등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13. 학생은 서명,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14.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5. 학생은 학교 밖 모임이나 단체, 정치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6.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7.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권리와 그 관계를 둘러싼 감정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18.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을 권리와 유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물론, 학교당국에 의해 정당하게 수집된 자기 정보에 대해서도 열람,

수정 등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9. 학생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에 다양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0.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21. 학생은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정,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치유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2. 학생은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3. 학생은 문화를 형성하고 누릴 권리를 가진다.

24. 학생은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5. 학생은 특별한 상황에 놓일 경우 각별한 지원과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6. 학생은 차별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거나 되찾는 일에 힘을 보탬 권리를 가진다.

27.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V.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 보장

1.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청소년기본법] 제2조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과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학생을 대할 때 학생의 존엄성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학생의 존엄과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은 학교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을 때 존엄한 인격체로 대접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학교당국과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학생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학생의 의견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학교 규율

1-1. 존엄에 합치되는 규율

☞ [교육기본법] 제12조/ [아동권리협약] 제28조

모든 수준의 학교 규율은 학생의 존엄성에 합치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또한 학교 규율에 대한 학생의 동의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학교의 규율은 아래를 포함한다.

- 학생생활규정(용의복장규정, 선도(징계)규정, 학생회칙, 포상규정 등)
- 학교폭력 예방과 사건 해결을 위한 지침
- 학급 규칙
- 담임교사의 학급운영과 관련한 지시
- 학교 안팎에서, 학기 중은 물론 방학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생활지도 방침
- 학교 기숙사나 합숙소의 규칙
- 학교 시설 이용이나 생활과 관련한 각종 지침 등

1-2. 학생의 참여

☞ [교육기본법] 제12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아동권리협약] 제12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제33차 회기 - 아동의 견해 존중 8.

모든 학생은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학교 규율의 제·개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는 학교 규율의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학생의 참여와 동의에 바탕을 둘 때 학교규율의 자발적 준수를 기대할 수 있다.

1-3. 의견의 존중

학교당국은 학생의 의견이 다른 교육주체들의 의견에 비해 소홀하게 혹은 낮은 비중으로 취급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학생의 의견과 다른 규율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고자 할 때는 납득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1-4. 판단을 돕는 과정 제공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학교규율을 제·개정하는 과정은 교육적 안내의 과정이다. 학교규율을 제·개정하는 과정에는 학생의 판단을 돕는 충분한 정보와 토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참여하여 만든 규율이 학생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지 학생 스스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안내할 책임이 있다.

1-5. 규율의 공지

학생생활규정을 포함한 각종 성문화된 규칙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어야 하며, 특히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는 규칙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 강요된 교육활동

1-6. 강제 학습의 금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제26차 회기 - 29조1항의 기능 12.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에는 학생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요청이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자율학습, 보충수업, 방과 후 교육, 학습부진아 지도 등 모든 추가적인 교육활동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과정에 학생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확보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은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따져보아야 한다.

- 학생 모두가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활동인 양 소개하는 경우
- 지시나 명령으로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쓰게 하는 경우

- 추가적인 교육활동 시간에 정규 수업 진도를 나감으로써 사실상 불참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경우
-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등교시간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각종 허가 절차를 두어 하교를 가로막는 경우

1-7. 학생 자신의 동의


학교당국은 보호자의 동의뿐 아니라 학생의 동의를 얻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추가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요구될 때, 학생은 이를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학생 자신의 판단을 묻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1-8. 부당한 관람 요구 금지

교육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공연 관람을 학생에게 요구하거나 이를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 언어 사용

1-9. 언어폭력의 금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1] 제26차 회기 - 29조1항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 서로를 존엄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을 대할 때 학생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있지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어의 사용, 특히 성, 장애, 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언어 사용은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며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아래와 같은 언어 사용은 학생의 존엄성을 위협할 수 있다.

- 욕이나 위협을 가하는 말
- 학생의 신체적 특성을 놀림거리로 삼는 말
- 학생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말
- 학생 보호자나 특정 가족형태를 모욕하는 말
-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을 희화화하거나 모욕하는 말

■ 학교 밖 교육활동시설의 선택

1-10. 적절한 시설

학교당국은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을 위해 숙박시설을 선정할 때, 가용 자

원의 한도 내에서 시설 수준이 학생의 존엄성에 부합하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1인당 적정 공간이 확보되고 있는지, 음식은 위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시설운영방침이 학생에게 너무 강압적이지는 않은지 등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1-11. 시설종사자의 태도

학교당국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훈련 조교, 관광가이드 등 학생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학생을 모욕적 혹은 위협적으로 대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협의는 필수적이다.

■ 학생들과의 약속

1-12. 학생의 의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학생은 학교당국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이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내용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이나 위협을 느끼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1-13. 약속의 성실한 이행

학교당국이 학생에게 한 약속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과 약속한 조치가 연기되고 있지 않은지, 학생이 일방적으로 약속이 파기되었다고 느끼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학생 표현물의 활용

1-14. 학생 표현물의 활용

학생 표현물을 전시하거나 출판, 출판 등에 활용하는 경우 미리 학생 자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차별 금지

☞ [아동복지법] 제3조

학생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존엄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성, 장애, 인종, 출신지역, 성 정체성, 가족형태, 외모, 경제적 수준, 사회적 신분, 성적, 학년, 나이 등이 다를지라도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는 차별이며 괴롭힘과 불리한 대우 역시 차별이다.

학생은 또한 보호자 등 자신과 관계된 사람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잘못으로 인한 부당한 제재나 차별대우도 받지 않는다. 학교당국은 모든 학생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하고, 학교의 결정이 미치는 차별적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권리가 차별 없이 존중·보호·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규정, 행정 조치, 시설, 교육과정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근절할 책임이 있다. 학교당국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반(反)차별 정신의 보편화,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 통합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해 차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차별 없는 학교

2-1. 차별 근절 조치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아동권리협약] 제2조

학교당국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별, 장애, 인종, 성적 정체성 등이 원인이 된 괴롭힘이나 비교 우대, 배제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단,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취해지는 우대 정책은 차별이 아니다. 분리 교육의 정당성은 합당한 이유에 기반하고 해당 학생의 동의를 얻어 합리적으로 실행될 때 인정될 수 있다.

2-2. 성적 차별 금지

모든 학생은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학교당국은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시설 이용 전반에서 성적을 이유로 학생을 우대 비교하거나 학생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예는 성적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 성적 우수자에게만 도서관 이용을 개방하는 등 성적 우수자를 우대하는 경우
-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성적 제한 규정을 두거나 성적에 따라 기숙사 방을 배정하는 경우
- 학생대표 자격에 성적 우수자 규정을 두는 경우
- 외부 지원금을 소수의 성적 우수자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성적 우수자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경우

2-3.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모든 학생은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학교당국은 합당한 이유 없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을 구분하거나 한쪽 성의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분리 조치가 학생에게 고정된 성역할 또는 성 규범을 강요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차별적 조치의 예가 될 수 있다.

- 기숙사 통금 시간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
- 여학생은 두발 길이 자유, 남학생은 길이를 제한하는 등 성별에 따라 학교규율의 적용과 징계의 정도가 다른 경우
- 짐을 옮길 때는 남학생, 공간 꾸미기는 여학생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은연중에 성역할 분업을 강요하는 경우
- 진로 상담에서 성별 분업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여성과 남성의 진로를 구분하여 유도하는 경우
-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적 혹은 관행적으로 한쪽 성만 참가 가능한 대회를 여는 경우

2.4. 학년 또는 나이에 따른 차별 금지

모든 학생은 학년이나 나이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학생의 의사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 대표 선출 시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학생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일은 나이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하급학년의 경우에는 학생의 의사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당국은 학년 사이의 위계와 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순서를 상급학년부터 배치하는 일, 상급학년 교실 주변에 하급학년 학생의 출입을 금하거나 떠든다는 이유로 훈계·체벌하는 일, 하급학년에게는 학생대표의 선거·피선거 자격을 주지 않는 일 등은 학년 사이의 위계를 굳히는 일이다.

2.5. 빈곤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 [아동권리협약] 제27조 1.

모든 학생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빈곤 가정의 학생이 편견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학교당국은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정 형편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급식 지원, 수학여행 등 비용 지원 등은 비공개로 이뤄져야 하며 수업료나 급식비 체납 사실이 공개되어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른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 역시 차별에 해당한다.

- 학교당국은 빈곤가정의 학생 당사자를 비롯해 다른 학교 구성원이 복지 지원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식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을 지원할 때 지원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듣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빈곤가정의 학생이나 보호자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 학내 복지 지원 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시키는 일 등은 없어야 한다.
- 빈곤가정의 학생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배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교육당국,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빈곤가정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

2-6.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모든 학생은 자신이 속한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존재를 존중하고, 특정한 가족형태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고 다른 형태의 가족을 비하하는 등 교육과정에서 편견과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설생활에 대한 편견 유포, 특정 가족형태만을 고려한 과제물 제시, ‘결손가정’이나 ‘편모가정’, ‘애비 없는 자식’ 등 차별적인 언어 사용 등은 없어야 한다.

2-7. 가출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학교당국은 가출 학생을 대할 때 가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출 자체를 징계 대상으로 삼고 가출 학생에 대해 도덕적 낙인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다.

■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학교당국은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학생의 다양성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내몰린 학생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여성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

2-8. 교육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여성발전법] 제20조, 제25조

학교당국은 교육과정을 통해 여성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식적인 교육내용은 물론이고 진학 지도,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문화 등 교육과정 전반에서 성역할 분업, 여성 차별적 관행, 반여성적 언어 사용 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학생 교복으로 치마만 허용하는 규정, 여남 분리적 체육수업, 남성의 성 매수 경험에 대한 묵인, 성희롱 발언에 대한 관용적인 분위기 등은 그 예가 될 수 있다. 학교는 성 평등 인식을 확대하고 여성이 존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 풍토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2-9. 여성의 몸과 특성을 고려한 시설 제공

☞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여학생은 여성의 몸과 특성을 고려한 편의 시설과 물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보건실은 여성용과 남성용을 구분해야 한다. 유희 공간의 확보가 어렵다면 원치 않는 노출이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 배치가 필요하다.
- 여학생 휴게실이 필요하다. 여성 몸의 특성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리대 자판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해야 한다.
- 화장실은 적정 변기수와 온수사용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여성화장실(대변기)의 구조는 남성화장실(대·소변기)과 차이가 있으므로 여성화장실의 전체 크기는 확장 조정되어야 한다.

2-10. 여성인권교육의 실시

☞ [여성발전법] 제17조의2, 제20조/ [아동복지법] 제9조/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학교당국은 모든 학생에 대해 성폭력과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여성인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특히 여학생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여성인권교육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여성인권교육은 성 평등, 주체적 여성상과 자기결정권, 성폭력·원치 않는 임신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편향된 관점이 제시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교육, 비혼 임신의 경우 여성만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교육 등은 공평하지 않다.

2-11. 비혼 임신 여성을 위한 지원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비혼 상태로 임신한 여학생은 중단 없는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임신한 여학생의 건강과 교육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원 조치에는 낮설고 긴장된 상태에 놓인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돌볼 수 있는 상담 지원도 포함된다. 학교당국은 또한 성경험, 임신 등의 사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휴학 강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12. 여성 대표성의 강화

여성은 모든 학교활동에 동등하게 참여, 활동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여성이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등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3. 생리 공결의 보장

여성은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여학생이 교육과정 중에 적절한 휴식이나 이해를 요구할 때 학교당국은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생리 공결(公缺) 처리는 해당 학생의 의사 표현에 따라 기타 다른 서류의 제출 없이도 이뤄져야 한다. 단,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2일 이상의 휴식을 취하는 경우, 보호자나 동거인 등 증언이 가능한 사람의 확인을 요구하는 등 부가 절차를 둘 수 있다. 생리 공결 처리를 담당하는 교사가 남성일 때 생리공결 활용률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다른 절차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2-14. 성폭력 등 성 관련 경험에 대한 개입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7조, 제18조/ [성폭력범죄의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1조

여학생은 성 경험에 대한 상담, 성폭력 사건 조사 등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상담과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남성교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장애인

2-15. 교육 접근권의 보장

☞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제30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

장애 학생은 차별 없이 학교교육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장애학생의 입

학·전학을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하고, 해당 학생의 장애유형에 적절한 교육내용과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시설이나 교사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장애학생의 전·입학을 거부, 회피해서는 안 된다. 통학에 필요한 교통편의도 제공되어야 한다.

2-16. 편의시설의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

장애 학생은 배움을 누리는 데 필요한 편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이 부적합할 경우 즉각 개보수해야 한다. 시설 부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다름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조건에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 학교당국은 다른 학교구성원에게도 편의시설 확보가 장애학생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치임을 이해시킬 책임이 있다.

2-17. 교육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 제21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

장애 학생은 자신의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특수교사, 보조교사, 학습보조물, 치료사, 상담 등을 제공하여 장애 학생이 적절하고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저시력장애 등 경증장애를 겪는 학생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보호자의 학교 상주를 요구하는 등 학교의 교육 지원 책임을 장애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2-18.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 제7조, 제18조, 제20조, 제25조, 제35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4조

장애 학생은 모든 교육활동에 제한 없이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예체능 수업, 과학실험, 수학여행, 수련회, 방과 후 수업 등 학교 안팎의 모든 교육활동에 장애 학생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활동 참여의 대가로 경비 지출, 보조인력 보충,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 등은 요구될 수 없다.

2-19. 통합을 위한 교육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1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 제32조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분리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장애 학생을 괴롭힘, 차별 등에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장애 학생의 인권과 통합교육에 공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0. 교사를 위한 지원

☞ [특수교육진흥법] 제23조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가 장애 학생을 잘 이해하고 교육을 준비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 통합교육을 위한 연수는 전체 교사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 교사가 통합교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 이주민 학생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제7조

이주노동자 자녀, 북 출신 이주민 학생 등 인종적, 문화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학생은 차별 없이 배움을 누리고 자신을 긍정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21. 교육 접근권의 보장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30조

이주민 학생도 차별 없이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보호자나 학생 자신의 체류 자격이 무엇이든지, 출신국가가 무엇이든지 학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당국은 재량권을 명분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전·입학 요구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 체류 자격을 이유로 정규 교육과정을 마쳤음에도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만 발급하는 것은 중단 없는 교육을 가로막는 차별이다.

2-22. 교육 지원


학교당국은 이주민 학생의 교육과 학교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인 학교생활안내서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 이주민 학생의 학년 배치 시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고, 언어·이해능력 등 학습능력,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한국어 수준만을 기준으로 한 학년 배치가 오히려 이주민 학생과 여타 학교구성원간의 관계형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학교당국은 이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을 분리 배치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분리·구분으로 드러나고 차별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주민 학생의 적응과 지원을 위해 특별학급을 운영할 경우, 이러한 구분이 차별을 조장하지는 않는지, 통합교육의 목적과 결과를 상쇄할만한 효과가 있는지 등 특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가족과의 헤어짐, 삶의 터전을 떠난 상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데 따른 스트레스 등 이주민 학생은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 학교당국은 이주민 학생이 가진 아픔을 돌보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상담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2-23. 통합을 위한 교육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31조

학교당국은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이주민 학생이 폭력이나 위협, 따돌림, 차별적 언어 사용 등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주민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다문화 교육, 문화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이주민 학생과 다른 학교구성원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동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24.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이주민 학생은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이주민 학생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식단 배치, 종교행사, 학교축제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25.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중

이주민 학생은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알릴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교육과정에서 이주민 학생의 출신국가를 포함해 다양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부 대륙이나 국가, 민족을 미화하는 교육,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담은 교육,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교육 등은 보편적 지식이라 보기 어렵다. 학교당국은 또한 이주민 학생이 자기 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다른 학교 구성원과 나눌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

2-26. 신상정보의 보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학교당국은 이주민 학생의 신상정보와 가족이 처한 상태가 함부로 수집, 공개, 유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 자신과 보호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신

상정보는 파악되어야 하고, 특히 출신 국가, 보호자의 체류 자격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함부로 노출되어 학생이나 보호자가 차별을 받거나 곤경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주민 학생과 보호자의 정보는 보호자의 추방 등 위급상황에서도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성소수자 학생

2-27. 교육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학생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학교당국은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성소수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 관계에 대한 중단 요구, 심리적 압박, 특정 외모에 대한 규제나 낙인, 비하나 혐오 발언 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폭력, 따돌림 등을 중단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성소수자 이해 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과서나 교육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그대로 유포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

2-28. 아웃팅의 금지

학생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비밀유지 등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을 비롯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학생의 성적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보호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는 때에도 당사자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2-29. 성적 정체성의 탐색 지원

학생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진지하게 탐색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성소수자의 정체성, 성과 삶 등에 대해 보다 폭넓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권단체 등과의 연계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3. 교육에 대한 권리

☞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차 회기 - 29조 1항의 중요성 2.

학생은 배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욕구와 사회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고 감당할 만한 수준의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사람됨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자연과의 공존 등 인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 교육 목표의 실현

학교당국은 교육목표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교육목표는 학교가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표뿐 아니라 학교의 문화, 교사의 교육 태도, 학습의 급훈 등 비공식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목표까지를 포함한다.

3-1.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 [교육기본법] 제9조/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차 회기 - 29조1항의 기능 9

학교당국은 교육과정이 특정 교과목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지,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외 활동이 정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학교의 전반적 분위기는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교과외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에 대한 불관용, 생태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등과 같이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도 교육 목표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3-2. 경쟁적 교육풍토의 변화

☞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견해 (CRC/C/15/Add.197)] 5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제26차 회기 - 29조1항의 기능 12

경쟁적인 교육 풍토는 학생들의 인권과 동등한 동료관계 형성에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경쟁이 부추겨지고 있지 않은지, 전시성 교육활동으로 수업 진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유념해야 한다. 아래는 경쟁적인 교육 풍토를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0교시’나 ‘-1교시’ 등 이른 아침 시간부터 정규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
- 엄격한 상벌규정이나 사소한 잘못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 경시대회, 문예대회, 일제고사, 경기대회, 자격증 시험 등 잦은 대회 참가나 시

험 준비를 시키는 경우

- 운동회, 학예회, 작품전시회 등 학교행사를 전시성으로 과도하게 준비하게끔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3-3. 교육의 궤도를 벗어난 지도 중단

학교당국은 학생 지도 방식이 일부 학생에게 특권의식을 심어주거나 학생들을 상호 감시자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학생 지도 방식은 정당한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학생 선도부를 두어 규정을 어긴 학생을 적발하도록 요구하는 일
- 학생회 임원에게 선도활동을 요구하는 일
- 규칙을 어긴 동료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지시하는 일
- 교실 정숙을 목적으로 교실 안에 몰래 카메라 또는 녹음장비를 설치하거나 정보원을 심어두는 일

3-4. 외부 위탁교육에 대한 점검

학교당국은 현장학습, 수련회, 극기훈련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교육활동도 3-1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혹한 극기훈련, 교육이 아닌 노동력 수급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장실습 등은 3-1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교육으로 보기 힘들다.

■ 교육과정과 정책에 대한 참여

☞ [아동권리협약] 제12조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3-5. 교육과정 수립에 대한 참여

학생은 배움의 내용과 형식, 일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당국은 한해의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적어도 학기 초에는 한 학기의 교육과정에 대해 학생에게 안내해야 한다. 학교 밖 교육활동의 개최 여부와 시기, 장소, 내용 등을 결정할 때에도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유념해야 한다.

3-6. 학교의 운명 결정에 대한 참여

학교의 계열 변화, 통폐합, 부지 이전 등 학생의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학생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7.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학교당국은 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각급 학교의 입학 정책, 직업교육정책 등 교육정책의 변화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학생이 이해하기 쉽고 충분하게 제공하는 일은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 교육 선택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학생에게는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

3-8.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학교당국은 학생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피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전에 학생의 선호도를 미리 파악하는 일, 선택과목의 수를 확대하는 일, 학교 밖 교육기관이나 순회교사, 지역 자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강사진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웃학교와 수업을 교류하거나 공동수업을 추진하는 일 등 학교의 권한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지원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3-9. 비정규 교육활동에서의 선택

자율학습, 보충수업, 방과 후 활동 등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서도 학생은 다양한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었는지, 교사 임의로 참여 과목을 정해주지는 않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3-10. 다양한 진로 탐색

교사는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할 때,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이 특정 계열의 학교나 특정 대학 지원을 강요받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학습 환경

☞ [교육기본법] 제3조, 제12조

학생의 학습권은 적절한 학습 환경의 정비 없이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 학교당국은

모두를 위한 무상교육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로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11. 학급당 학생 수 축소

학교당국은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인원을 넘어서 자기 수준과 욕구에 부합하는 교육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학생은 없는지 살펴보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3-12. 안정적인 학습 환경

학교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 공사가 제 때 완료되지 않아 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13. 학습 지원 물품 제공

☞ [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시설기준령] 제8조

학교당국은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를 포함한 학습 준비물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충분한 학습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학습 준비물이 부족해 학생이 추가적인 경제 부담을 안거나 필요한 학습 기회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예산을 수립할 때 학습준비물을 포함한 학습 지원액에 대해 충분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하며, 학습 지원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습 지원을 위한 물품에는 컴퓨터, 인쇄기, 복사기 등이 포함된다.

3-14. 학교운영지원비 원천징수 금지

☞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견해 (CRC/C/15/Add.197)] 53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원천징수하는 일은 무상교육의 법적 취지에 위반된다.

■ 학습권의 박탈

학생에게서 학습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학생이 일시적, 영구적으로 학습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3-15. 학습권의 일시적 박탈 최소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학습권 박탈은 손쉬운 처벌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이나 학교 규율에 의한 결정, 긴급성이 요구되는 조사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전학 결정을 내린 학교는 다른 학교 전학을 알선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3-16. 수업 시간 외 조사

학생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조사는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당국은 불필요하게 조사 시간이 길어져 학생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

3-17.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추가 교육은 학습 부진의 원인을 꼼꼼히 살펴 개별 학생의 동기 유발과 수준 향상이 가능한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형식적인 지도에 그치지 않도록, 담당 교사가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전문적인 교육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3-18. 중도 탈락률 감소 조치

학교당국은 중도 탈락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부적응의 이유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담과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중도 탈락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의 감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

3-19. 탈(脫)학교 선택에 대한 존중

학교당국은 학생이 감당할 만한 최선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유일한 공간이 아닐 수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자유롭고 신중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자퇴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동등한 교육 접근

☞ [교육기본법] 제4조

학생은 차별 없이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20. 경제적 부담의 축소

학교당국은 학생이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활동을 동등하게 향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경제형편 때문에 수업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학생도 교육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비용 부담이 큰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진행할 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1. 입/전학, 복학에 대한 개방

학교당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학생의 입/전학, 복학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교당국이 취하는 태도는 학생의 학습권뿐 아니라 정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학생 선수에 대한 지원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축구 결의안] 1

학생 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배움의 과정에 놓여있는 학생이자 존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3-21.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학교당국은 학생 선수의 훈련과 합숙, 대회 참석 등 선수생활 전반에서 교직원이나 선배에 의한 부당한 폭력, 과도한 기합, 언어폭력, 성폭력 등이 일어나지 않는지 감독해야 한다. 학생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조치를 담은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담당 지도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2. 출전 횟수와 훈련 제한

과도한 경기 참여와 훈련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위협할 수 있다. 학생 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학기 중 출전 횟수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훈련 시간과 경기는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3-23. 합숙소의 폐지와 집중 관리

초등학교의 합숙소는 폐지되어야 한다. 중·고등학교 합숙소 역시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합숙 기간에 대한 제한, 시설 적합성 조사와 개보수 등 합숙 기간 중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3-24. 별도 지원 기구의 마련

학생 선수의 학습과 학교생활 전반을 보살피고 교육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운동부 담당 교사에게만 학생 선수의 지도와 교육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학생 선수가 운동과 교육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별도의 담당자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3-25. 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거나 상급학교 진학 시 선수로 진학하지 못한 학생은 큰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을 수 있다. 학교당국은 중간에 선수 생활을 그만두는 학생을 위해 학습 부진을 극복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교육적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

4. 학생 자치와 참여

학생은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교육 주체로서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모임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기도 하다. 학생은 또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적극 보장받아야 한다.

■ 학생 자치와 참여 기반의 조성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학교당국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4.1. 자치와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 [청소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64조

학생 자치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지, 학교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공식적인 학생 참여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모여 활동할 공간과 자치 활동을 홍보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자율적인 모임 운영이 가능한지 등 필요한 뒷받침이 제공되고 있는

지를 살펴야 한다.

4.2. 학급단위의 자치활동 활성화

학급 단위에서 학생 자치와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학교 수준의 학생 자치와 참여도 활성화되기 힘들다. 학급 임원의 민주적 직선, 학급회의의 정례적 개최, 자유로운 안건 발의와 민주적 토론, 의결권 보장 등이 이루어져 있는지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

4.3. 학교당국과의 면담권 보장

학생이 학교당국에게 면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의 방문 요청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4.4. 자치와 참여에 대한 교육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자치와 참여의 의미를 알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 배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찾아보아야 한다.

4.5. 학생 보호자의 참여 존중

학부모회 등 학생 보호자의 참여는 학생 자치와 참여를 보완하는 활동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 보호자가 기자재 구입, 행사 동원, 행사물품 준비 등을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요구받거나 참여에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 행사나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참여를 요청할 때에는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 대표 기구로서의 학생회(전교어린이회)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회를 학생 대표 기구로서 학생회의 활동과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4.6. 입후보 자격 제한 금지

학교당국은 학생대표의 입후보 자격에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부당한 제한을 둘 수 없다. 부당한 제한으로는 교사의 추천, 성적, 징계 경력, 품행, 종교, 가정의 경제형

편 등이 포함된다. 어떤 후보자가 대표로 적합한지는 유권자인 학생이 판단할 몫이다. 또한 학교당국은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4-7. 대표 선출의 민주성

학생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거 참여를 제한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선거일을 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거로 선출된 학생대표에 대해 학교당국의 사후 승인 절차를 두는 것은 학생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4-8. 학생회의 권한 확보


학생회의 민주적,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의 권한을 포함하여 충분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학생회칙,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
-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
-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4-9. 사전·사후 간섭의 금지

학교당국은 학생회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사전·사후 승인 절차로 인해 학생회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도교사나 지도위원회의 역할은 자문을 제공하는 데 있다.

4-10.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등 학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건이 다루어질 때, 학교당국은 미리 안건을 공개하고 학생대표의 참석을 요청

하여 학생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생대표의 참여는 의결과정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4-11. 학생회 활동의 민주성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일반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대의원대회 회의록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동아리 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

동아리는 학생이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제공한다. 타인의 권리를 해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면, 모든 동아리의 결성과 참여, 자율적 활동은 학생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4-12. 동아리 설립·가입 허가제의 금지

학내 동아리의 설립과 가입에 대한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은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동아리를 설립하고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다. 학교당국은 엄격하고 불필요한 동아리 설립 절차와 요건으로 학생의 자유로운 동아리 설립이 가로막히고 있지 않은지, 특정 동아리 가입 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나 불이익에 대한 암시가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13. 동아리의 자유로운 활동

설립된 동아리는 학교 운영이나 다른 학교 구성원에게 명백한 위험을 주지 않는 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당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아리의 행사 개최나 참여를 가로막는 일은 없는지, 외부 동아리와의 연합 활동이나 공연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14.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5조, 제17조

학교당국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동아리 활동 시간이 다른 시간으로 전용되지 않는지, 동아리 모임이나 연습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필요한 기자재와 활동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공연 장소는 제공되고 있는지, 활동에 필요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

5. 신체의 자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몸의 존엄성과 안전, 자유를 위협받는 경험은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교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파괴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해치는 가혹하거나 모욕적인 처우, 자유의사에 반한 행위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체벌을 비롯한 모욕적인 처우

☞ [교육기본법] 제12조/ [아동권리협약] 제37조

학생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심한 상처나 창피를 주는 벌이나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5-1. 체벌의 금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제26차 회기/ 29조1항의 기능 8.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에 대한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체벌이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타격을 주는 행위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5-2. 강제 이발의 금지

☞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두발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중에서] 1

강제이발은 금지된다. 교사가 직접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일, 다른 누군가에게 머리 자르기를 지시하는 일, 머리를 자르게 할 목적으로 학생의 의사에 반해 미용실로 데려가는 일 등은 모두 강제이발에 해당한다.

5-3. 모욕적인 처벌의 금지

☞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3] 교육의권리(제13조)/ 1999년 제41항

학교당국은 학생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기타 모든 형태의 벌을 금지해야 한다. 정당한 교육의 범위를 벗어난 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학생을 향해 분필이나 책 등 물건을 던지는 일
- 소수의 잘못을 이유로 단체기합 등 집단적으로 벌을 주는 일

-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았거나 시험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일
-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생을 벌세우는 일
- 이미 벌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덧붙이는 일
- 무릎을 꿇게 하거나 바닥에 엎드려 반성문을 쓰게 하는 일
- 분필이나 청소도구 등을 물고 서 있게 하는 일
- 바지를 벗게 하거나 성기를 만지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등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일
- 급식지도 등을 이유로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일
- 수업시간 중 화장실을 못 가게 하거나 가는 학생을 벌주는 일
- 학생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강요하는 일

5.4. 신체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

학교당국은 질서 유지, 정숙, 안전 등을 목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때에도 학생의 신체에 대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 [세계인권선언] 제3조

학생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생의 몸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5.5. 성폭력의 금지와 예방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

학생은 교육활동의 전 과정에서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와 모든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뺨히 쳐다보거나 만지거나 껴안는 등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존엄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학교당국은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반응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5.6. 감정의 표현과 신체 접촉

교사가 학생에 대한 사랑, 감동, 기대, 친밀감, 안타까움, 공감 등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몸에 접촉하는 경우에도 학생이 그 표현을 수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좋은 동기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5-7. 강제 검진이나 의료행위 금지

학교당국과 교사는 흡연단속을 이유로 니코틴 진단을 실시하거나 금연침을 시술하는 등 학생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의 몸을 강제로 검진하거나 의료 시술을 할 수 없다.

■ 강제 노동과 행사동원

학생은 교육적 목적과 상관없는 노동이나 행사에 의사에 반하여 참석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에게 참여를 요청할 때 학생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학생의 의사에 반한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5-8. 사적 심부름 금지

학교당국은 교직원의 사적 용무를 위한 심부름 등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학생에게 일을 시키고 있지 않은지,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나 공간, 물품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학생에게 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피고 이를 금지해야 한다.

5-9. 행사 도우미 배치

학교급식 배분, 교내 행사 준비와 진행 등에서 학생의 힘을 빌리는 경우에도 먼저 학생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학생의 동의를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령과 체력, 건강상태 등에 비해 과중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 행사에 동아리의 참여를 요청할 때에도 동아리 구성원 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10. 행사 동원 금지

학교당국은 경기 응원, 학교시설 기공식, 외부행사 등 교육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전체 학생이 참석할 이유도 없는 각종 행사에 학생을 의무 참석케 하거나 참석 인원을 할당하여 교사로 하여금 학생을 동원하게끔 지시해서는 안 된다.

5-11. 봉사활동에 대한 감독

학교당국은 학생의 봉사활동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학생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을 맡기거나 특정 성향의 행사에 동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 기숙생활에 대한 강요

학생은 원하지 않는 기숙생활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기숙사와 합숙소 생활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생활 규율에 학생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12. 기숙사 입소 강요와 부당 규율 금지

학생의 자발적이고 명시적 동의 없이, 학생에게 기숙사 입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평일 외출 금지, 아침 운동 강요, 과도한 통금 조치 등으로 학생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13. 장기 합숙과 부당 규율 금지

출전 준비 등 학생 선수의 합숙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합리적 기간을 넘어서는 장기 합숙이나 부당한 규율의 강요는 있어서는 안 된다.

6. 사상, 양심, 종교

☞ [대한민국헌법] 제19조, 제20조/ [아동권리협약] 제14조 1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당하거나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

■ 양심에 반하는 서약

학생은 자기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갖는다. 생각과 양심의 자유는 내심을 드러내지 않을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다.

6-1. 동의에 기초한 선서

학교당국은 학교 규율 준수를 약속하는 선서 혹은 문서의 작성 등을 학생에게 요청할 때, 미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갖추어졌는지 살펴야 한다.

6-2. 양심에 따른 상징의식 거부

학교당국은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사상이나 가치를 주입할 위험이 있는 상징의식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은 양심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포함한 상징의식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6-3. 반성이나 서약의 강요 금지

학교당국은 학생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 뉘우침을 고백하게 되는 비교육적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생의 양심에 반하여 단지 벌을 피하거나 경감시키는 대가로서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뉘우침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본래의 교육 목적에서도 벗어나는 일이다.

■ 일방적 생각을 주입하는 교육활동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차 회기 29조1항] 제26차 회기/ 29조1항의 기능 9

학생은 학교교육의 전 과정을 통하여 자기 나름의 생각을 형성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6-4. 생각에 따른 차별 금지

학생은 일방적으로 특정한 생각을 가질 것을 강요받거나 갖고 있는 생각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모든 교육활동의 과정에서 학생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접하고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특정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내외 각종 대회에 학생이 참여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6-5. 일방적 의사 전달을 위한 소집 금지

애국조회, 반성조회, ‘사랑의 매’ 전달식 등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전체 학생을 한 곳에 집결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

■ 종교 강요

☞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제18조

학생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유지하거나 다른 종교로 바꾸거나 종교를 믿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학교당국이나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종교계열의 사립학교에는 더 각별한 책임이 요구된다.

6-6. 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은연중에 차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자신이 믿는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당하고 있지 않은지, 식단을 짤 때 학생 종교의 다양성이 고려되고 있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6-7. 종교활동 참석과 종교교육 강제 금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의식에 참여할지, 학생회 조직체계에 종교부를 둘지, 종교과목을 수강할지 여부 등은 학생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 종교활동을 의무화하거나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종교과목이 개설된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과목이 함께 개설되어야 한다.

6-8. 선교 목적의 권한 남용 금지

학교당국은 교사의 직위를 남용하여 선교를 목적으로 학생에게 특정 종교의 경전이나 서적 읽기를 요구하지 않는지, 학생이 믿는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지, 특정 종교를 일방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하여 편견을 전달하지 않는지 등을 살필 책임이 있다.

■ 도서 등에 대한 검열

6-9. 특정 도서 등에 대한 제한 금지

학생은 도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출판물에 접근하고 생각을 키워나갈 권리가 있다. 특정 성향의 신문, 특정 사상이나 주제를 다룬 도서, 특정 저자가 쓴 도서 등을 소지하거나 읽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등은 부당 검열에 해당한다. 특정 사상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이나 도서의 도서관 반입을 금지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7. 학생의 표현

학생은 말이나 글, 예술, 매체, 몸 등 자기가 선택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생활양식을 외부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명시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학생의 표현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통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홀로 또는 여럿이 의사를 표현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

학생은 자기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몸을 통해 표현할 자유를 갖는다. 학교당국은 특정한 두발이나 복장 양식 등이 교육과 다른 사람의 인권에 명백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용모 제한 규정을 둘 수 없다.

7-1. 복장의 자유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생활양식, 화상이나 장애 등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복장이나 용모를 강요받아서 안 된다. 학교당국은 학생으로 하여금 교복과 사복 가운데 무엇을 입을지, 교복 하의를 치마와 바지 중 무엇으로 할지, 하복과 동복 중에 무엇을 입을지, 교복 안이나 바깥에 무엇을 입을지, 어떤 모양과 색깔의 양말을 신을지, 실내에서 외투를 벗을지 입을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보장해야 한다. 속옷이나 구두, 가방, 장신구, 모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지 않는다.

7-2. 두발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두발제한관련 인권침해] (주문) 1

두발의 자유 역시 학생의 기본권이다. 두발의 길이나 색깔, 모양, 미용 물품 등도 학생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3. 이름표와 학교 배지의 착용 강제 금지

이름표나 학교 배지의 착용은 권장될 수는 있지만, 착용하지 않는 대가로 불이익을 주어해서는 안 된다.

7-4. 현행 용모규정의 개정

학교당국은 학생의 명시적 요청이 없더라도 현행 용모 관련 규정이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은지 따져보고 학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책임이 있다.

■ 매체 활동

학생은 방송, 신문, 잡지, 문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견을 밝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갖는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매체 활동에 대한 보장과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7-5. 매체 활동의 자유

☞ [아동권리협약] 제13조 1/ [요하네스버그 원칙] 원칙 1

학교당국은 학생이 매체를 기획, 취재, 편집, 발행, 배포하는 전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로 매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매체의 내용이 명예훼손 등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학생에게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뒤, 내용의 수정이나 삭제, 배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매체의 폐기, 매체의 영구적인 폐쇄나 폐간, 관련 동아리에 대한 활동 중지나 해체 등의 조치는 합리적 제한의 범위를 넘어선다.

7-6. 매체 활동에 대한 지원

매체를 기획하고 만드는 경험은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체험할 교육적 기회가 된다. 특히 학교 신문이나 방송, 잡지는 학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북돋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학교당국은 좀더 많은 학생이 다양한 매체를 경험하고 매체 기획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 다양한 표현물과 의견 조직 활동

☞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요하네스버그 원칙] 원칙7

학생은 언론매체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표현물을 통해 자기 의견을 알리고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어떠한 주제에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단, 그 표현 내용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폭력을 선동하거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수정 요구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7. 주제에 대한 검열 금지

☞ [요하네스버그 원칙] 원칙5

학생의 표현물이 다루는 주제 자체를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정당한 교육의 범위를 벗어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어떤 주제에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학생이 그 주제에 다양하고 풍부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7-8. 홍보와 선전 활동 보장

학생은 전단지나 벽보를 통해 자기 의견이나 행사, 모임 구성원 모집, 학교운영과 관련된 사실 등을 알리거나 다양한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물을 배포할 수 있는지, 배포된 전단지가 부당하게 압수되는 일은 없는

지, 벽보를 게시할 공간은 충분한지, 게시공간이 학교당국의 알림사항이나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7-9. 의견 조직 활동 보장

학생은 설문조사나 서명운동, 공동선언자 모집 등 의견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학교당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활동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지, 학생이 소지·배포·게시한 표현물을 빼앗거나 폐기하는 일은 없는지, 참여 학생의 명단을 따로 파악해 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10. 표현물의 소지와 게시 보장

학생은 정치적 의견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진 의견을 드러내기 위해 배지, 팻말, 알림판, 스티커 등의 표현물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고 동의하는 사람을 모으기 위한 행동을 펼칠 수 있다.


7-11.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학교당국은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교당국이 마련한 홈페이지 운영 원칙이 학생의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또는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리자에 의해 운영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삭제 조치나 수정·삭제 요구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게시판이나 건의 게시판에 실명으로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운영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7-12. 공연 내용의 자율적 결정

축제를 비롯한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동아리는 참가 작품 등 참여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동아리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공연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교내의 집회와 시위

 [아동권리협약] 제15조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평화로운 집회나 시위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가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참여자들이 모인 이유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준비한 물품을 소지할 자유를 포함한다. 학교당국은 학내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사전 허가 절차를 두거나 신고 절차가 사실상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영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7-13. 학내 집회·시위의 자유

학생은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 등 원하는 곳에 모여 집회나 시위를 열거나 참여할 수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모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해야 한다. 개최나 참여를 가로막거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7-14. 학외 집회·시위의 자유

학생은 학교 밖에서 집회나 시위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가 있다. 집회·시위는 학생이 사회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특정 주장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 밖 집회·시위 참여를 규제할 수 없다.

7-15. 집회·시위의 원천 봉쇄 금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다음과 같은 학교당국의 조처는 학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자유롭게 향유하는 것을 위협할 수 있다. 다만,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사용이나 행동의 자제를 요청하는 일은 가능하다.

- 집회·시위의 개최 자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개최 일시와 장소, 주최자, 참여자 명단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일
-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집회·시위에 필요한 물품의 소지 여부를 검사하거나 압수하는 일
- 집회·시위의 개최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심리적 압력을 가하는 일
- 개최를 앞둔 집회·시위를 비방하거나 집회·시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편견을 유포함으로써 참여를 제한하는 일
- 집회·시위 현장에서 감시를 목적으로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기록하거나 촬영하는 일

■ 교외활동

학생은 학교 밖에서 모임을 만들거나 가입해 활동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정치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7-16. 교외 활동의 자유

학생은 학교 밖에서 열리는 행사나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모임이나 활동을 금지하거나 탈퇴 압력을 가하거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7-17.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삭제

☞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견해 (CRC/C/15/Add.197)] 36, 37

학생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학교 규정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8. 사생활과 개인정보

학생은 일기나 통신, 소지품, 사적 공간, 친구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생활의 의미도 다 변화되고 있음에 유념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해석, 보장해야 한다.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유출되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적 기록물

타인이나 제3자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쓰이지 않은 학생의 사적 기록물은 보호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학생의 사적 기록물을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적 기록물에는 일기, 편지, 쪽지,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포함된다.

8-1. 일기장 검사의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초등학교 일기장 검사관련 의견]

학생은 교육과정을 통해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생활지도나 글쓰기 지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일기장 검사나 그를 통한 포상 행위는 학생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학생이 사생활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기르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진솔한 대화나 글쓰기 지도는 굳이 일기장 검사라는 형식을 빌지 않아도 가능하다. 교사와 학교당국은 상담편지 나누기, 생활문 쓰기 등 교육 목표의 성취와 사생활의 권리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8-2. 편지의 공개 금지

수업시간에 쓰이거나 오고간 편지, 쪽지 등을 발견한 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확인하거나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일은 학생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다.

8-3. 휴대전화 내용의 열람과 공개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집회의 자유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앨범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어보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 역시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

■ 개인 소지품과 공간

학생은 개인 소지품을 소지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개인 소지품과 사적 공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 소지품이나 사적 공간에 대한 검사나 압수에는 합당한 이유와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8-4. 소지품 금지의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집회의 자유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학교당국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물품을 특정하여 소지를 금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학교당국은 휴대전화, 사진기, 음악 재생기(MP3 등), 게임기 등에 대한 소지를 아예 금지시키기보다는 합당한 이용 규정을 두는 쪽을 택해야 한다.

8-5. 사적 공간에 대한 존중

학생의 가방, 책상서랍, 사물함 등은 사적 공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 안에서도 학생 생활실, 개인 수납장 등 사적 공간은 함부로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

8-6. 사적 공간 검사 시 절차

학교당국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의 소지품이나 개인 공간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는 증거물 또는 위험 물품을 찾게 되리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학생에 한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검사,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예고 없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검사, 학생들 몰래 실시된 검사, 합리적 공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검사는 그 행위의 정당성은 물론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신뢰까지 위협한다. 검사를 진행하는 교사는 해당 학생의 나이나 성별, 규정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수치심과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소지품 검사는 피해야 한다.

8-7. 소지품 압수의 제한

학교당국은 학생이 소지한 물품을 압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확보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물품을 압수하는 일은 최후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8-8. 사적 공간의 확보

학생은 사물함, 탈의실 등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특히, 학생이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타인에게 몸이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칸막이 나 커튼 등을 설치해야 한다.

■ 개인정보

학생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당국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부당한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9.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2

학교당국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교육상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학생의 종교나 병력, 친구관계, 재산 수준, 가족형태, 지문 등 생체정보, 보호자의 직업이나 주민번호 등 교육적 필요성이 입증되기 힘든 민감한 정보는 학교당국에 의해 일괄적으로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가 개별 학생에 대한 상담·교육을 위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도 학생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10.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금지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학교당국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래 예시는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에 해당한다.

○ 학생의 연락처나 주소 등을 학급 전체에 일괄적으로 나눠주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일

○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졸업앨범에 일괄 수록하는 일

○ 학생의 가족형태, 경제상황 등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를 호명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일

○ 학생의 가족관계, 학생의 폭력 피해 경험 등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하는 일

○ 탈부착이 불가능하도록 교복에 이름표를 박음질하도록 강제하는 일

○ 개인정보 입력을 담당 교사 이외의 사람에게 맡기는 일

○ 신체검사 시 파악되는 건강정보나 보건실에서 파악된 병력 등을 함부로 공개하는 일

○ 영장의 소지 여부, 당사자의 동의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사법당국이나 언론 등 외부기관에 학생 정보를 넘기는 일

○ 학생 대상의 실태조사, 교육통계조사, DNA 검사 등 외부 연구·조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전에, 조사의 목적과 수집되는 정보의 성격, 불참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당사자 동의를 확인하지 않는 일

■ 교육과정에서 기록되는 정보

교육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록되는 정보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8-11. 성적 공개 금지

학생의 시험 성적이나 수행평가 결과 등을 게시하거나 성적순으로 앉히는 등 성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다. 또한 성적 공개는 학생에게 수치심이나 우월감, 과도한 경쟁의식 등을 갖게 만들 수 있다.

8-12. 보호자에 대한 공개 시 전제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학교당국과 교사는 학생 지도를 위해 출결사항, 친구관계, 학내 활동 등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정보의 공개가 학생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8-13. 상담 정보의 비밀 유지

학교당국과 교사는 학생의 정신적 치유나 지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상담을 통해 획득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감시 장비의 설치

학생은 부당한 감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 안전, 폭력 예방 등 학생 안전을 이유로 설치된 장비가 감시의 기능도 동시에 갖고 있음에 유념하여 장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장비의 도입으로 학생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간섭받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는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학생의 안전과 사생활이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14. CCTV, 알림장비의 설치 규정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

감시카메라(CCTV), 학생의 등하교 여부를 알려주는 장치 등 학생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효과를 지닌 장비를 도입할 때에는 정당한 설치 이유를 밝히고 학생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학교당국은 감시카메라의 설치 장소, 촬영 목적, 촬영 시간, 촬영 범위, 녹화테이프의 보관 기간과 폐기 방법, 관리 책임자와 녹화테이프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 등을 모든 학생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설치 이유가 더 이상 정당화되기 힘들고 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폐기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8-15. 몰래 촬영·녹음의 금지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

어떠한 경우에도 몰래 촬영이나 녹음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당한 이유와 학생의 동의에 따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녹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녹음 기능이 없는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 관계와 소통

학생은 자기 의사에 따라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누구를 사랑할지, 누구와 갈등을 빚고 그 문제를 언제 어떻게 해결할지는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

생의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사적 관계와 관계를 둘러싼 감정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16. 자율적인 관계 맺기

학생은 연애, 교우관계 등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권리와 그 관계를 둘러싼 감정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호감, 사랑, 우정, 질투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은 성숙의 동반자이다. 학생의 사적 관계나 감정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우스갯거리로 만들거나 문제행동으로 치부하는 등의 부당한 간섭은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고 성숙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다. 관계의 종류가 무엇이든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스스로 관계를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안내, 지원하는 일은 부당한 간섭에서 제외된다.

8-17. 갈등상태의 감정 존중

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다.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성급히 해결하려는 교사의 욕심은 학생의 감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툼 두 학생에게 끼안기를 시키는 등 학생의 감정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 화해를 시키기보다는 당사자의 현재 감정을 존중하고 다툼의 원인을 살펴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

9. 정보 접근

☞ [아동권리협약] 제17조

학생은 학교당국에 의해 수집된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등 통제권을 가진다. 학생은 또한 도서,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성장 등을 위해 학생이 다양한 국내외적 정보원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적절하게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

9-1.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생은 학교당국에 의해 자기 정보가 수집, 기록된 후에도 자기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권한을 갖는다. 학교당국은 학생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공지하고, 학생이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9.2.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학교당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수집되었거나 잘못 기록된 개인 정보에 대해 학생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학생은 또한 정당한 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기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당국은 그 요구를 권리로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 학생의 자기 정보 수정과 이용 중단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당국은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생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성장을 위한 정보

☞ [청소년기본법] 제51조

학생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보가 다양하고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제반 설비와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9.3. 가고 싶은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돕는 자료창고이다. 특히 거리나 시간, 비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여건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도서관은 더욱 의미 있는 공간이 된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편안하고 유용한 공간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 까다롭고 엄격한 도서관 이용 규정은 학생이 도서관 이용을 꺼리게 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학교당국은 도서관 이용 규정이나 담당교사의 태도가 실내 정숙과 자료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이 학생에게 모멸감을 주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특히 사서교사 등 도서관 관리를 맡은 교직원들은 기합을 주거나 도서관 출입 금지를 지시하는 등 이용 학생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정보 접근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학교당국은 학생의 수와 욕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도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도서의 수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내용적 다

양성이 미흡하지 않은지, 대여기간이 너무 짧거나 대여 가능 권수가 적지 않은지 등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과 협의하여 적절한 도서대여 기간과 권수를 조정하고 학생이 신청한 도서를 적극 비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학교당국은 학생이 원하는 자료를 찾고 이용하는 데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서교사를 적극 배치해야 한다.

9.4. 컴퓨터 이용 보장

일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원이 바로 컴퓨터이다. 그러므로 기숙사 등의 학생 생활공간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컴퓨터 이용을 수업시간으로만 제한하거나 점심시간 등 특정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학교당국이 학생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온전한 실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특히 집에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조건에 놓인 학생들의 정보 접근권 실현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포함한 교내의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학생의 접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열어두어야 한다.

9.5. 인터넷 접근 보장

교육적 차원에서 인터넷 이용 제한 영역을 설정할 때 그 접근권이 자의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컴퓨터, 인터넷 사용 기록을 조회하는 등 학생이 활용하는 정보원에 대한 학교당국 및 교직원이 감시해서는 안 된다.

9.6. 정보 활용 교육

학교당국은 학생이 다양한 정보원을 적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홍보와 교육이 충분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학교당국은 학생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매체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할 책임이 있다.

■ 참여를 위한 정보

☞ [아동권리협약] 제12조

학생은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운영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학교운영에 관한 정보는 공공정보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학생자치와 참여는 실현되기 힘들다.

9.7. 정보 공개 청구

학교당국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는 한,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학생이 요구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학교당국은 납득할 만한 사유를 성실하게 밝혀야 한다.

9-8. 학교당국의 투명성

학생의 요구가 없더라도 학교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학교당국의 태도는 학교에 대한 학생의 신뢰를 높이는 토대가 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알 권리와 참여권 실현을 위해 학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

10. 건강

☞ [아동권리협약] 제24조

학생은 교육과정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각별히 점검하고 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학교 안에서나 학교를 오가는 과정에서나 건강을 해치는 조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는 일, 학생 건강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방침을 정비하고 제반 시설 확충에 힘쓰는 일 등이 포함된다.

■ 학교 환경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은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학생은 일상의 많은 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며 성장기에 있는 만큼 건강에 이로운 환경에서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정기적인 위생과 시설 점검을 통해 학생이 보다 인간다운 조건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10-1. 학교 시설과 물품

☞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는 학생이 편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교실이나 기숙사 내 냉난방 온도가 적정한지, 학습공간의 조도가 학생의 시력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책걸상은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지, 가방 무게를 덜 수 있는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 학생이 생활하고 배우는 공간이 쾌적하고 건강에 이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살피고 필요한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10-2. 위생 설비

학교당국은 위생을 위해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실내 환풍기는 설치되어 있는지, 화장실과 세면대에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화장실에 비누와 화장지 등은 비치되어 있는지, 기본 위생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몸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커튼 등 큰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기가 구비되어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몸을 움직이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학교당국은 교육과정과 학생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생 설비를 갖추는 일이 절실하다.

10-3. 학교 주변 환경

☞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당국은 학교 주변의 공사 등으로 인해 분진이나 소음, 햇볕가림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살피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 정신 건강과 치유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학생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입시 부담, 교사의 태도, 학교문화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학생의 정신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정체성, 문화, 개성 등이 저마다 다른 학생들이 한곳에 모여 매우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학생의 정신 건강과 치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학교당국의 책임은 더욱 절실하다.

10-4.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치유

학교당국은 스트레스, 우울증, 정서불안, 사회성 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고려하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의 정신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감당할 만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치유 활동을 펼쳐야 하며, 이 때 학교 안팎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0-5. 상담 활동의 강화

학교당국은 학생이 교우관계나 가정, 학업 등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나아가 학교당국은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도 학생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에

직면하여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 교사 배치, 외부 상담기관과의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0-6. 처벌이 아닌 치유

학생의 문제 행동에는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학교당국은 심리적 압박에서 오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딱지를 붙이고 처벌하는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가정환경, 교우관계, 문화적 배경 등을 살펴 상담·치유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몸이 아픈 학생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질병이나 사고는 인간 삶의 한 부분이다. 학교당국은 질병이나 사고, 피로 등으로 몸이 아픈 학생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학생의 호소를 부당하게 거짓으로 몰아감으로써 학생의 몸과 마음에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10-7. 호소에 대한 존중

몸이 아프다는 학생의 호소는 진지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학생이 조퇴를 하거나 의료기관에 가는 일이 제지되어서는 안 된다.

10-8. 최적화된 보건실

몸이 아픈 학생은 학교 보건실을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보건실의 이용 규정과 그 집행은 학생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에 두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당국은 보건실의 이용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하여 개선책을 서둘러야 한다.

- 침상의 수, 침상과 침상 사이의 거리 등 보건실 공간 면적이 이용 학생의 수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가
- 보건실이 너무 높은 층이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후미진 곳에 위치하여 학생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에 부족함은 없는가
-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느라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몸이 아픈 학생이 휴식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가
- 보건실에 입실할 때 보건교사가 아닌 담임교사의 허가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입실 절차로 인하여 보건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당하는 일은 없는가
- 보건실 예산이 충분히 책정되지 않아 구비된 의약품이 부족하거나 치료에 필요

- 한 기자재가 부족하진 않는가
- 기숙사와 같은 학생생활공간 안에도 따로 보건실이 있거나 응급약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 방학 중 보충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시간 등 학생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에 보건실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가

■ 먹을 권리

먹을 권리는 포기될 수 없는 사람의 권리이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은 충분한 영양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질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10-9. 학교 급식의 질 확보

☞ [학교급식법]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학교 급식은 대다수 학생이 하루에 한번은 꼭 먹는 음식이다.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 급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도 뒷받침될 수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먹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교당국은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질환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사용되는지, 주방 환경은 위생적인지, 식단은 골고루 짜여 있는지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산이 아니거나 유통기한이 길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이 첨가된 질 낮은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방치하는 일은 학교당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학교당국은 급식의 질을 꼼꼼히 살피고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외부 업체에 급식을 위탁한 경우, 급식 관련 사고가 발생해도 전문성이나 장비 부족 등으로 업체의 책임을 가리기 힘들다. 이 경우 학생에게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학교당국은 외부업체에 급식을 위탁한 경우라도 학교가 개입·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거나 지방자치체의 도움을 받아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학교당국은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등에게 급식업체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 급식업체가 식재료의 원산지과 질, 식단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식단이나 급식 운영 지침 등을 짤 때에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과 문화적·종교적 배경 등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학교당국은 학생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 짜이고 영양 관련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영양 담당 교사를 두는 등 적극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0-10. 급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 [학교급식법] 제9조

학교당국은 모든 학생이 학교급식을 비롯하여 먹을거리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끼니를 굶거나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도 학교의 적극적 노력 하에 수치심이나 두려움 없이 먹을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급식비 미납 학생이나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일은 없는지, 급식비 납부에 대한 공개 독촉을 받거나 부정적 시선에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끼는 일은 없는지, 학교 안팎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에 관한 정보가 적극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급식 지원을 받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학교의 태도는 모든 학생이 먹을 권리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0-11. 학교 매점에 대한 감독

학교당국은 학교 매점에 대해서도 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합당한 매점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자의 선정에서부터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건강 검진

학생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외부 의료기관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강 검진을 통해 학생의 건강권이 충분히 실현되고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

10-12. 적절한 건강 검진

☞ [학교보건법] 제2조의2, 제7조, 제7조의2,

학생에 대한 건강 검진이 연령이나 생활양식 등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의 적극적 정책 수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검진을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10-13. 사생활의 보장

☞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제13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1조

학교 공간을 빌어 이루어지는 건강 검진(신체검사)의 경우에도 학교당국은 학생이 적절한 장비를 통해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상태에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진 장비는 위생적이고 적절한지, 학생의 몸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검진 과정에서 성별·장애·인종 등 학생이 가진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는지, 학생의 건강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건강 촉진

학교당국은 학생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촉진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10-14. 운동 시설

학생은 체육시간을 통해서나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운동을 접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불가피한 이유 없이 체육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천 시에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운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학생 체형에 맞는 운동기구 등 학생의 건강 촉진을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학생이나 장애학생 등도 체육활동에 차별 없이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15. 체력의 등급화 제한

체력검사(체력장)는 학생 각자가 자기 체력을 인지하고 건강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보강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 장이다. 학교당국은 이러한 체력검사의 취지에서 벗어나 체력검사 결과를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체육수업이 운영되거나, 무리한 체력 등급화로 학생이 부당한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16. 보건교육의 실시

☞ [학교보건법] 제9조, 제11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8조/ [아동복지법] 제9조

학교당국은 학생이 학교 밖 생활에서 당면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건교육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타인의 몸을 존중하는 태

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문화와 인식의 변화를 적극 고려하여, 피임 방법, 임신이나 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법 등 성과 임신에 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강제 조치와 격리

10-17. 운동의 강요 금지

학생의 건강을 촉진한다거나 바른 생활 습관을 기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동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체력 단련, 비만 관리 등을 목적으로 수업 시작 전이나 수업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로 참여하고 있는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비만 특별 관리반 등을 두는 것은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곤 하더라도 특정 학생에 대한 낙인과 차별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학교당국은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보다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해야 한다.

10-18. 전염병 관련 조치

☞ [학교보건법] 제14조의2/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학교당국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전염병 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응급조치와 전염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 사유 없이 학생의 전염병 감염을 의심하여 함부로 격리시키거나 의사의 진단 없이 등교 정지나 복교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11. 안전

☞ [세계인권선언] 제3조

학생은 신체의 안전과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학교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학생의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등 학생의 다른 권리의 실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학생 관리 소홀 등으로 문책을 받거나 불명예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 문제가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학내 안전사고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11-1. 안전을 위한 설비

학교 내 안전사고는 학생 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는 인식은 수업시간 외 운동장 사용을 금지하는 등 학생의 행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을 명분으로 학생 개인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다양한 학교시설을 활용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시설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 복도나 계단에 위험한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창문이나 복도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는가
- 높은 놀이시설 아래에는 모래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가
- 축구골대나 농구대 등 둔중한 운동기구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교실 유리창은 안전유리로 되어 있는가

■ 학교 밖 교육활동 시설

11-2. 학교 밖 교육시설의 안전 점검

학교당국은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할 경우에도 학생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학교 밖 교육활동 장소나 숙식시설이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지 등을 미리 점검하고 안전 조치 마련을 적극 요구하여야 한다.

11-3. 사고에 대한 책임

학교당국은 학교의 안전조치 소홀, 당사자의 부주의 등 어떠한 이유로든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피해 학생의 회복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당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으로 실시되는 실습이나 훈련기간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학교당국이 져야 할 정당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일, 산업체 현장실습 도중 일어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이를 묵인하거나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산업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지 않는 일 등은 학교당국의 정당한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다.

■ 등하굣길

☞ [청소년기본법] 제51조

11-4. 통학로의 안전 확보

학생이 학교를 오가는 길도 학교 안 만큼 학생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안전권 실현을 위해 등하굣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 학생 통학로에 인도나 횡단보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통학로에 위험한 공사가 진행 중일 경우, 학교당국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지 적극 알아보아야 한다. 시공업체나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요청하여 통학버스 등 다른 통학수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11-5. 통학수단 제재의 최소화

학교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특정 통학수단 이용을 일괄 금지하는 조치가 타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학생의 통학 수단을 제한하기보다 통학 수단 이용을 가로막는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면허가 없는 학생의 오토바이 통학 금지는 합당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 안전교육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8조/ [학교보건법] 제12조

11-6. 안전교육의 실시

학생이 안전에 대한 자기 권리를 인식하고 누리기 위해 안전교육은 필수적이다. 학교당국은 권리에 기반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교육에 힘써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 부랴부랴 일회적,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안전교육으로는 원하는 결실을 맺기 힘들다. 학교당국은 화재 등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응급 처치와 대피 방법 등 긴급 대응 교육, 전문계고 현장실습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산업안전교육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쉼, 놀이, 문화

학생은 쉬고 놀고 문화를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습만이 우선시되어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은 쉼, 놀이, 문화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권리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특히 학습부담 강화, 사교육 확대 등은 학생의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학교당국은 교육당국,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 쉬는 시간의 향유

☞ [아동권리협약] 제31조

학교에서 ‘쉬는 시간’은 학생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쉬는 시간은 방금 끝난 수업을 정리하거나 다음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의 의미만 지니지 않는다. 쉬는 시간은 다양한 놀이와 문화와 관계가 창조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구성할지는 학생의 자유이다. 학교당국은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쉬는 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2-1. 쉬는 시간의 보장

쉬는 시간을 함부로 줄이거나 없애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쉬는 시간이 축소되는 일은 없는지, 점심시간에 학습이 강요되지는 않는지, 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은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12-2. 쉬는 시간의 자율성

쉬는 시간에 어떠한 놀이를 할지, 어떤 문화를 즐길지는 학생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학교당국은 합당한 사유 없이 학생이 하는 놀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일이 없는지, 내용에 관계없이 만화책이라는 이유로 소지나 독서를 금지당하지는 않는지, 휴대전화나 음악재생기 사용을 제지당하는 일은 없는지를 살펴 학생의 놀이·문화가 함부로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3. 실외 휴게공간의 확보

학교 운동장이나 교정은 학생이 편히 쉬거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은 학생이 앉아 쉴 만한 의자나 나무그늘은 충분한지, 놀이시설은 다양하고 안전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특정 집단에게만 독점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을 위한 운동장이 주차공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2-4. 실내 휴게공간의 확보

학교당국은 학생을 위한 편안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휴공간의 개조나 교실 내 틈새 공간 활용 등도 가능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문화 활동

☞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3조, 제17조, 제18조

학생은 스스로 문화를 형성하고 자기만의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가진 문화와 문화 활동을 존중하고, 문화적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지원에는 학생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12-5. 문화 동아리의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학교당국은 문화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한지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 학생 답지 못하다는 고정관념으로 문화 활동을 통제하는 태도로만 일관하여 동아리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 밖 모임을 통한 문화 활동도 권장되어야 한다.

12-6. 문화 관람의 다양성

교육활동의 연장으로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문화공연을 관람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미리 물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학생이 가진 인종적·문화적 다양성과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누구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2-7. 문화 활동에 대한 제한 금지

방과 후나 방학 중 학생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극장, 놀이공원, 유원지, 번화가 등 특정 장소의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일은 학생의 놀이·문화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재검토되어야 한다.

13. 사건 조사와 징계

학생은 폭력, 절도, 시험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조사나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존엄을 지키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의 각종 징계 규정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 국내 법률에 부합해야 하고, 조사와 징계는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며 학생이 감당할만

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은 조사와 징계의 전 과정에서 학생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인종, 문화적 배경, 건강과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징계의 기준과 내용

☞ [아동권리협약] 제28조

학교의 징계규정은 인권의 기준과 법률에 부합해야 하고 어떠한 차별과 편견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의 징계는 사건의 원인 파악과 문제해결, 예방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징계가 응징적 성격이 되지 않으려면 심의 기구가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징계의 수준이 행위에 비취 과도하지 않은지, 해당 학생이 감당할 만한 것인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13-1. 징계 규정의 정당성

징계 규정은 인권의 기준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학생,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사건 조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기구는 학생에게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징계의 기준과 내용 등을 학교구성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13-2. 권리 제한의 최소화

학교당국은 학생이 조사 중인 사건 혹은 징계 사실을 이유로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부당하게 구분되거나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도 징계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나 불리한 대우, 권리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13-3. 징계의 남용 금지

징계 규정에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학생을 징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3-4. 예비 범죄자 대우 금지

학교당국은 특정 사건의 조사를 비롯하여 학교생활 전반에서 전체 학생이나 다수 학생이 부당하게 ‘범죄자’로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난사건 조사나 시험 부정행위 예방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관리·감시하는 학교당국의 태도나 교사의 지도방식은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나 규정 위반자로 대상화하고 학생의 인격을 모욕할 우려가 있다.

■ 사건 조사와 징계 절차

학생은 사건 조사와 징계의 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절차가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5. 징계절차의 성문화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교당국은 국제인권기준과 법률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징계절차가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6. 무죄 추정의 원칙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조사 중인 학생은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13-7. 차별 없는 징계절차

학교당국은 징계절차가 특정 학생에게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복해서 징계 상황에 놓이게 된 학생에 대해 자의적으로 징계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당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3-8. 모욕적이거나 비인도적 대우 금지

잘못을 저지른 학생도 과도한 모욕과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징계의 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실 규명, 학생 지도 등 어떠한 이유로든 학생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금지된다. 경찰 조사, 소년원 유치, 사건 공개 등의 조처에 놓일 수 있다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강압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일도 학생의 인격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진상의 규명과 관련 없는 질문이나 판단 등으로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9. 사례 깊은 조사 절차

학교당국은 조사 시간, 조사 장소, 조사 방법 등을 정하는 데 있어 학생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인종, 문화적 배경, 건강과 심리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이 강압적이고 고통스런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일과 중의 사건조사는 사안의 긴급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최대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공개적인 장소에 조사를 진행하는

일은 사실이 확인되기 이전에 해당학생에게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만큼, 피해야 한다.

13-10. 학생의 변론권 보장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22조/ [아동권리협약] 제12조 2./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견해(CRC/C/15/Add.197)]35.

학교당국은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를 결정할 때 학생의 진술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징계 결정에 앞서 학생에게 직접 변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생이 변론권을 행사하는 일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등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학생의 변론권 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 보호자나 보조인의 동석, 학교 안팎의 조사활동 등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의 보호자나 담임교사, 학생과 신뢰관계에 있는 제3자 등 학생의 의사에 따라 누구라도 보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3-11. 조사·징계 사실의 통보

☞ [행정절차법] 제21조

조사의 시작과 이유, 징계 심의 기구의 개최 사실과 구성, 징계 결정과 그 사유 등은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어야 한다.

13-12. 재심권의 보장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학교당국은 징계규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재심에 대한 요청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되어야 하고, 불수용 시에는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 정보 처리 (공개, 보관, 폐기)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학생은 조사 중인 사건과 징계 처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조사 중인 사실이나 징계 사실이 공개되거나 유출되어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13-13. 사건과 징계의 공개 제한

학교당국은 조사 중인 사건 내용이나 징계 사실, 해당 학생의 이름 등이 공개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른 학생에 대한 계도와 예방을 꾀한다는 이유로 관련 사건을 공지하여 해당학생의 학교생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혐의만 갖고 당사자를 공개하여 수치심과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13-14. 징계 기록의 보관

학교당국은 학생의 징계 기록에 대한 접근권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록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재학 중의 징계가 외부에 공개되어 해당 학생의 진학, 취업, 결혼 등 졸업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15. 징계기록의 보관 규정 마련

학교당국은 학생의 징계 기록 보관에 관한 학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적정한 기간을 정해 폐기 가능한 기록은 폐기하여 사면 복권한다.

■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학생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징계 사건에 관련된 학생의 심리 상태와 처한 환경 등을 두루 살펴 교육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3-16. 문제해결의 지원

학교당국은 처벌보다는 문제해결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잘못을 저지른 학생의 상담·치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건에 관련된 모든 학생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필요에 따라 사건의 종료 이전부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심리 상담과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과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아야 한다.
-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당국의 조치나 상담·치유, 교육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야 한다.

13-17. 사건의 은폐·축소 금지

학교당국은 학교의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사건을 조기 종료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중용하는 등 사건을 덮거나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사건을 처리하는 학교당국의 태도는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회복, 가해자의 의식 전환, 재발 방지책 마련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

14.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청소년기본법] 제7조

특별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가정에서의 학대, 사법처리, 경제적 착취, 폭력 피해 등을 경험한 학생에게는 특별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떤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당사자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시보호조치를 포함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교육당국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가정 등에서 학대받는 학생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아동권리협약] 제19조

학교당국은 학생의 삶터가 당사자의 안전과 존엄성에 위협적임을 인지할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1. 피학대 학생에 대한 구체조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학교당국은 학생이 보호자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학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보호, 경찰 신고, 전문가 상담, 지원프로그램 제공 등 구체적인 구체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교육당국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끔 힘써야 한다.

- 학대받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원방법을 소개받을 수 있는 상담창구
- 신고자(교사)에 대한 비밀과 신분 안전보장
- 가해자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청소년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
- 학대받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긴급하고도 구체적인 보살핌과 지원 프로그램
- 아동학대예방센터, 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조체계
- 지속적인 보살핌과 지원을 위해 학생의 학교간, 학년간 이동 시의 연계 방안
- 가해자를 피해 안전한 지역으로 전학을 갈 수 있는 조치

14.2. 추가 피해의 예방

학교당국은 보호자로부터 방임 등 학대받은 학생이 놀림이나 따돌림, 폭력 등으로 추가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학교당국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권리 회복 방안에 대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14.3. 시설 생활 학생에 대한 보살핌

학교당국은 무의탁 상태나 일시보호시설, 보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생활에서 제외, 구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상담 체계는 학생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털어놓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사법 절차에 놓인 학생

☞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학교당국은 학생이 사법절차에 놓일 경우 해당 학생이 불리하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4.4. 수사기관에 대한 요구

학교당국은 사법수사 상태에 있는 학생이 적법한 절차를 누리고 여타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생 조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학교 방문 요청 시,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요구, 방문 조건 등을 분명하고도 엄격하게 밝혀야 한다.
- 수사기관의 학생 구인 요청 시, 학생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한다.
- 긴급성이 요구되는 체포의 경우, 영장의 소지 여부, 조건에 대한 확인 등 적법 절차인지 여부를 따진다.
- 학생을 수사기관에 인도할 때에는 보호자나 보조인의 동행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 혼자서 수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 학생에게 사법처리 절차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14.5. 추가 불이익 금지

학교당국은 학생이 사법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법 처리와 별개로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주거나 전학을 중용해서는 안 된다.

14-6. 관련 사실의 공개 제한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7조

학교당국은 해당 학생의 학교복귀와 이후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건이 공개되거나 확대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노동하거나 경제적 착취 상황에 놓인 학생

일하는 학생은 경제적 착취나 모욕적인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일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4-7. 노동할 권리 보장

☞ [근로기준법] 제64조

학교당국은 학습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고 학생의 노동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학생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 무조건 일을 금지하기보다는 학생의 욕구와 학생이 처한 상황, 일의 종류와 조건,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노동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태도로 학생을 차별 대우하지 않도록 한다.

14-8. 권리 구제의 지원

학교당국은 학생이 일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일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착취적 상황에 놓일 위험이 높다.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권의 내용, 상담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지역사회와 연계한 해결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다.

14-9. 전문계고 현장실습 감독

학교당국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문계고 산업체 현장실습이 실제 노동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학교당국은 실습업체의 선정에서부터 추수지도, 사후 실습업체에 대한 평가와 재계약 등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14-10.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학교당국은 학생에 대한 경제적 착취나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돕기 위해

교육과정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폭력피해 학생

학생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교 구성원에 의한 체벌, 구타, 따돌림, 성폭력 등 폭력으로 피해 받은 학생을 발견할 경우, 해당 학생을 보살피고 구제할 책임이 있다. 폭력 피해 경험을 듣고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학생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4-11. 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학교당국은 학교 내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배나 동급생에 의한 폭력, 선도부에 의한 기합, 남학생에 의한 성희롱, 교사에 의한 체벌 등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든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폭력의 가해자나 유형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

14-12.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

학교당국은 교육당국과 함께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위해 충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폭력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한 시스템
- 상담과 치료를 위한 비용 등 구체적 지원
- 사과와 보상 등, 납득할 수 있는 사건해결 노력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폭력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위한 고려

14-13. 피해 학생의 복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당국은 폭력피해 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사실이나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낙인 등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의 분위기, 학교구성원들의 태도로 인해 폭력피해 학생이 위축되거나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14-14. 추가 불이익 금지

학교당국은 학교 명예 훼손을 이유로 도리어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강요하거나 사건의 축소를 위해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

14-15. 제보 학생에 대한 보호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9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학교당국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폭력 경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나 피해자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폭력 경험에 대한 정보가 교사나 학생, 보호자 등에게 유출돼 제보 학생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4-16. 성폭력 규정 성문화

학교당국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규정이나 해결을 위한 체계를 마련토록 한다. 성폭력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인식 전환을 위해 학교 당국이 자체 성폭력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14-17. 폭력예방교육의 실시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학교당국은 학생, 교사, 직원 등 모든 학교구성원에게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5. 권리를 지킬 권리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모든 사람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권을 충분히 실현되는 질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의무가 있다.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은 부당한 법률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양심과 인권의 보편적 요청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역시 자기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옹호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부당한 학교당국이나 교직원의 결정에 대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학생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절차에 자유롭게

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5-1. 이의 제기

학생은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힘의 행사에 대해 즉각 또는 사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생이 제기한 의견은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되어야 한다. 학생의 의견이 설령 잘못된 정보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제기한 사실 자체가 처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교직원이나 학교당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힘의 행사를 중지시켰다는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2. 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

학생은 학교 안팎에 마련된 구제절차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팎의 구제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방법을 교육하는 등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당국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청이나 외부 기관에 권리 구제를 요청한 학생의 신원을 파악하는 행위는 그 의도에 관계없이 제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다른 학생의 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마저 위축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5-3. 권리 구제를 도울 권리

학생은 양심의 요청에 따라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 회복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교당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 증언, 증거물 제출 등을 도왔다는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VI. 인권침해 발생 시 해결 조치

■ 이행 계획과 구제 절차

학교당국은 이 지침의 존재를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지하는 한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 공개, 실천하여야 한다. 이행 계획에는 이 지침의 위반과 관련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행위의 즉각적 중단,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학내 절차의 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이 지침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망설임 없이 이 절차에 호소할 수 있고, 학교당국은 이를 위한 제반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회 소속으로 ‘학생인권부’(가칭)와 같은 독립적 인권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지침의 위반에 관한 보고는 무게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당국은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보고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다른 구제 절차에 대한 홍보

이 지침의 위반으로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당사자나 보조인은 학교 밖 다른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당국은 학교 밖에서 활용 가능한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야 하며,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VII.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

학교당국이 이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 인권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때 교육당국의 정책적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 인권교육

학교당국은 학생 자신은 물론이고 학생 인권에 긴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학생, 교사,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인권교육 실시는 필수적이다.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외부의 교육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학생 인권교육

: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 곧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는 학생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생에게 적절하고 참여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교사 인권교육

: 학생 인권 옹호자로서 교사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교사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 전문적 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교사의 의사를 반영하여 교사에게 적절하고 참여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교사 스스로 준비한 학내 인권연수는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 보호자 인권교육

: 가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자의 학교 운영 참여 시 학생 인권에 대한 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호자의 참여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한다.

■ 예산과 자원의 확보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해서는 실행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교 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야 한다. 학생 인권 보장 예산을 목적경비화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일, 학생 인권 보장 항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 교육당국 등과 연계하여 외부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역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 마련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일이 예가 될 수 있다.

■ 교육당국의 책임 촉구

학교당국은 학생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자신의 권한과 가용자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교육당국의 지원과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 학생 인권을 실현하려는 학교당국의 노력은 올바른 교육정책이 뒷받침될 때 진전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당국은 교육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교육당국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 교육당국은 교육정책 수립 시 학생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따져 보아야 한다.
- 교육당국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학교당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관련 지침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교육당국은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적극 논의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 교육당국은 학생 인권 실천 사례를 발굴, 보급하여 학교당국의 실천을 북돋아야 한다.
- 교육당국은 학교당국이나 교사가 다양한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소개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상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교육당국은 교사, 학교 관리자, 담당 장학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인권 연수를 제공하는 한편, 자체 연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교육당국은 방과 후 학교 교사, 수련시설 교육담당자, 학교 사회복지사 등 학생 교육의 책임을 나눠맡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인권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III. 학생 인권 수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

이 지침서에는 즉시 이행될 수 있는 학교당국의 의무와 장기적, 지속적인 이행계획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학교당국의 의무가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 학교당국은 지침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면서 이룩한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 대한 진단은 미래에 대한 설계도이기도 하다.

학교당국은 성취된 결실과 당면한 장애요인, 추가로 필요한 조치 등을 파악하고 이행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된 체크리스트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학교의 구성원은 점검 결과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Ⅲ. 학생인권지침에 비추어본 사례 분석

학생인권지침(학생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지침)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침에 대한 풍부하고 종합적인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문제는 단편적이지 않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나의 사건 안에는 다양한 인권침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얽여 있다. 사건의 발단 단계에서는 하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권리 침해가 일어나기도 하기도 하고, 총체적인 인권 침해 상태가 하나의 사건으로 표면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실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어떤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적용되어야 할 지침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면서, 학생인권지침의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일방적 규정 개악과 집회 원천봉쇄

“아직도 이런 학교가...두발제한 항의 학생에 자퇴 강요”
시민단체, 청명고 사건 진정서



©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회원들이 수원 청명고의 학생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

이고 있다.

기자 만나지 말라 휴대폰 압수

“기자들 만나지 말라며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검사했습니다.”(경기도 수원시 청명고 학생들의 증언 녹취록 가운데)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 청명고가 학생들의 표현·집회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문제는 지난달 21일 학교 쪽에서 두발규정을 이전보다 강화한 데서 비롯했다. 남학생들은 귀밑이 하얗게 드러나야 하고, 여학생들은 뒷머리 길이가 5~1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학생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은 “학교의 새 규정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해병대처럼 머리를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런 학교 방침에 항의해 같은달 25일과 29일 야간자습 시간에 교실 전등을 끄고 촛불을 켜고, 교실 밖으로 종이비행기를 날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는 모든 학생의 소지품을 수색해 시위 관련 전단지 300장을 빼앗았다. 또 학생들은 진정서에서 일부 교사들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퇴서를 쓰도록 강요했으며, 언론에서 학교 안 상황이 보도되자 기자와 인터뷰한 학생을 찾아낸다며 일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인권운동사랑방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명고 학생 3명의 증언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의 증언을 보면 △머리가 길다고 교사한테 맞거나 머리카락을 깎인 학생이 있으며 △교사들이 2학년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고 사물함을 모두 열게 했고 △교실 입구마다 교사들이 지키고 서서 학생들의 시위를 막았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청극 청명고 교장은 “두발규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동요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시민단체 쪽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지도 과정에서 교사들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일부 교사들이 훈계 차원에서 ‘자퇴’ 애길 꺼냈을 수 있으나, 학교는 이 일로 학생을 자퇴시키거나 징계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진식 기자 / [한겨레] 2006-09-15

▶ 문제점 분석

수원 촛고 사례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학교의 결정이 어떻게 다른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학생과 학교당국과의 갈등을 키우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애초 학교는 여름방학이 끝난 직후 학생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두발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두발제한은 두발의 자유라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제한규정을 둘 때에는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특히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원래부터 이 학교는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제한의 정도가 다른 차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던 데다, 학생들의 항

의가 있자 여학생 규정은 좀더 완화해준 반면 남학생에게는 강화된 규정을 계속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별을 지속했다.

이에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야간 자율학습 도중 쉬는 시간을 활용해 항의집회를 열자는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 계획을 사전에 알게 된 학교당국은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가방과 사물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지품검사를 벌여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소지품 검사에서 나온 전단지와 집회에 사용될 물품은 모두 빼앗았고 집회 개최 시간에 교사들로 하여금 교실을 막아서게 하여 집회를 가로막았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되는 순간이었다.

게다가 학교당국은 집회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집회 관련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 강압적인 조사를 벌여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어 사건을 언론과 인권단체에 알린 학생을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함부로 열어보고 압수하는 절차를 밟아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권리까지도 또다시 침해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의 재량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 전단지를 돌리거나 집회와 같은 집단행동을 피하는 것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학생의 소지품을 비롯해 사생활에 대한 존중도 부족하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깥에 알려 권리 구제나 향상을 피하는 일도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학생을 조사하고 징계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관행은 학생을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존엄한 주체로 대우받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여 시민·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여 학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1-1, 1-2, 1-3
- 차별 금지 2-3
- 표현의 자유 7-2, 7-8, 7-10, 7-13, 7-15
- 사생활의 자유 8-3, 8-5, 8-6, 8-7
- 적법절차의 권리 13-4, 13-8

2. 교사의 언어폭력

“안 들리면 송곳으로 귀 뚫어” …부적절 교사에 감봉 2개월 정당

평소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자주 해온 교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북의 모 중학교 A교사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수업 중 청력이 약한 학생들에게 “안 들리면 송곳으로 귓구멍을 뚫어라”는 말을 자주했고 2004년 10월 학생이 A씨의 말을 흉내내 “선생님도 귀를 뚫으셔야겠네요”라고 말하자 책과 분필을 던지고 철제 의자를 들었다가 놓은 뒤 교실을 나가버렸다.

A씨는 진상을 듣기 위해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 20여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교사와 학부모에게 폭언 등을 하다 학교측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감봉 2개월로 완화됐지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실 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실을 나간 것은 교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품위를 훼손한 행동으로 판단되고 잘 듣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언행을 했다 해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력 장애 학생에게는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교육의 중심인 학교교육의 수행자로서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전문직으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현길 기자/ [국민일보] 2007-04-06

▶ 문제점 분석

교사의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언어폭력에 대해 체벌에 반해 상대적으로 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위 사례에서 나타나듯, A교사는 청력이 약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보다 오히려 “송곳으로 귓구멍을 뚫으라”는 식의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 게다가 “선생님도 귀를 뚫으셔야겠네요”라는 학생의 말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책과 분필을 던지고 의자를 들어 위협하는 등의 행동으로 학생을 공포 상황에 몰아넣기도 했다. 또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찾아온 학부모의 해명 요구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교사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멸감과 위협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적 소수자’들을 폄하, 비난하는 말을 통해 학생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은 잦다. 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언어폭력은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로 이어지기도 하고,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언어폭력이 함께 행사되기도 한다. 2006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실시한 경북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도내 중·고등학교 635명 가운데 44%가 ‘선생님이 바뀌어야 할 행동’에 대해 ‘거친 말’이라고 지적했다(내일신문 2006-09-19).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한 학생에게 오히려 전학을 가라고 폭언을 퍼부은 전남 나주의 초등학교 학교장의 사례(CBS 2007-03-16 보도) 역시 학생을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인권의 가치를 교육하고 소수자를 존중해야 할 교육의 책임을 내던지는 일이기도 하다.

다른 모든 형태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언어폭력 역시 피해자인 학생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폭력에 길들여지는 효과를 낳는다. 교사나 관리자에 의한 언어폭력을 묵인하거나 관용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저해하는 교육 문화를 형성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1-9
- 차별 금지 2-1, 2-17, 2-19
- 교육에 대한 권리 3-1
- 신체의 자유 5-1, 5-3

3. 성폭력 피해 학생 실명 공개

인권위 “학교측이 성폭력 피해 학생 실명 공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8일 성폭력 피해 학생의 실명이 기재된 유인물 등을 배포한 경남 마산 A 중학교를 경고 조치할 것을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한편 A 중학교장은 교직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사건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A중학교가 피해 학생 및 성폭력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고 성폭력 사건의 2차, 3차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하는

데도 피해자의 신상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는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1조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 중학교는 학내 성폭력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 항의전화가 빗발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탄원서 형식의 유인물을 제작, 학부모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해 아이들 상황에 여파 없도록 부모님의 조언과 지도를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한모씨(37)는 "A 중학교 측이 학교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실명이 기재된 유인물(탄원서)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 후 학부모들에게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선주 기자/ [뉴시스] 기사입력 2006-11-08

▶ 문제점 분석

애초 마산의 S중학교는 교사에 의해 학교 강당과 화장실 등에서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여학생의 아버지가 교사를 경찰에 고소하자, 해당 교사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주장에 대해 학교측은 '허위로 조작된 중대한 교권 침해'라고 판단, 전체 교직원을 비상소집하여 외부 전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탄원서' 형식의 유인물을 제작해서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다.

이 사건에서 학교측은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이미 '허위 주장'이라는 예단을 갖고 사건을 편파적으로 대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도덕적 비난을 가하고 권리 구제를 가로막고 있다. 나아가 성폭력 사건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학생의 신상을 유인물과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사생활과 여성인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결정을 내리자, 학교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뒤늦게라도 학교측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수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애초 학교측이 피해학생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대책자료를 제작, 유포한 것은 학교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과 다른 재학생들과 학부모의 동요가 없도록 학교를 빨리 정상화시키려는 욕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바람에 피해학생, 특히 여성의 존엄성을 지지하고 성폭력 피해의 재발을 막으려는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학교는 고통스럽지만 사건의 진실과 마주하고 피해학생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노력했어야 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차별 금지 2-1, 2-8, 2-14
- 신체의 자유 5-5
- 사생활의 자유 8-10
- 개인정보통제권 9-2
-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의 보호받을 권리 14-11, 14-12, 14-13, 14-14, 14-16, 14-17
- 권리를 지킬 권리 15-1, 15-2

4. 장애학생의 교육 배제

장애학생들 “수련회 가고 싶어요” 학교 밖 활동 제외되기 일쑤...교육청 ‘동참공문’ 무색

#1 서울 마포구 한 중학교는 이달 중순 수련회를 앞두고 장애 학생 부모들에게 “장애 학생들은 수련회 대신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겠다”고 통지했다.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학교 쪽은 수련회에 학부모가 꼭 동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2 서울 성동구 사초등학교에선 특수학급도 있지만 수련회에 참가한 장애 학생이 한 명도 없다. 학부모 최아무개씨는 “교장에게 참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단박에 거절당했다”며 “장애 아이들은 청계천을 둘러보는 것으로 수련회를 대신했다”고 말했다.

수련회나 1일 현장학습 같은 초·중·고교의 학교 밖 교육 활동에 장애 학생들이 배제되고 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5일 “수련회, 현장학습 등도 엄연한 교육 활동인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의 한 장애 학생 학부모는 “아예 알리지도 않은 채 비장애 학생들만 현장학습에 데려갔다”며 “이에 항의하자 ‘교사 재량’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kimyh@hani.co.kr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 운영비로 보조 인력을 써서 학교 밖 활동에 장애 학생을 동참시키라는 공문을 학교들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이런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구교현 서울장

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배려하지 않는 학교장이 적지 않다”며 “학교 운영비가 부족한데도 추가 지원 없이 보조 인력을 구하도록 한 교육청 방침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정구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교육 활동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고, 문제가 생긴 학교장에겐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더 적극적인 제재를 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적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차별 학교 제재 및 보조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최현준 기자/ [한겨레] 2007-06-06

▶ 문제점 분석

장애를 가진 학생이 일반학교에 들어가 무사히 졸업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특수학교 입학은 중용당하거나 편의시설이나 특수학급,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편의시설이 없는 교실 접근이 불가능해 특정 수업에서 배제되는 등 온갖 불편과 수모를 감수하며 학교를 다녀야만 한다. 특히 위 기사에서 보고되고 있듯이, 운동회처럼 활동성이 높은 교육활동에서나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처음부터 배제되거나 보호자의 동반, 보조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 부담 등을 요구하는 차별 행위도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2007년 5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장애학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장애학생의 부모에게서 받았을 뿐 아니라, 학부모에게 수학여행에 동행하되 학생들이 탄 버스에 동승하지 말고 개인 승용차로 뒤따라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07-05-24). 결국 두 명의 장애학생은 수학여행을 포기했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가(在家) 장애인의 15.8%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45.2%,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경우는 62.0%라는 사실은 학교가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얼마나 차별적인 공간인지를 짐작케 한다. 다행히 2007년 4월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명 장애인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해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크게 강화됐다. 학교가 장애학생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교육 기회에서 배제하는 등 차별하면, 심사 청구,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로 법적으로 보장됐다. 그러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학생의 차이를 고려하여 동등한 교육 접근을 보장하려는 자발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 조치는 비장애학생에게도 살아있는 인권교육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차별 금지 2-1, 2-17, 2-18, 2-19
- 교육에 대한 권리 3-1

5. 10대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청소년 10명 중 1명 성 정체성 방황

마음 터놓고 대화할 상대 없어 ... 학교내 성소수자 대책 절실

#중학교 3학년인 김영진(가명·15)군은 학교안에서 이른바 이반으로 통한다. 이반은 보통 사람들이 이성간의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사람)의 상대적 개념으로 쓰이는 말이다. 이반은 곧 같은 성에 대해서 사랑 등의 감정을 느끼는 동성애자를 말한다.

김군은 평소 자신의 여성스러운 성격을 고치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도 하지만 남학생 친구에게 가지는 묘한 감정을 어쩔 수가 없었다. 김군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 때 마음이 끌리는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가 친구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곧 고등학생이 되는 김군은 평소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청소년성소수자커뮤니티'라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은 한 남자 중학생의 실제 얘기다. 이 카페는 올해 초에 문을 열었는데 현재 회원수가 400명을 넘어섰다.

◆동성애자 청소년의 성 갈등 = 통합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7년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 10%가 성 정체성과 관련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8일 청소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07년 10월 현재 인터넷에는 20개 이상의 10대 이반 카페가 있으며, 회원 수는 최대 2만8000명에 달한다"며 "최소 5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성에 대한 정체성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또 이날 국감에서 이들 성 정체성으로 방황하는 청소년 가운데 77.4%가 자살을 고민한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47.7%가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이 같은 통계는 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해행

위나 자살을 기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에 비춰볼 때 훨씬 높은 것이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상담을 요청한 이희진(가명·17)양은 “부모님이나 친척들은 당연히 남자와 결혼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 고민을 남한테 털어놓지 못해 괴롭다”며 “죽고 싶다는 충동도 많이 느낀다”고 털어놨다.

◆학교내 성 소수자 따돌림 심각 = 이처럼 학교안에서 성 소수자인 학생들이 겪는 갈등이 심각한데도 일선 학교에서는 이들의 고민을 들어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이 이와 관련한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17.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청소년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하거나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으며, 정부예산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성 소수자에 대한 일선 학교 교사들의 인식수준도 커다란 문제다.

신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상담 교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관련 학생을 세워놓고 “다시는 동성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지시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 차원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교사교육을 실시할 것과 우울증이 있거나 자살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착각하고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며 “상담원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ی겠다”고 답변했다.

윤여운 김현경 기자/ [내일신문] 2007-10-19

▶ 문제점 분석

자신의 성적체성을 탐색 중이거나 성소수자임을 자각한 10대에게 가장 두려운 공간은 학교와 가족이다. 자신의 성적체성이 밝혀졌을 경우 폭력은 물론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위험까지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로 성적체성을 고민하는 10대들이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2차 폭력의 위험에까지 놓이게 되는 셈이다. 동성애를 변태나 에이즈의 주범 등으로 잘못 묘사하고 있는 교과서나 성교육의 방향, 동성친구와 스킨십만 있어도 동성애로 의심하고 관계를 끊고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학교의 지도방침(이른바 ‘이반 검열’)도 10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한 10대 레즈비언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체성이 주위에 알려져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업 시간에 발표는 꿈도 못 꾸고, 화장실 갈 때마다 시선을 참아가며 눈

물을 삼켜야 했”고, “상담 선생님한테 말하자 ‘그러게 네가 조심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또 다른 상담 선생님에게 말했을 때도 ‘남자 좋아하려고 노력하라’면서 자기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고 한다(일다 2007-08-17)고 고백하기도 했다. 학교가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 커녕 차별을 강화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강고한 만큼 학교도 여기에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학교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성소수자인 학생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차별 금지 2-1, 2-27, 2-28, 2-29
- 교육에 대한 권리 3-1
- 사생활의 자유 8-13, 8-16
- 건강권 10-4, 10-5, 10-6
-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의 보호받을 권리 14-11, 14-12, 14-17

6. 폐교 위기에 몰린 공고

동호공고 ‘집중지원학교’ 선정 1년도 안돼 폐교 추진

폐교 추진 중인 서울 옥수동에 위치한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동호공고)가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에 의해 ‘좋은학교만들기 자원 학교’로 지정된 사실이 9일 드러났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란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행·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학교를 말한다.

시교육청이 동호공고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부 여론에 굴복해 동호공고 폐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근시안적이고 무소신의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동호공고는 지난해 7월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로 지정된 후 같은해 10월 특성화고교로 지정·발표됐다. 시교육청은 ▲2007년 도약기(특성화고교 신입생 모집) ▲2008년 적응기(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2009년 성숙기(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동호공고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최근 동호공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초등학교를 세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이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했다. 그러자 이번엔 이전대상 지역주민들이 반발, 이전 계획은 좌절됐다. 시교육청은 아현산업정보학교와 이 학교를 통합하는 방

안까지 추진했으나 또 다시 아현동 주민들이 반발, 결국 동호공고를 폐교기로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학한 정책실장은 “공고나 상고 등 실업계 학교들은 이미 ‘혐오시설’로 간주돼 지역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면서 “동호공고가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말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지역 주민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동호공고를 폐교하는 것은 시교육청이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실업교육 육성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동호공고 폐교에 대한 심의권한을 갖고 있는 시교육위는 폐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교육위 강호봉 의장은 이날 “오는 12일 열리는 교육위 정기회의에서 동호공고 폐교를 다루기로 했으나 시교육청에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말 것을 주문할 계획”이라며 “교육위원들이 최근 간담회를 열어 ‘동호공고 폐교 방침에 무리수가 많다.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청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방침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선근형 기자/ [경향신문] 2007-09-10

동호공고 관련 일지

2006년 7월	동호공고,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로 선정
2006년 10월	동호공고, 특성화고교로 지정
2007년 1월	동호공고, 마곡지구 이전 무산
2007년 5월	동호공고와 아현산업정보학교 간의 통합 추진
2007년 8월	서울교육청, 동호공고 2010년 폐교 행정예고

▶ 문제점 분석

지역 주민의 민원에 밀려 2007년 갑작스런 폐교 위기에 놓여 논란을 빚었던 서울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아래 동호공고) 사건은 한 달여 만에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존치 결정이 나면서 막을 내렸다.

문제의 발단은 5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도 초등학교를 신설하지 않는 데 있었다. 이 바람에 이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은 30분 거리에 있는 학교까지 위험한 찾길을 지나 통학을 해야 할 처지였다. 자연스레 인근 초등학교의 설립은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이 되었고, 그 날벼락은 동호공고에 떨어졌다. 동호공고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지으면 초등학생의 교육권 확보는 물론이고 땅값도 올라가려는 욕심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줄기 차게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학교와의 통폐합 등을 추진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결국 폐교를 통보해 왔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존치 결정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그 사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만만치 않았다.

애초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면서도 범망을 피해 초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은 것은 초등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한 처사였고, 그 결과 초등학생들의 안전도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 게다가 동호공고와 다른 학교와의 통폐합, 폐교 결정 등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동호공고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조차 없었고, 모든 결정에서 동호공고 학생의 학습권은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주민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에서나 이 사건이 언론과 온라인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전문계(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편견을 방관하고 오히려 그 편견에 편승하여 폐교 결정을 내리는 등으로 모든 학생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할 책임도 다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겉보기엔 초등학생의 교육권과 공고생의 교육권이 충돌한 사례로 보이지만, 사실은 돈 욕심에 학생의 교육권이 차례로 침해된 사례이다. 또 동호공고 교사들과 학생 보호자들이 적극 나서 폐교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동안,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서명운동에 나선 학생들도 있고 학생회 간부들이 서울시교육위원회를 찾아가는 등의 활동을 벌였지만, 학생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는 존재로 머물러 있었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차별 금지 2-1
- 교육에 대한 권리 3-6, 3-7
- 안전권 11-4
- 권리를 지킬 권리 15-2

7. 강제 보충수업 등 거부한 교사 해임

시험지 유출교사는 ‘감봉’...괘씸죄 교사는 ‘해임’
포항 ㄷ중 “보충수업 안 시키고 과학교육은 실험 위주로만”

경북 포항 ㄷ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해임 당했다. 교사는 ‘괘씸죄에 걸린 부당 해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손규한 교사는 지난 3일 사립학교인 ㄷ중학교 재단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재단이 밝힌 징계 사유에는 오히려 교육부 방침을 충실하게 따른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재단은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의무적으로 시키지 않고, 강제 머리모양 규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얘기한 것 등이 징계 이유’라고 밝혔다. 과학 교과를 맡고 있는 손 교사가 ‘실험 교육만 강조해 2년 전 치른 도학력 성취도평가에서 학력이 낮게 나온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재단이 밝힌 징계 이유를 살펴보자. △학교 비리를 폭로하는 데 학생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부추긴 점 △교칙(두발·복장)을 집단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선동 △월요 전체조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학교와 재단 관계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점 △담임을 맡은 학생들을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은 점 △실험교육만 강조해 2004년 도학력 성취도평가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낮게 나온 점 △인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교장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점 등이다.

이에 대해 손 교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학생들의 머리모양을 규제하지 말자고 했고, 교육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 보충수업에 반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칙이나 학교 방침을 거부한 것이 ‘해임’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손 교사는 “7차 교육과정에 맞춰 실험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필요한 이론교육은 다 하고 있다”며 “1년에 30~40차례 실험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스스로 실험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월요일 조회에 참석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 예배를 하는 월요일 조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사립지회장을 맡고 있는 손 교사는 학교 쪽에 ‘민주적인 인사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는 “학교장이 인사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말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하자고 요구하는 게 징계사유냐”고 되물었다. “학교운명을 민주적으로 하자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등과 마찰을 빚은 적은 있지만 폭언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는 게 손 교사의 주장이다.

이 학교 교감은 “징계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볼 것도 없이 평소에 학교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업뿐만 아니라 매사에 불성실하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때가 되면 새로 구성하기로 예정된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라고 학교장을 계속 괴롭혀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학교 일에 사사건건 반대를 해 오죽하면 동료교사 37명이 서명까지 해서 (해임을) 요청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학교는 지난 2000년 자신의 아들에게 중간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교사를 1개월 감봉하는 수준에서 징계를 마무리한 바 있다. 손 교사가 “괘씸죄”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손 교사는 “부당한 해임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청하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해임 철회 절차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11년째 이 재단의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해온 손 교사는 현재 학교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주희 기자/ [한겨레] 2007-01-12

▶ 문제점 분석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당국의 책임 이행은 물론 교사들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 소임을 다하는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용기를 내어 학생인권의 편에 선 교사들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포항 ㄷ중학교 손규한 교사의 해임 사례는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학교가 교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애초 포항 ㄷ중에서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보충수업을 시키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학생생활규정을 두고 있었다. 학교 비리도 심각해 학생들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교실에서 겨울방학 동안 보충수업을 받아야 하는 등 학습 환경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손규한 교사는 학생들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학교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해임 통보였다. 재단측은 2007년 1월 손 교사를 해임했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취소 결정을 내리자, 절차를 다시 밟아 복직 47일만에 손 교사를 다시 해임했다.

학생인권과 자치,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다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와 학생은 끊이질 않고 있다. 2004년 인천외고에서도 교장의 강제 자율학습 지시, 두발규제 강화, 가혹한 벌점제와 유급제 도입 등에 맞섰던 교사 2명이 해임됐고 학생들의 변화 요구는 번번이 무시됐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교육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학생과 교사의 인권 보장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1-1, 1-2, 1-6, 1-7
- 교육에 대한 권리 3-1, 3-2, 3-9
- 학생 자치와 참여권 4-1, 4-4
- 정보접근권 9-7, 9-8
- 건강권 10-1

8. 일방적 두발규정과 강제이발

중·고생 무리한 두발규제 인권이 ‘싹둑’

신학기를 맞은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강제이발 등 무리한 두발규제를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교사는 머리가 긴 학생들을 ‘사진채증’까지 하는 등 비교육적인 행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의 사중학교 학생이 경찰에 담임교사를 신고했다. 두발 단속 도중 담임교사가 가위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 교사는 한반에서만 5~6명의 머리를 강제 이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교감 선생님이 ‘학생 전체를 통제하기 힘이 드는데 열성적으로 (통제)하는 선생님이 있는 게 학교로선 다행’이라며 “‘선생님이 꺾이지 않게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해 황당했다”고 전했다. 두발규정이 학생 통제의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뒷 머리카락이 정확하게 반만 잘려나간 학생. 이 학생은 결국 짧아진 길이에 맞춰 머리를 깎았다.

또 이 학교에서는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등교하는 학생들을 카메라로 찍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모군(15)은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에도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머리 사진을 찍는다”며 “마치 죄수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에게 여러 번 주의를 줬고 가정통신문을 보냈으나 지켜지지 않아 우리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발규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동의서 제출을 강요하기도 한다. 김모군(15)은 “선생님이 ‘동의서를 내일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전학시키겠다’고 했다”며 “말만 ‘동의서’지 실제로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구의 사고등학교에서도 강제이발이 실시되고 있다. 이모군(17)은 “가위로 머리를 바싹 깎는 바람에 상처를 입은 친구도 있었다”며 “지난해 학생회에서 두발규정을 개정하자고 서명운동을 했지만 학교측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두발규정이 예전보다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내 사립 중·고등학교나 지방학교를 중심으로 두발규제는 여전히 건재하다. 학생들의 반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오병현군(당시 서울 동성고 3년)은 두발규제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했다가 학교측에 찍혀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졸업을 해야 했다. 수원 청명고 학생들도 두발규제에 대해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발규제를 하더라도 강제이발은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할 도리는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심은주 학생생활담당국장은 “학생과 함께 이를 고쳐나가야 하는데 학생들을 규정에 강제로 맞추고 있다”며 “통제만 있고 인권은 없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전누리씨는 “두발규정은 청소년이 개인의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3~4월 중으로 교육부에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문제점 분석

두발자유는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요구 가운데 맨 앞자리를 차지해 왔다.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두발규정이 계속 강요되다 보니 무리한 두발 단속이 이어지고,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다 보니 체벌, 강제이발, 교내 봉사 등의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두발 자유 또는 두발 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 교육부도 적어도 강제이발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강제이발은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된 학생인권 관련 사건 중 태반이 두발규정과 강제이발에 관한 진정이고,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큰 불만을 쏟아내는 것도 여전히 두발규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규제에 대해 두발의 자유는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학생의 기본권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자기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므로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과 절차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학교당국은 강제이발을 자행하는 것은 물론 두발제한 규정이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학생들의 개정 요구가 무시된 것도 문제이고 학생에게 양심에 반한 동의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그 이유가 입증되지 못하는 한 두발규정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강제이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1-1, 1-2, 1-3, 1-12
- 교육에 대한 권리 3-1
- 학생의 자치와 참여권 4-1
- 신체의 자유 5-2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6-1
- 표현의 자유 7-2, 7-4
- 권리를 지킬 권리 15-1, 15-2

9. 이름뿐인 학생회

"회의실도 없어요"...중·고교 "이름뿐인 학생회"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생회 선거에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가 10곳 중 2곳에 불과하고 후보 자격에 대해서도 성적, 품행 등 여러 제한사항이 있는 등 학생자치 활동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서울, 대전, 경기, 대구, 전북 등 5개 지역의 948개교(고등학교 866곳, 중학교 82곳) 학생자치 활동을 조사한 결과 선거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는 218개교(23%)에 불과해 나머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비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회장 후보자격은 담임 추천, 성적, 품행, 신앙 등으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임 추천의 경우 726개교(76.6%)가 필요했고, 성적은 150개교(15.8%), 객관적 기준일 수 없는 품행 역시 124개(13.1%) 학교에서 지원자격으로 삼고 있다. 심지어 서울 시내 고등학교 중 3곳(0.3%)에서는 신앙 유무까지도 제한을 뒤 학생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학생회장 후보 자격제한 종류
(중복응답)

구분	학교수
징계유무	391(41.2%)
성적	150(15.8%)
품행	124(13.1%)
출결	53(5.6%)
신앙	3(0.3%)
벌점	3(0.3%)
기타	224(23.7%)

<자료:민주노동당>

올해 초 논란이 일었던 두발 자유화와 관련해 360개교(38%)에서만 두발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학교 자율로 결정하라는 방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회 환경 역시 매우 열악해 243개교(22.4%)가 학생회실이 없다고 답했고, 대구지역에서는 중·고등학교 105곳 중 절반이 넘는 62곳이 학생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학생 자치활동인 학생회가 학교장 혹은 지도교사의 의지, 학교의 학생회 운영 전통에 따라 그 활동 내용 및 학교의 지원 편차가 심각하다”며 “학생회 법제화, 체벌 금지 등 법 제도의 정비로 학생자치 활동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세계일보 2005-11-04

▶ 문제점 분석

학생회는 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증진한다는 교육적 목적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 상대적 약자인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기구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학생회가 학생대표기구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으려면, 학생회 구성에서부터 활동 전반에 있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원하는 변화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학생회 활동의 자유는 단지 학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만 하면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학생회 활동을 펼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시간, 공간, 물품의 제공과 같은 실질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학교에서 학생회는 학생대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학생회 임원 자격규정부터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간섭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학생회 대표가 학생생활지도협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학생회는 학생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1-1, 1-2, 1-12
- 차별 금지 2-1, 2-2,
- 교육에 대한 권리 3-1, 3-3
- 학생 자치와 참여권 4-1, 4-2, 4-3, 4-4, 4-6, 4-7, 4-8, 4-9, 4-10
- 정보 접근권 9-7,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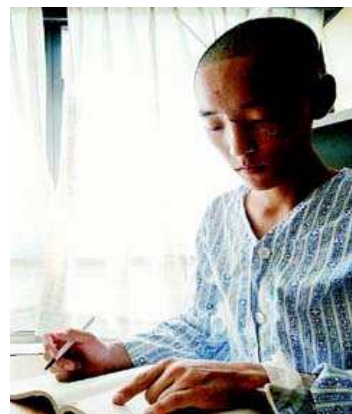
10. 학교의, 학생에 대한 특정 종교 강요

‘학내 종교자유’ 빛을 얻다

강의석군, 예배선택권 보장 이끌어
 당연한 권리 일깨운 46일 단식 마쳐
 “머리맡 초콜릿 가장 큰 유혹이었죠”

18살 고교생의 종교 자유를 위한 목숨을 건 싸움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

학내 예배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을 벌였던 강의석(18·서울 대광고 3)군이 지난 25일 학교 쪽과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예배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의 자율권을



준다'는 데 합의하고, 마침내 단식을 풀었다. 교내 방송을 통해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한 지 101일, 단식 46일 만이다.

△ 46일간의 단식 끝에 학교측으로부터 예배 참석의 자율권을 보장 받은 강의석(대광고3)군이 29일 건강 회복을 위해 서울 안암동 고려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강군은 단식을 푼 뒤 곧바로 서울 안암동 고려대 병원에 입원했다.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몸무게는 77kg에서 50kg으로 줄었다. 추석을 병원에서 보내며 빠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는 강군은 29일 “학교 쪽과의 합의로 사실상 학생들의 예배 선택권이 보장되게 됐다”며 “그동안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광고는 정기예배가 있는 다음달 13일 전에 학생들의 예배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광고는 24일 오후 12명의 교사들로 이뤄진 ‘기독교 교육문제 대책협의회’를 열어 △예배 거부 학생에 대한 대체활동 계획을 재단·교단·기독교학교연합회와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고 △대체계획 마련 전까지는 담임교사·교목실·학부모의 상담과 동의를 얻은 학생에게 예배 선택권을 준다는 방안을 정한 뒤, 전체 교직원 회의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직은 비록 한 학교에서만 이뤄진 일이지만, 한 고교생이 이룬 ‘작은 혁명’은 다른 종교계 사립학교들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카페 ‘미션스쿨 종교자유’(cafe.daum.net/whdrytkfkd)에는 예배 선택권을 얻어낸 강군에 대한 축하와 건강을 비는 글이 이어졌으며, 강군을 지지해 온 시민사회 단체들도 환영 뜻을 밝히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학교 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은 29일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기독교계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종교계 학교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성명을 내어 “모든 학내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대광고 교사들과 재단에 감사드린다. 강군이 이룬 시일 안에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월 16일 학교에서 이뤄지는 강제적 예배에 반대하는 ‘교내방송’을 내보내며 시작된 강군의 싸움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내 종교 자유’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지난 7월 8일 제적당하면서 소리 없이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강군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며 싸움을 이어갔다. 결국 지난 1일 법원의 ‘퇴학무효 가처분’ 결정으로 학교 복귀와 함께 예배 선택권을 부여받았지만, 강군은 ‘전교생의 예배 선택권’을 주장하며 단식을 멈추지 않았다. 인터넷 카페에는 강군을 지지하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학교 종교 자유’를 놓고 100일 넘게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강군에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달 넘게 단식을 하는 자식을 보다 못한 강군의 부모가 응급차를 부르자 입을 떼지도 못할 정도로 쇠잔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가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힘든 만큼 값진 싸움이었다. 29일 병상에서 밀린 수능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강군은 “단식을 푼 지 5일 만에 몸무게를 15kg 정도 회복했다”며 “단식기간 중 모두들 잠든 밤에 머리맡에 놓인 초콜릿이 가장 큰 유혹이었다”고 말했다. 강군은 “당연한 권리였기에 내 목소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었고, 그 희망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권리를 일깨워줘 고맙다”는 친구의 문자 메시지에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

“수학점수가 50점이나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수능시험 공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 들어가면요? 물론 학교 종교자유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겁니다.”

강군은 단식을 하면서 자신의 일기 ‘바보일지’에 “약속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썼지만, 어느새 자신과의 약속을 또하나 하고 있었다.

김남일 기자/ [한겨레] 2004-10-01

▶ 문제점 분석

강의식의 종교 자유 싸움은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종립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온 관행에 맞선 대표적 사례이다.

종교 자유를 주장했다 퇴학까지 당해야 했던 강의식 씨는 이후 ‘학내 종교 자유를 침해당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내용으로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광고에 대해서는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해도 그것이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며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이나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강의식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겨레 2007-10-06).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종립학교에서는 대체과목과 대체활동 없이 종교 수업이나 종교의식 시간을 따로 두어, 학교의 특정 종교를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경우 부당징계나 서약 등으로 학생의 종교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는 헌법(헌법 제20조 1항)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언(18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특정 종교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1-6, 1-7
- 교육에 대한 권리 3-1, 3-5, 3-9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6-6, 6-7, 6-8
- 적법 절차의 권리 13-1, 13-3, 13-5, 13-10, 13-12
- 권리를 지킬 권리 15-1, 15-2, 15-3

11. 국가에 대한 충성 강요

국민의례 거부 학생낙방 '정당' 결정

경기도 교육청은 최근 학생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불합격 처리한 학교측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도(道) 교육청은 의정부 모 고등학교측이 지난해 12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민의례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응시생 박모(16)군을 불합격처리하자 박군의 어머니가 경기도교육청에 낸 '신입생 선발 대상자 불합격처분 취소지도요청 진정서'에 대한 답변에서 최근 이같이 밝혔다. 교육청은 답변을 통해 "학생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학칙이나 학교의 제반규정을 포함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측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교육단체들은 "박군은 면접용 자료를 통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등 국민의례를 할 수 없으니 양해해 줘으면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며 "이를 이유로 불합격을 시킨다면 개인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목적 수행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일부를 부정하는 학생에 대한 불합격 처리는 학교의 학생선발권 및 교육권 행사로 볼 수 있다"며 "비적용지역의 경우 학교장에게 선발권이 있는 만큼 다른 학교에 응시할 경우 합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수원 연합뉴스 / [한겨레] 2004-02-03

▶ 문제점 분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사건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국민의례를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의

일부로 보아, 이를 거부하는 학생은 건전하지 못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는 고정관념이 학생의 학습권과 사상·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학교장 재량에 따른 학생 선발권을 학생의 사상·양심·종교에 따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보다 우위에 두는 것은 학생이 학생이기 전에 존엄한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차별금지 2-1
- 교육에 대한 권리 3-1, 3-21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6-2, 6-4, 6-6

12. 교내 집회 금지

학생들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는 없었다

[현장] 양동중학교 두발자유 집회 무산, 학교는 공청회 예정



▲ "두발규제 싫어요!" - 양동중학교 학생들은 19일 점심시간에 학내 집회를 열려고 했으나 교사들의 통제로 실패했다. 학내 집회가 열릴 거라는 소식을 듣고 지방방온 온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철망을 사이에 두고 이들은 목소리를 합쳤다.

아직 학생들에게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기자는 서울 양천구 목3동에 위치한 양동중학교에서 19일 학생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현장을 찾았다. 양동중학교는 이미 지난 4월 3학년 학생 50여 명이 두발자유와 체벌금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학생들은 낮 12시 반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장에서 구호를 외칠 거라고 했다. 이 학생들이 다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은 최근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네트워크)’ 회원들의 지원 의사였다. 이 활동가들은 실제로 학생들의 집회를 지지하기 위하여 이날 양동중학교 정문 앞으로 모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집회 모의’는 사전에 발각된 듯 했다. ‘점심시간에 모여라’는 쪽지를 돌리던 한 학생이 교사에게 들켰다는 것.

학교 측은 평소와는 달리 교문을 꼭꼭 걸어잠겼다. 선도부 학생이 나와 그 교문을 열고 닫으며 출입자를 통제했다. 또 학생부 교사들은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동장에 나와 아이들을 감시했다. 이 학교 3학년 김모 학생은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운동장을 지키고 서 있어서 모두 겁을 먹고 흩어졌다”고 증언했다.

학교의 담장은 높기도 높았다. 감시의 눈길을 피해 운동장 가장자리로 밀려난 ‘시위 주도 학생’들은 담장 바깥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상황을 전했다.

“선생님들이 짝 깔렸어요. 못할 것 같아요.”

점심시간은 그대로 끝나버렸다. 네트워크 회원들은 굳게 잠겨진 교문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 교실의 학생들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이 광경을 호기심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고, 체육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에 나와 있던 학생들은 담장 철망에 매달려 말을 걸거나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학교에서 학생부장 교사와 교감이 나와 네트워크 회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최병영 교감은 “강제적 두발 단속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기자가 학생 열 명을 붙잡고 물어도 열 명 모두 “두발 단속 있었어요”라고 증언했다. 이들 중 어떤 학생은 “시험 보는 중에도 머리채를 잡혔다”고 말했으며 다른 학생은 “교실에서 머리를 잘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학교 3학년 김모 학생은 “정문에서 머리 안 걸리려고 아예 아침 일찍 온다”며 “친구들은 머리 걸리지 않으려고 담을 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의 담은 매우 높았는데, 다치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었다.

최 교감은 “학교에는 정해져 있는 계획이 있다”며 “9월에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모여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모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양동중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매우 민주화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자유를 느끼는 학교”라고 말했다.

학생부장 교사는 “외부조직이 학교에 와 아이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차가 달려오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경찰을 향해 “우리가 범죄자도 아닌데 왜 왔느냐”고 말하자 경찰은 머쓱해하며 다시 돌아갔다.
(……)

김고종호 기자/ [시민의신문] 2006-07-21

▶ 문제점 분석

두발자유를 외치고자 학생들이 계획했던 학내 집회가 학교당국에 의해 가로막힌 사례이다. 서울 양동중학교 학생들은 2006년 4월 두발자유와 체벌 금지를 외치며 1차 학내 집회를 열었고 그 결과 ‘주동자’로 몰린 학생들이 징계위기에 내몰렸다. 이를 안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학교는 일단 징계를 유보하고 두발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를 약속했다. 이 공청회 개최 약속이 차일피일 미루어지자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2차 학내집회를 계획했다. 그러나 이 집회 계획을 사전에 알게 된 학교당국은 집회 개최를 가로막았다.

학교는 학내 집회를 ‘집단행동’의 일종으로 보면서 학생 신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행동으로 간주하고 막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집회는 학생의 의견을 모아 집합적으로 분출하고 학교당국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학생에게도 당연히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내 집회를 시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과잉 징계로 학교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자, 교육부는 “학내 시위가 발생할 때 무조건 막기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학생을 지도”하기로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관 회의에서 결정했다(경향신문 2006-05-07). 이 결정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양동중학교의 1차 학내 집회였다. 그러나 바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의 2차 집회 계획은 학교의 방해로 무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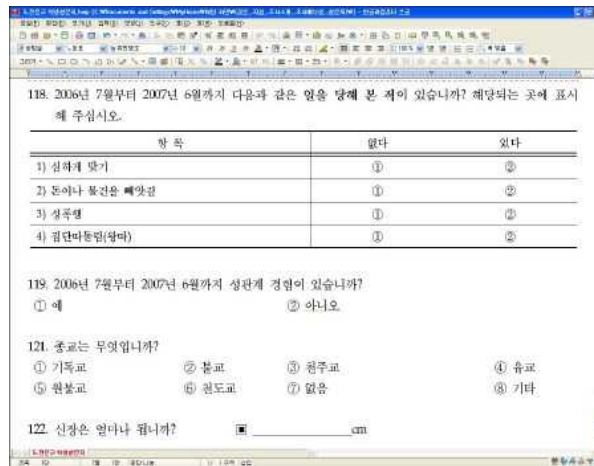
학교는 학생들이 여는 집회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는 그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를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엄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칙도 손봐야 할 때이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1-1, 1-2, 1-3
- 신체의 자유 5-1, 5-2
- 학생의 표현 7-2, 7-4, 7-7, 7-8, 7-9, 7-10, 7-13, 7-15
- 권리를 지킬 권리 15-1

13. 별 걸 다 묻는 설문조사

‘성폭행, 부모이혼 여부’ 등 실명조사 논란 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협조로 전문계고 학생 등 13,700명 설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원덕)이 전국 전문계고 학생 등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성폭행(가담)과 피해 여부’ 등 미성년자의 은밀한 정보까지 캐묻고 나서 말썽을 빚고 있다. 교육부의 협조로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학생 연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일 일선 학교에 따르면 해당 학교 가운데 일부가 이 기관의 설문을 전면 거부키로 결정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은밀한 정보를 실명으로 묻고 있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11월 1일 전문계고 50여 개교 등 전국 100여 개교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별 조사대상 학생 명단을 요구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 문항을 함께 보냈다. 올해 설문 규모는 1만 3,700명이다.

학생 대상 설문 문항을 살펴본 일부 교사들은 어리둥절했다. 패널조사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130개나 되는 문항 가운데 상당수가 다음과 같은 사적인 내용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년 반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핸드폰과 주소, 친구 2명의 이름 전화번호 전자메일’.

읽기에도 민망한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은 더 심각했다.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성관계 경험이 있습니까?’, ‘성폭행을 하거나 당한 적이

있습니까?’,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십니까?’.

이 밖에도 설문에서는 담임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지각, 결석과 성적(9등급) 내용까지 기록하도록 했다. 학부모 대상 설문은 한발 더 나아가 학생 이름을 적도록 한 뒤, 이혼 경험과 장애인 가족 존재 여부를 요구했다.

인천지역 한 전문계고 교사는 “실명조사를 하면서 ‘성폭행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등 연구진이 제정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여자 전문계고의 교감도 “여학생에게 해괴한 설문을 진행할 수도 없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 학교 차원에서 설문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설문을 진행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의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았다는 것.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이미 11월 말까지 대상 학생 명단을 직업능력개발원에 통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렇게 올해 패널로 신규 등록된 1,600여 명의 고교생들은 2015년까지 7년 동안 이런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인 다산인권센터 김경미 상임활동가는 “이번 설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가운데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면서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한 설문을 강행할 경우 인권단체들이 공동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윤근혁 기자/ [교육희망] 2007-12-12

▶ 문제점 분석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통계나 학생생활과 관련한 설문조사 의뢰가 자주 들어온다. 위 사례에서 나타나듯, 국책연구기관이 애초 연구 목적을 벗어나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전국 1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것은 정당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침해이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설문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 목적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문항인지를 살펴보았어야 하며, 민감한 성·폭력 경험과 가족형태에까지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를 그 정보의 주인인 학생과 학교 당국에 충실히 설명했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 경험처럼 피해자가 드러날 경우 2차, 3차의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학교 현장에서는 이같은 설문조사에 협조하면서도 학생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 정보의 주인인 학생에게 협조를 요구한다면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수적일 것이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사생활과 개인정보 8-9, 8-10

·정보접근권 9-2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의 보호받을 권리 14-15

14. 학교의 생체정보 수집

밥 먹자고 지문까지 찍어야 하나

[사설] 전라북도 지역 14개 학교가 돈을 안 낸 학생들이 밥을 먹는 것을 막으려고 급식소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지문을 찍게 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많은 터에, 한곳 급식소 운영의 편의를 위해 거의 모든 학생에게 지문을 찍어 등록하게 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학교의 인식 수준이 겨우 이 정도라니 걱정스럽다.

학생증이나 바코드 증명서가 급식 학생을 가려내는 데 미흡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급식비를 안 내고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부정하게 쓰는 일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학생증을 잃어버린 학생도 불편을 겪는다. 그렇다고 지문을 등록하게 한 것은 지나치게 운영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특정인 식별이 필요한 모든 곳에 개인 고유의 생체정보를 등록하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급식소 쪽은 한 대에 700만원 하는 지문인식기가 금세 본전을 뽑아줄 것이라는 계산만 했지, 학생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을 맡은 학교 쪽의 태도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학생에게 지문을 찍도록 했다고 한다. 일부 동의를 받은 경우도 학부모들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믿기 어렵다. 14개 학교가 모두 같은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는 것도 미심쩍다.

개인의 생체정보는 누구도 함부로 등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잘못 사용될 경우 부작용이 너무 크다. 상업적 목적의 지문인식기 설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한 대학교 기숙사 식당이 카드분실로 인한 문제를 없앤다며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적이 있다. 학생들의 반발과 인권단체들의 요구로 결국 운영을 중단했다. 학교 쪽이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문인식기를 스스로 철거하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생체정보 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한겨레] 2005-04-1

▶ 문제점 분석

학교에서 급식비 미납자를 가려내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문제가 된 사례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가 인권이라면,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과 교육에 필요한 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와 교육당국은 ‘무상교육의 원칙’에 따라 학생이 학교생활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급식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학생의 생체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하고 미납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은 학교의 교육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학생에게 씻기기 힘든 상처를 주는 행위에 다름없다.

학생은 교육에 대한 권리는 물론 안전하고 건강에 이로운 먹을거리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게다가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지문 날인을 강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집적·도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봐야 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차별 금지 2-1, 2-5
- 교육에 대한 권리 3-1
- 사생활과 개인정보 8-9
- 정보접근권 9-2
- 건강권 10-9, 10-10

15. 학생의 자기정보 접근 제한

자녀 성적표 인터넷으로 확인 교사와 온라인 상담도 가능케

앞으로 자녀의 학교 성적통지표, 성적 변화 그래프 등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교사, 교장·교감과 온라인 상담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go.kr)의 ‘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존 6가지에서 26가지로 대폭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국 1만1500여개 초·중·고교,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다.

자녀 성적과 관련해, 학기말 성적 결과만 제시하던 것에서 17일부터는 중간·기말고사 성적통지표를, 10월 중에는 성적 변화 그래프, 표준점수 분석표, 시험별 정·오답표까지 제공해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학교 교육과정도 담당 교사, 학급별 시간표, 주간 학습계획까지 알 수 있고, 자치·적응·행사·계발·봉사활동 누가기록 등 학교생활기록부

의 구체적인 내용도 볼 수 있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 교장·교감과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다. 김범수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팀 연구사는 “학부모와 교사, 학교가 더 긴밀히 소통하는 또다른 채널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한겨레] 2007-09-16

▶ 문제점 분석

현행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따르면 학교당국이 수집한 학생의 정보와 학생의 보호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작 학생은 자기 정보를 열람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에 속한 정보에 대해 자기가 열람하고 접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의 온전성을 존중받지 못함을 뜻한다.

학교 및 교육당국은 학생의 정보는 학생의 것임을 인식하고 학생이 자기 정보에 대해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1-3, 1-7
- 정보접근권 9-1, 9-2

16. 성장을 위한 정보

1만개 학교에 사서교사 고작 424명 26개교에 한 명꼴 ... 교육부 시설투자엔 3000억 ‘핑퐁’

2006년 12월 현재 전국 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는 4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만 1016개 초중등 학교의 3.8%에 해당되는 수치로 26개 학교에 한 명씩 배치된 셈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과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학교 도서관 현황 조사 분석 및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서교사 가운데 고등학교가 1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각각 96명과 128명(특수학교 2명)이었다.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비정규직을 뽑아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추산한 결과 기간제가 57명이고 계약직이 2716명이었다. 이마저도 어려운 학교는 학부모 도우미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교육부는 시설투자에 집중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3000억원을 들여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짓거나 개조한 도서관이 지난해까지 5049개였고 올해 1210개 도서관을 추가로 꾸미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화현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자문위원(서울 관악중 교사)은 “아무리 정보화 시설을 갖춘 도서관을 만들어 놓더라도 문이 잠겨 있다면 헛일 아니겠냐”면서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 도서관은 그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승철 교육부 지식정보기반과 사무관은 “일단 기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에 올해까지 사서교사 확충보다는 시설투자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올 상반기 중에 발표될 학교 도서관 2단계 사업에서는 전담인력 배치계획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혁 기자/ [교육희망] 2007-03-10

▶ 문제점 분석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삶의 세계로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학교 도서관의 시설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학교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내가 필요한 정보와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책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지원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학생의 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향유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학교 도서관이 담당 인력이 부족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당국은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사서교사의 배치에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정보접근권 9-3

17. 위생 불량 급식 사고

학교 급식소·식재료업체 ‘위생 불량’ 29곳 적발 “유통기한·냉장보관 등 위반”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식재료공급 업체들과 학교급식소 등이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위생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겨울철 식중독 예방과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 여부를 살피기 위해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일반음식점 등 1290곳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141개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

적발 업소에는 직영·위탁 학교급식소 7곳과 식재료공급업체 22곳이 포함돼 있는데, 식재료 공급업체 대부분은 학교급식용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다. 학교급식소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품을 상온에 그냥 두거나 조리 과정에서 수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등 위생 기준을 위반했다.

또 식중독 사고 조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보존식’ 보관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려 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했다가 적발됐다. 또 버터 등의 유제품을 취급하면서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식품가공업체에게 의무사항인 자가품질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식육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일반음식점 57곳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관리팀 한권우 사무관은 “학교급식의 위생 상태를 살피기 위해 학교급식에 납품을 주로 하는 식재료공급업체들을 집중 점검했다”면서 “최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 영업 대상으로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좀더 체계적인 식재료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한겨레] 2007-12-08

▶ 문제점 분석

학교 급식이나 학교 밖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먹고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2006년 CJ푸드시스템 급식 사고 : 경향신문 2006-07-01). 학교 급식에 쓰이는 식자재의 위생 불량에 대한 소식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법을 여러 번 개정하고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급식 안전성에는 여전히 빨간 불이 켜져 있다. 특히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 기업에 급식을 위탁할 때는 건강에 이롭고 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서부터 급식 운영 전반에서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건강권 10-9, 10-11

18. 등하굣길 위협받는 안전

"공사장 포위당한 내손초 이전을" 학부모들, 등하굣길 위험·소음 진동 수업에도 지장



▲ 내년 3~4월께가 되면 의왕 내손초등학교는 주변의 재건축 등 아파트 공사로 인해 공사장 한복판에 고스란히 갇히게 된다. (내손초등학교 재건축대책위원회 제공)

의왕시 내손동 소재 내손초등학교가 공사장으로 둘러싸이게 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군포의왕교육청과 내손초등학교 재건축대책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학교를 둘러싸고 대우사원주택조합 등 6개 주택조합이 최근 6천 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대우사원아파트와 연립아파트재건축을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이 학교는 8층의 펜스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상태며 인근 삼성래미안을 비롯한 동아에코빌·한일나래아파트 등의 거주 학생들은 1km가 넘는 공사장 길을 따라 등하교를 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특히 내년 3~4월께 토목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되면 이 학교는 공사현장 한복판에 고스란히 갇히게 돼 1천4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등하교는 물론 수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내손초교 학부모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수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착공 전 학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운영위 관계자들도 지난 13일 군포의왕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이날 의왕 시청을 방문해 전교생 학부모들의 연명으로 만든 교사 이전 신축 청원서를 냈다.

학부모들은 부근에 확보된 학교용지에 교사를 신축하고 나서 재건축 공사를 하기를 바라지만 교육당국은 학교 설립은 짧게 잡아도 2년은 걸린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포의왕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임시 분산 배정하는 등의 문제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근 기자/ [경인일보] 2007-11-15

▶ 문제점 분석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가 책임지고 조성해야 할 환경에는 학교 안 시설뿐 아니라 그 주변 환경도 포함된다. 학교가 공사장으로 둘러싸여 학생들이 매일 오가야 할 등갓길이 공사 중인 상태라면 학생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없게 한다.

학생들의 보다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학교 시설뿐 아니라 학교 주변 환경도 살펴야 한다. 학생들에게 위험을 인내할 것만을 요구하지 않고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전한 등하갓길과 안정적인 학습 공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건강권 10-3

·안전권 11-4, 11-5, 11-6

19. 통제받는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도 쫓겨온 듯 해요”

초 1학년 학생의 힘든 하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오늘도 눈을 비비며 교문을 들어선다. 목에 건 아파트 열쇠도 덩달아 운동장에 들어섰다.

학교 건물 중앙현관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곳은 선생님만 다니는 문이기 때문이다. 적

어도 50m는 더 걸어야 하는 왼쪽 현관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는다.



▲ 소곤소곤 사뿐사뿐 걷기, 머리위에 손올리기 등 초등학교 때부터 순종을 강요한다. 경기교육청에서 실시한 기본이 바로 선 학생생활 교육 중 (안옥수 기자)

실내화를 신자마자 열중 쉬어. 복도에서는 항상 이런 자세로 걸어가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니지 않으면 야단맞을 줄 알아”하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오전 8시 46분. 교실 앞 복도에 들어섰다. 마음이 무겁다. 오늘도 또 지각이다. 교실 앞문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이 문 또한 ‘선생님 차지’이기 때문이다.

뒷문을 살포시 열고 교실에 발을 넣었다. 쥐죽은 듯 조용히 한자를 쓰는 친구들이 보인다. “앞으로 나와! 또 지각이야 이 녀석...”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지각을 하면 교실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 했다. 손으로 양쪽 귀를 잡고 앉았다 일어섰다 30번! 목소리도 크게 내야 한다.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킁킁’대는 친구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린다. 부끄러워 눈을 감았더니 눈이 뜨겁다.

어느 새 1교시가 시작됐다. 의자에 앉아 책을 폈다. “머리 위에 손!”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제일 먼저 차렷 자세를 한 뒤 “2반!”이라는 구령을 힘차게 붙이면서 손을 머리 위에 올렸다. 38명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다. 적막이다. 영락없는 포로 모습이다.

1교시 끝나기 5분 전에 선생님께서 나가며 하시는 말. “반장 나와서 떠드는 아이 이름 적어라.” 재수 없게도 이번 달은 사학생이 반장이다. 떨리는 손으로 칠판에 떠든 친구 이름을 깨알처럼 적는다. 반장을 쏘아보는 친구들의 눈빛엔 칼날이 숨어 있다.

사학생 교실의 특색은 쉬는 시간에도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 화장실만 갔다 온 뒤

선생님이 나눠주신 학습지를 풀어야 한다. 손이 빠근하다.

4교시 일기장 검사하는 시간이다. ‘아차 어제 쓴 일기장을 거실 식탁 위에 놓고 왔구나.’ 일기를 쓰지 않으면 두꺼운 자로 손바닥을 맞아야 한다. 고사리 손엔 빨간 색 줄 3개가 그어졌다.

밥을 먹고 가방을 챙긴다. 알림장 내용이 가방 무게보다도 더 마음을 짓누른다. ‘독서기록장 매일 쓰기, 시 매일 외우기, 일기 매일 쓰기, 받아쓰기 틀린 것 10번씩 쓰기, 주5일제 휴업일 기록장 쓰기...’ 어깨 힘이 풀린다. “오늘도 놀긴 글렀구나.”

* 위 학생은 가상 인물입니다.

윤근혁 기자/ [교육희망] 2007-04-08

▶ 문제점 분석

과도한 교과 내용과 교육활동으로 오전 9시부터 방과 후까지 해야 할 일이 빼곡한 학생들의 일상은 위 내용과 다르지 않다. 점심시간이나 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은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교사가 부과한 학습량을 빨리 헤치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 버렸다. 게다가 복도나 교실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좌측통행이나 조용하기를 강요한다.

학생의 본분은 학습이라는 명제 아래 끊임없이 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한 쉼과 놀이를 누려야 하는 사람의 권리를 간과하는 일이다. 학생에게 저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학습, 진정한 성장을 위한 만큼의 학습을 제공해야 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1-1, 1-3
- 교육에 대한 권리 3-1, 3-2
- 신체의 자유 5-4
- 철 권리 12-1, 12-2

20.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 퇴학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제출 기회 주지 않은 퇴학은 인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퇴학처분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8일 퇴학처분을 받은 김모군

의 아버지 김모씨(48세)가 지난 5월 부산해사고등학교장을 상대로 "학교가 퇴학처분 이전에 학부모 및 학생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낸 진정사건에서 "학교장이 김군의 퇴학처분시 초·중등교육법 및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김군에 대한 퇴학처분을 재심하고 ▲학생 징계시 초·중등교육법 및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학생선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군은 지난 4월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하여 각 교실에 배포했다가 적발돼, 선도위원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학을 하지 않으면 퇴학처분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전학을 하지 못해 퇴학처분됐다.

부산해사고등학교장은 ▲부산해사고는 장차 엄격한 규율을 지닌 선박생활을 해야 하는 해기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립고등학교로서,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선동한 김군의 행동은 학생선도규정상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성을 고려할 때 퇴학처분이 불가피하였고 ▲선도위원회 개최 이전 김군의 담임교사가 학부모인 진정인을 면담하여 사건경위 및 사안의 심각성을 논의하였으며, 정식 퇴학통보 전에도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 교사 등이 진정인을 5차례 면담하여 논의하고 전학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이에 불응하고 기간내 전학을 시키지 않아 김군을 퇴학처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학교장이 김군과 진정인에게 선도위원회 개최 이전 의견제출 기회를 어떻게 부여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김군에게는 학칙 위반 행위가 적발된 당일 '경위서/반성문'을 작성케 하는 것에 그쳤고 ▲진정인에게는 김군의 담임교사를 면담하게 한 것에 그쳤으며 ▲이후 담임교사가 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바, 김군과 진정인에게 처분 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통지한 사실이 없고 ▲김군과 진정인의 의견이 담임교사를 통해 선도위원회에 충실하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 입력 2005-10-21

▶ 문제점 분석

학교에 의한 학생 징계는 전통적으로 적법절차의 예외 지대로 남아있었다. 학교에 의한 학생 징계규정은 규정 자체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규정을 집행하는 절차에서도 적법한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위 사례에서 부산 해사고등학교는 제복에 준하는 정복과 정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스포츠형으로 두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이 규정이 문제라고 느낀 김모 학생은 2학년 반장으로서 두발자유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는데, 학교측은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서를 배포한 행위를 문제삼아 필요한 절차

도 거치지 않은 채 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학생이 두발 제한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동료들의 의견과 행동을 모으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설령 이 행동이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저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퇴학처분까지 한 것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었다. 게다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1-1, 1-2, 1-12
- 교육에 대한 권리 3-1
- 표현의 자유 7-2, 7-4, 7-7, 7-8, 7-9, 7-13, 7-15
-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13-1, 13-10, 13-11, 13-12
- 권리를 지킬 권리 15-1

21.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에 눈감은 학교

노동건강연대 “일하는 청소년 노동권 보장받지 못해...”

노동건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과 안전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노동건강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지역 1000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45.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종류 중 음식점 서빙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패스트 푸드점이 14.3%로 뒤를 이었다.

또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근로계약을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무려 50.8%로 과반수를 넘겼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22.7%를 기록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에서 급여체불(12.7%)이나 급여할인(11.4%), 부당해고(6.9%)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조롱과 욕설(21.6%) 신체적 폭력(4.7%), 성희롱(2.7%) 등의 폭력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6.7%가 있다고 응답했고, 사고의 종류로는 주로 화상(33.9%)과 교통사고(4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고를 경험했을 때 치료비는 자신이나 부모님이 해결(32.3%)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많은 중·고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소년들은 취약한 조건 때문에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당 노동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국장은 또 "청소년들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교육 조차 받지 못한 상태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 중 사고율이 높은 것"이라며 "일하는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준 노동건강연대 사무처장, 정진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업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무사,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천금주 기자/ 뉴시스 2007-12-21

▶ 문제점 분석

많은 학교가 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유혹비 마련을 목적으로 한 비행 행위로 바라보거나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취급한다. 2007년 8월 창원의 한 고등학생은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으나 학교측에서 야간자율 학습에 참여할 것을 강요해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에 나선다. 방학 중에는 일하는 학생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에서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강제, 욕설과 폭력, 성희롱,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을 당하는 것은 물론,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실을 인정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당사자인 학생의 인권의식을 강화하고 구제절차를 알려주는 학교는 많지 않다. 특히 전문계고(실업계고)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학교기업 등에서 실습에 나서거나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안전교육, 노동법교육, 여성인권교육 등 관련 교육은 여전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학교 교사에게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인권 침해를 털어놓더라도 구제절차에 대한 접근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는 일하는 학생들의 존재를 감안하여 이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인권침해에 맞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주어야 한

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건강권 11-2, 11-3, 11-6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의 보호받을 권리 14-7, 14-8, 14-9, 14-10

22.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에 눈감은 학교

10년을 맞고 커도 학교는 모른다
가정통신문 등으로 대체되는 폭력 예방교육
... 폭력을 '남의 가정사' 취급하는 인식 전환부터

(.....)

지난해 10월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됐다. 6가정 중 1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10명 중 6명의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하면 출발이 늦다. 학교, 경찰 등 사회적 기관에서 '가정은 사적 공간으로 개입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경기도 양평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이를 잘 보여준다.

2003년 추석 연휴 뒤 박아무개(32) 교사는 수업시간에 왼쪽 팔에 피멍이 든 채 앉아 있는 여학생을 발견했다. 그 아이는 이미 오른쪽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왼쪽 턱과 볼도 잔뜩 부어 있었다. "아버지에게 쇠파이프로 맞았다"고 했다. 박 교사는 학생의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대책을 논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에 더 당황했다. "그 정도의 체벌은 있을 수 있다. 그 애가 맞을 짓을 한 것 같다." 담임교사는 "남의 집안일인데 별수가 없다"면서 "빨리 졸업해서 멀리 가서 혼자 돈 벌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학교나 교사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얼마나 책임의식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박 교사는 "폭력 피해 학생을 발견하면 교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법적 사실을 아는 교사도 드물다"고 말했다.

지역 상담소를 찾은 뒤에야 도움 받아



△ 폭력 예방교육 시간에 아이들이 제출한 궁금증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은 아이들에게 가깝고도 민감한 주제다.

법이 통과된 뒤에도 학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서울여성의전화는 법 시행 두어 달 전인 지난해 8~9월, 서울 동작구 20여 개 초·중학교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학교는 1곳밖에 없었다.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은 “직접 방문한 몇 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는 그런 일(가정폭력)이 없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만 다루면 된다’ ‘자꾸 그런 걸 알려주면 오히려 굼어 부스럼이 된다’ 등 폐쇄적인 반응을 보여 답답했다”고 말했다.

학교의 무관심 속에 가정폭력 피해 학생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지난해 한경은(가명·20)씨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한씨는 7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맞았다. 배를 밟히거나 머리를 심하게 구타당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구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상태였다. 견디다 못한 한씨는 고3이 돼서야 겨우 지역 상담소를 찾았고, 이들의 도움으로 아버지 몰래 어머니를 수소문해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갔다. 한씨는 올 2월 졸업과 동시에 4년제 대학에 합격했지만 대학 대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길을 선택했다. 아버지가 학교를 알고 찾아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사례를 상담했던 정애란 안양여성의전화 소장은 “10여 년을 집에서 맞으면서 컸는데도 학교에서는 끝까지 전혀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은 제2, 제3의 폭력을 부르기 때문에 가정 못지않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 이를 ‘남의 가정사’ 취급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아무개씨는 아이 반 친구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한 아이가 교실 뒷벽으로 친구들을 불러내 “눈알을 뽑아버리겠다” “대갈통을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무서운 말을 살기 어린 눈빛으로 내뱉는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아이는 아버지와 삼촌하고만 살고 있었고, 늘상 그런 폭언을 듣고 자랐다. 이규미 아주대 교수(상담심리학)는 “폭력행동은 학습되고 집에서 당한 피해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서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학교가 이를 예방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가정폭력 피해 학생을 세심히 살피고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도 필요성은 잘 알고 있다. 2005년 서울여성의전화가 서울 지역 16개 중·고등학교 교사 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어려운 이유로 △교육자료가 없기 때문(50.5%) △시간이 마련돼 있지 않음(37.4%) △학교 당국의 인식 부족(7.5%) 등을 꼽았다. 실제 교사들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지침서는 2005년 서울여성의전화가 개발한 ‘폭력짱! 대화짱!’ 프로그램이 최초이고 마지막이다.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폭력대책팀이 있지만 학교폭력, 성폭력과 달리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담당자가 없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 관계자는 “매뉴얼이나 지도 지침서는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줘야 한다”며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담당자를 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정폭력 담당자 없어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려면 교육을 위한 지도 매뉴얼, 충분한 수업시간, 외부강사 초청을 위한 예산 등 시급히 필요한 게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집에서 벌어진 일은 학교가 책임질 필요 없다’라는 인식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 박신연속 서울여성의전화 지역조직국장은 “법이 시행됐지만 학교에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는 차이가 별로 없다”며 학교 차원의 인식 개선을 강조했다. 학교나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집에서 맞는 아이들의 멍은 더 짙어진다.

박수진 기자/ [한겨레21] 2007년06월28일 제666호

▶ 문제점 분석

가정폭력에 대해 여전히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와 친권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를 외부에 호소하기 쉽지 않다.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은 당사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또 다른 폭력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가족 안에서 지지자를 발견하기 힘든 어린이·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와 교사가 적극적인 지원자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2006년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동반한 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열었다.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여전히 가정폭력을 남의 가정사 정도로 취급하고 학교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을 발견한 교사와 학교당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의 보호받을 권리 14-1, 14-2, 14-3

23. 폭력 중지시킨 학생 퇴학

전학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2006년 10월경 교사가 복도에서 매로 여학생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보고, A학생은 교사에게 그만하시라며 때리던 매를 잡았다. 교사가 "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 그냥 가라"고 말하였고, A학생은 "그럼 그만하고 들어가세요"라고 대답하였다. 이 일로 A학생과 체벌을 받던 여학생은 함께 교무실에 끌려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돌아왔다.

그로부터 얼마 후 수업 도중 위 체벌 교사가 A학생의 학급에 와서 교장선생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였다. 교장실에 가자 교장선생님은 피해자에게 무턱대고 "니가 그 매를 잡았어"라고 물어 잡았다고 하자, "니가 원데 그 매를 잡아. 그건 사랑의 매야"라고 얘기했다. A학생은 다시 교장에게 "교장선생님이 그 상황을 보셨습니까? 교장선생님도 그 상황을 보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못할 겁니다"라고 말하자, 교장은 학생주임 교사에게 "재네 부모 다 불러서 이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세요. 저런 학생이 이 학교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2006년 12월경 학생주임은 등교시간에 A학생만 불러내어 소지품검사를 하여 담배 등을 적발하고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징계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참석 및 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를 퇴학조치하였다.

사건명: 전학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접수일자: 20070125

▶ 문제점 분석

위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피해학생 어머니의 진정 내용으로 이 사건의 진위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피해학생과 그 어머니의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이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A학생은 자신이 목격한 부당한 교사의 체벌을 중단시키는 행동을 함으로써 학교당국의 눈 밖에 났다. 당시 교사는 공개적인 장소인 복도에서 매로 여학생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했었는데, 이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일 뿐 아니라, 교육적 체벌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내법에 비추어보더라도 정도를 벗어난 체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당한 힘의 행사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정당한 행동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는 이런 행동을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한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A학생 역시 부당한 힘의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교장실에 불려가 심리적 압박과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표적 소지품 검사를 당해야 했다. A학생이 담배를 소지했다고는 하나 흡연 사실만을 이유로 학생을 퇴학조치하고 퇴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학교는 학생이 자기 자신과 동료들의 인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당한 결정의 취소 또는 부당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때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인권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연대하는 행동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 **관련 학생인권지침 조항**

-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1-9
- 교육에 대한 권리 3-1
- 신체의 자유 5-1, 5-3
- 사생활의 자유 8-4, 8-5, 8-6
- 적법절차의 권리 13-1, 13-7, 13-8, 13-9, 13-10
- 권리를 지킬 권리 15-1, 15-3

IV. 학생인권지침 관련한 법령 모음

1.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8.3.1]

[청소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보장
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 학교 규율

1-1. 존엄에 합치되는 규율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학생의 참여/1-3. 의견의 존중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제33차 회기/ 아동의 견해 존중 8.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와 이를 정당한 비중으로 고려받을 권리(제12조)는 또한 청소년의 건강 및 발달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근본적이다.’

1.4. 판단을 돕는 과정 제공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강요된 교육활동

1.6. 강제 학습의 금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제26차 회기/ 29조1항의 기능 12. ‘넷째, 제29조 1항은 교육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감성적 측면의 증진과 아동기와 일생이라는 시기의 측면에서 지적, 사회적 그리고 실질적 가치 간에 적절한 균형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에 대하여 전체적인 접근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략... 지식의 축적, 경쟁의 촉진 및 아동에 대한 과도한 업무의 부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의 형태는 아동 자신의 능력과 재능의 최대한의 발현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 언어 사용

1.9. 언어폭력의 금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제26차 회기/ 29조1항의 기능 8. ‘제29조 1항상 인정된 가치의 준수는 학교가 용어상의 모든 의미에서 아동 우호적이어야 하며 존엄성에 대한 전적인 존중을 견지해야 함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다.’

2. 차별금지

[아동복지법] 제3조 (기본이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개정 2006.9.27>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2-1. 차별 근절 조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 ①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아동권리협약]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2-5. 빈곤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아동권리협약】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7. 가출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여성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b)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c)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d)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e)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

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f)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g)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h)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2-8. 교육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증진을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1.1.29>

[여성발전법] 제20조 (학교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25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2-9. 여성의 몸과 특성을 고려한 시설 제공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감안하는 교육·편의시설 마련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2-10. 여성인권교육의 실시

[여성발전법] 제17조의2 (성희롱의 방지 등) ①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20조 (학교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이념을 고취하고 여성

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③아동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악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성)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감안하는 교육·편의시설 마련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2-11. 비혼 임신 여성을 위한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모성보호의 강화)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성폭력 등 성 관련 경험에 대한 개입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수사기관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청소년 또는 대상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9조 및 제30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청소년 및 대상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0.27>

◎장애인

2-15 교육 접근권의 보장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 (차별의 금지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3]

②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4조 (차별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20조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受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

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16. 편의시설의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20조 (교육)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受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⑦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8.5.26]

2-17. 교육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⑦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2-18.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

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시행일 2008.5.26]

2-19. 통합을 위한 교육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1조 (통합교육)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 2008.5.26]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20. 교사를 위한 지원

[특수교육진흥법] 제23조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주민 학생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2.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체약국의 법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단, 이러한 규정은 어느 특정 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4. 어느 특정 인종 또는 종족의 집단이나 개인의 적절한 진보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취해진 특별한 조치는 그러한 집단이나 개인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향유와 행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인종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상이한 인종집단에게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러한 조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계속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체약국은 특히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 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 및 이 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21. 교육접근권의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30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해당국의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다. 어느 부모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거나 취업국에서의 자녀의 체류가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공립의 취학전 교육기관이나 학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2-23. 통합을 위한 교육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문화적 독자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출신국과의 문화적 유대의 유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은 이에 관한 노력을 지원하고 조장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26. 신상정보의 보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본 조 신설 2007.5.17]

3. 교육에 대한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학교에서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차 회기 29조1항] 제26차 회기/ 29조1항의 중요성 2.

‘...모든 아동의 권리인 교육은 아동에게 삶의 기술을 제공하고 모든 범위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의 능력을 강화시키며, 적절한 인권 가치에 의해 고무된 문화를 진흥시키도록 고안된 것이다. 목적은 아동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다른 능력, 인간의 존엄성, 자부심과 자신감을 진전시킴으로써 아동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교육”은 형식적인 취학을 넘어서서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 및 개인적, 집단적으로 아동이 그들의 개성과 재능,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학습과정을 아우르는 것이다.’

■ 교육 목표의 실현

3-1.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개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차 회기 29조1항] 제26차 회기/ 29조1항의 기능 9. ‘중략...기초적인 기술은 식자능력과 수리능력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잘 균형 잡힌 결정을 할 능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할 능력; 건강한 생활방식;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와 책임감, 비판적 사고, 창조적 재능 및 삶에 있어서 자신들의 선택을 추구해나가는데 필요한 도구’

되는 다른 능력들을 개발할 능력을 포함한다.’

3-2. 경쟁적 교육풍토의 변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견해(CRC/C/15/Add.197)]

53.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d)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제26차 회기/ 29조1항의 기능 12. ‘넷째, 제29조 1항은 교육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감성적 측면의 증진과 아동기와 일생이라는 시기의 측면에서 지적, 사회적 그리고 실질적 가치 간에 적절한 균형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에 대하여 전체적인 접근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략... 지식의 축적, 경쟁의 촉진 및 아동에 대한 과도한 업무의 부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의 형태는 아동 자신의 능력과 재능의 최대한의 발현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 교육과정과 정책에 대한 참여

[아동권리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선택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 ②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

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학습 환경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13. 학습 지원 물품 제공

[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시설기준령] 제8조 각 학교에는 그 정도에 따라 교육상 필요한 학습용, 체육용 및 보건위생용의 기재, 기구, 표본, 모형등의 교구와 기타 설비를 하여야 한다.

3-14. 학교운영지원비 원천징수 금지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견해(CRC/C/15/Add.197)]

53.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b)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

■ 학습권의 박탈

3-15. 학습권의 일시적 박탈 최소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③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17.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동등한 교육 접근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7]

■ 학생 선수에 대한 지원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에 학생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체육대회의 평일 개최를 금지하고 주말과 방학기간에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최저학력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학교의 합숙소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전국소년체전을 청소년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교육적 목적에 충실하도록 그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관하여 경기종목·일정·참여대상 등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4. 학생자치와 참여

■ 학생 자치와 참여 기반의 조성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 ②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

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4.1. 자치와 참여를 위한 여건조성

[청소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보장
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4조 (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4.4. 자치와 참여에 대한 교육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 (시·군·구 청소년지원 등 기관의 기능 등) ①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능 외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학생 대표 기구로서의 학생회(전교어린이회)

4-10.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동아리 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4-14.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5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②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5. 신체의 자유

■ 체벌을 비롯한 모욕적인 처우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중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5-1. 체벌의 금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제26차 회기/ 29조1항의 기능 8.

‘(...) 교육은 또한 제28조 2항에 반영된 징계에의 엄격한 제한을 존중하고 교내에서의 비폭력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본 위원회는 육체적 처벌의 사용이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의 징계에서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님을 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5-2. 강제 이발의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두발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중에서

1. 학생의 두발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강제적으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다.

5-3. 모욕적인 처벌의 금지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3] 교육의권리(제13조)/ 1999년 제41항.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신체적 처벌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양 규약의 각 전문에 기술된 국제인권법의 근본적인 지도 원칙, 즉 개인의 존엄성에 위배된다. 학교규율의 다른 측면,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 역시 인간존엄성에 위배될 수 있다.’

■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성폭력의 금지와 예방

6. 사상, 양심, 종교

[대한민국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아동권리협약]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일방적 생각을 주입하는 교육활동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차 회기 29조1항] 제26차 회기/ 29조1항의 기능 9.

‘(...) 기초적인 기술은 식자능력과 수리능력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잘 균형 잡힌 결정을 할 능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할 능력; 건강한 생활방식;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와 책임감, 비판적 사고, 창조적 재능 및 삶에 있어서 자신들의 선택을 추구해나가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는 다른 능력들을 개발할 능력을 포함한다.’

■ 종교 강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7. 학생의 표현

■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

7-2. 두발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두발제한관련 인권침해] (주문) 1. 두발단속 시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관행과 여학생의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학생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의 침해임을 인정한다.

■ 매체 활동

7-5. 매체 활동의 자유

[아동권리협약]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요하네스버그 원칙] 원칙 1: (a)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보유한다.
(b) 모든 사람은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각자의 선택에 따라 말, 문서, 인쇄물, 예술형식 또는 어떠한 매체의 형식으로든지 국경을 넘어 추구하고 수용하고 전달할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 다양한 표현물과 의견 조직 활동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요하네스버그 원칙] 원칙7: 보장되는 표현(Protected Expression) (b) 누구도 비판이나 모욕이 폭력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닌 한, 국민, 국가 내지 국가의 상징, 정부, 정부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외국국민, 외국 또는 국가의 상징, 정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을 비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

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7-7. 주제에 대한 검열 금지

[요하네스버그 원칙] 원칙5: 의견의 보장(Protection of Opinion)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교내외 집회와 시위

[아동권리협약]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7-15. 집회·시위의 원천 봉쇄 금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교외활동

7-17.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삭제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견해(CRC/C/15/Add.197)]

36.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37.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8. 사생활과 개인정보

[아동권리협약]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상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사적 기록물

8-1. 일기장 검사의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초등학교 일기장 검사관련 의견]

(주문)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8-3. 휴대폰 내용의 열람과 공개제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집회의 자유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론) 가. 피진정인이 학생 두발규제 등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근거 없는 휴대폰 수거 및 열람하고 소지를 금지케 한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국제인권협약 『아동의 권리』 제12조를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 개인 소지품과 공간

8-4. 소지품 금지의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집회의 자유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론) 가. 피진정인이 학생 두발규제 등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근

거가 없는 휴대폰 수거 및 열람하고 소지를 금지케 한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국제인권협약 『아동의 권리』 제12조를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 개인정보

8-9.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8-10.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금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 교육과정에서 기록되는 정보

8-12. 보호자에 대한 공개 시 전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

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9, 2007.5.17] [[시행일 2007.11.18]]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④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⑥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감시장비의 설치

8-14. CCTV, 알림장비의 설치 규정, 8-15. 몰래 촬영·녹음의 금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9. 정보접근

[아동권리협약]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a)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b)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c)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d)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e)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

9-1.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

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2007.5.17] [[시행일 2007.11.18]]

9-2. 자기 정보에 대한 수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제12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 또는 삭제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 성장을 위한 정보

[청소년기본법] 제51조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보화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참여를 위한 정보

[아동권리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

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10. 건강

[아동권리협약]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환경

10-1. 학교시설과 물품/10-2. 위생설비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3.24, 2007.4.27] [[시행일 2008.4.28]]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③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3. 학교주변환경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18]]

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정신 건강과 치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교육청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4.1.20]

■ 몸이 아픈 학생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보건실의 설치기준)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위치 :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한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한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를 둔다. [개정 74·7·11, 81·10·8, 93·9·27, 96·2·22, 98·2·24, 2005.3.31]

1.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보건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2.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보건교사 1인을 둔다.

3. 대학(30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에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 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사·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 다. [개정 93·9·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사·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9·27, 2002.2.25, 2005.3.31] [신설 90·12·31]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건강평가등의 실시에 관한협조

바. 신체허약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의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1)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 내지 (4)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파.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

2.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학교약사의 직무

-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사
- 마.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 먹을 권리

10-9. 학교급식의 질 확보

[학교급식법]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생·안전관리) ①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14조 (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10. 급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한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건강 검진

10-12. 적절한 건강검진

[학교보건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6.1.1]]

제7조 (건강검사의 실시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게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생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시행일 2006.1.1]]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6.1.1]]

10-13. 프라이버시 보장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시행일 2000·7·13]]

제13조 (비밀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0·7·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1조 (진단결과의 공개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한 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강 촉진

10-16. 보건교육의 실시

[학교보건법]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11조 (치료 및 예방조치)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6.1.1]]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소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8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예방·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①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시행일 2007.3.27]]

■ 강제 조치와 격리

10-18. 전염병 관련 조치

[학교보건법] 제14조의2 (전염병예방접종의 시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전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의 또는 보건교사(간호사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3·8, 98·12·31, 2002.8.26, 2007.4.11 제8366호(「의료법」)][본조신설 77·7·23]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 환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의 예방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2. 전염병환자들의 보호 및 진료
3. 전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전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6.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억제내성감시
7.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전염병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적 연대 확보

③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본조신설 2000.1.12]

11. 안전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 학내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5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

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2. 비상탈출구
3. 운동장
4. 놀이시설
5. 실험실습시설
6. 체육시설
7. 교실(출입문 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8.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등하굣길

[청소년기본법] 제51조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

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31]

12. 쉬, 놀이, 문화

■ 쉬는 시간의 향유

[아동권리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문화활동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시행일 2006.6.30]]

제17조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6.6.30]]

제18조 (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6.6.30]]

12-5. 문화 동아리의 지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활동프로

그럼·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3. 사건의 조사와 징계

■ 징계의 기준과 내용

[아동권리협약]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건조사와 징계 절차

13-5. 징계절차의 성문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13-6. 무죄 추정의 원칙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13-10. 학생의 변론권 보장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견해(CRC/C/15/Add.197)]

35. 위원회는 협약 12조에 따라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a)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재개정하라. 그리고 법원, 행정기구, 학교 및 교육기관의 징계과정에 의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 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의견청취와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13-11. 조사·징계 사실의 통보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3-12. 재심권의 보장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 정보 처리 (공개, 보관, 폐기)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4.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직업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제7조 (사회의 책임)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가정 등에서 학대받는 학생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0.17]

[아동권리협약]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14-1. 피학대 학생에 대한 구제조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신고의무등) 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 (비밀엄수등의 의무) ①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1]

②이 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3.19.]]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 (아동의 취학지원) ①법 제4조의4

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자 중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를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당해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을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본다.

⑤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사법처리에 놓은 학생

[아동권리협약]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i)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ii)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iii)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iv)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v)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vi)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vii)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a)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b)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소년사건 수사의 기본) 소년사건은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신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2조 (소년의 특성의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심정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3조 (범죄의 원인등과 환경조사) ①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행상·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 (구속에 관한 주의) 소년에 대하여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보도상의 주의) 소년범죄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성명·연령·직업·용모등에 의하여 그자를 당해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제46조 (학생범죄) 소년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범죄사건에 관하여는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여성범죄) 피의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제42조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4-6. 관련 사실의 공개 제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7조 (비밀의 엄수)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노동하거나 경제적 착취 상황에 놓인 학생

14-7. 노동할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폭력피해 학생

14-11. 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학교폭력예방교육)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12.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14-13. 피해 학생의 복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31조 (교육프로그램운영 등) ①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29조와 제30조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 등 대상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청소년과 대상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청소년과 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청소년을 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4-15. 제보 학생에 대한 보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9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시행일:2008.2.4] 제21조제2항제9호

14-17. 폭력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학교폭력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권리를 지킬 권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권리에 관한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부.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해외 사례

인권 또는 권리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교라는 공간으로 제한되어 논의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학교와 관련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해야 한다.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는 지배적 경향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논의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개념의 외곽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수많은 소수인종들에게 적용되었고, 여성에게 적용되었던 불완전한 인간의 잣대가 아동에게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차별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많은 과학적 연구와 자료를 동반한다. 흑인이 백인보다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의 축적물을 보라.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생물학적 연구는 또 어떤가?

“백인종이 생존을 위한 다른 인종들과의 투쟁에서 얻어낸 우월성은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에 의해 획득되었는데, 자연선택은 생물체의 모든 영역에서 종의 기원을 설명하는 열쇠인 동시에 문화상의 모든 발전과 모든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열쇠이다. 이러한 우월성이 미래에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들 중 매우 적은 수의 인종만이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백인종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Haeckel, 1883: 85)²⁾.

“성차를 구분하는 최초의 기준은 골격이었으며 그것은 ‘두개골학’(craniology)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간단히 말해 여성의 지적 열등성은 두뇌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류학자인 앨런(McGrigor Allan)은 1869년의 논문 “남녀 정신의 진정한 차이에 대하여”에서 여성의 뇌는 동물의 뇌와 비슷하며 그 내부의 감각기관은 정상적인 뇌를 침식하면서 과발달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것이 여성이 남성보다 이성적이지 못하며 감각적이고 감정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준다고 믿었다. “여성 골격의 유형은 많은 부분 아동이나 열등한 인종의 골격과 유사하다.”(하정옥, 1999: 29-30)³⁾.

비록 여전히 위의 ‘비’과학적 사실을 신봉하는 인종차별주의자와 성차별주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이름으로 그같은 입장을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2) E. Haeckel, *The Pedigree of Man and Other Essays*, London: Freethought

3) 하정옥,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그 역사적 함의」, 오조영란/홍성옥 엮음,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 창비

리고 이미 보편적 인권 담론에 여성과 유색인종이 포괄됨에 따라 공론의 장에서 차별을 주장할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차별을 정당화한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스스로의 행동과 판단을 책임질 능력(competence)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Wyse, 2001: 209).

이것은 단지 발달심리학과 같은 과학적 연구의 문제에 국한될 수 없다. 이같은 차별은 좀 더 포괄적 의미에서 정치적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위 대중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사회를 관리하고 운영할 엘리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독점된 지식과 정보의 공유 없이는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성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독점으로 비민주적 통치행위를 정당화하는, 우리들 일상의 정치적 풍경을 보라.

그러나 최소한 지배적 엘리트들은 그들이 ‘대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폭행하거나 인간이하의 방식으로 모욕하지는 않는다. 극단적인 경우 대중을 정치적 조작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어른들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권리 침해의 심각성을 측정할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어떤 자원도,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을 열등하다고 전제한다.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결정해버린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이들을 어른들의 소유물로 생각하며 심지어는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적절한 정도의 폭력까지도 용인한다. 윌로우(Willow)와 하이더(Hyder)는 체벌에 대한 아이들 스스로의 생각을 듣기 위해 준비된 연구에서 아이들을 온전한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 간주한다면 ‘적절한’ 정도의 체벌(구타를 포함)을 허용한다는 말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2004).⁴⁾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가 보자. 아동의 권리를 논의할 때조차, 인권 또는 권리는 매우 포괄적 개념이며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 한정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글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는 그러한 포괄성의 바깥에 위치하며, 보편적이라고 인정된 인권의 적용에서 유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유보의 근거는 아동이 가지는 지적 열등함이라는 것도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 열등함이 보완되고 극복되어야 할 공간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학교는 아동의 권리 확장과 민주적 시민을 길러내는 과정에서

4) 같은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이, 영국의 경우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과 구타는 거의 사라졌다. 문제는 가족에서의 체벌과 구타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가족 내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 중의 하나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위협과 폭력으로부터의 기초적인 보호(Protection)에서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Provision)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원과 정보가 효율적으로 아동들의 필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의 참여(Participation)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Morrow, 1999).

다시 말하자면, 위협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자원과 정보의 ‘제공’ 그리고 ‘참여’는 순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가 결여된 채로 다른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Osler and Starkey, 1998: 315). 체벌과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자원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학습의 효율성을 말하면서 학생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교과과정이나 교과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는 것도 대단히 비합리적인 발상이다. 빈곤과 괴롭힘(bullying) 등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아동들 스스로의 느낌과 생각을 반영하지 않은 어떤 대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체의 참여가 배제된 이러한 종류의 대책은 UN 아동권리 협약이 보장한 아동권리의 (의도하지 않은 또는 제도화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UN 아동권리 협약 12조와 13조 참조).

I. 참여5)

서구의 아동인권 담론은 위해로부터의 아동보호에서 아동의 적극적 참여로 이동하고 있다. 아동권리 연대의 영국지부(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에 의해 추진된 어린이 구타(smacking)에 대한 연구는 5-7세의 아이들의 구타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스스로 표현하게 했다⁶⁾. 조사결과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이 생각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타가 규율의 수단으로 현장에서 직접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이것조차 확실하지 않다),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험은 대단히 부정적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부모에 대한 증오, 대인관계에서 폭력이 사용될 가능성 등). 이 조사는 아이들 스스로의 생각에 기반하지 않은 어른들만의 생각에 기초한 대책은 매우 제한된 효과만을 가지거나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Willow and Hyder, 2004).

아동만큼 아동의 이해를 정확히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비장애인이 장애인만큼 장애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가사와 육아로부터 (관습적으로) 벗어나 있는 대부분의 남성이 가사와 육아가 얼마나 힘들고, 그것의 양성분담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깨달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처럼, 성인의 시각으로 분석되고 재단된 아이들의 현실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왜곡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될 수 있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실은 더 부정확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의 눈에 아이들은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테포드와 그녀의 동료들에 의해 보고된 스코틀랜드 학생들(3-18세)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과과정과 교과과정의 발전, 시험, 학교정책의 우선순위, 학교 운영 등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가 반영되기를 바란다. 또한 학교 시설조건, 레저시설과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다. 건강교육과 상담에 대해서, 학생들은 섹스, 십대 임신, 흡연, 마약복용 등에 대한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젊은 학생들의 문화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캠페인은 효과적일 수 없음을 지적했다 (Stafford, et al., 2003: 363-364).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과 아동 사이의 권력관계이다. 성인은 아무리 잘해도 아동들의 필요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지만, 아동은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제공되면 성인보다 ‘덜’ 왜곡되고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5) 참여의 권리는 아래의 모든 권리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권리주체, 즉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권리의 정의와 보장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6) 질문지 작성과 관련해, 사전 시험조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휘와 개념은 모두 제외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지를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권력관계 내에서 아이들은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며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한다 (Allan and I'Anson, 2004: 125).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정확히 듣기 위해서는 위계적 권력관계를 약화시켜야 하며, 어른이 신뢰할 수 있는 청자(listener)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와이즈에 의해 보고된 다음의 사례는 성인이 아동을 대하는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링스워드 초등학교(Illingsworth Primary School)의 학생들은 교사들이 자신들을 대할 때의 언행을 지적함으로써 교육방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학생은 그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장선생님과 엄마의 통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엄마와 대화할 때 교장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고함치기 시작했다. 많은 어른들은 이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을 것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아이에게는 소리쳐도 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테포드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공정하고(fair) 대의적인(representative) 의사반영을 원한다. 학생들은 협의(consultation)는 어른들의 편익에 따라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들은 협의의 진실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아무런 행동의 변화도 없다면 협의에 관련된 모든 절차는 무의미한 것이다. 학생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면 질문하지 말라!”고 말한다. 학생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실제적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가 주장을 가지고 있으며 권리의 담지자임이 인정되기를 바란다. 공정하고 대의적인 의사반영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교가 우리에게 통신문을 주었는데 그 통신문의 주소란에 학부모의 이름이 아닌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경험이며, 색다른 일이었다. 우리가 학교의 통신문을 받을 때 그것은 언제나 ‘학부모님께 또는 보호자님께’라고 시작한다. 학교는 우리의 학교이며, [학교운영위원회(school council)]은 우리의 의회이다” (Stafford et al., 2003: 366)

모로우는 자신의 연구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과정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반영되기를 바랄뿐이라고 주장한다 (Morrow, 1999: 159-160). 어른들의 시각과는 다르게 어린 학생들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과 함께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까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자질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억누르고 왜곡시키는 것이 학교 또는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어른과 아이들 사이의 권력관계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아동과 성인 사이의 권력관계를 고려했을 때 아동이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은 어른들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성인이 아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들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보다는, 그들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테포드 등의 연구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견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식적 틀은 소규모 그룹 토론임을 밝혀냈다 (2003: 367). 권력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국 대학의 교수방법에 관한 지침 또한 소규모 그룹 토론을 적극 권장한다).

요약하자면, 아동권리의 법제화와 제도화는 실제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동반되지 않으면 무의미 하며, 자원이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는 가능하지 않다. 즉 아동인권의 실현은 아동에게 자원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동인권은 단지 상징정치(symbolic politics)에 머물고 말 것이다.

II. 차이

UN 아동권리협약 23조는 장애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만은 23조에 명시된 장애아동권리가 비차별(non-discrimination) 중심의 조항일 뿐이며 이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분리를 정당화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비차별을 넘어서는 통합(inclusion)을 지향하는 장애아동 권리를 주장한다 (Freeman, 2000: 282-283). 이러한 통합적인 교육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통합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주류 교육제도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뒤의 클리브스 초등학교의 사례를 참조).

알랜과 이안슨은 장애학생들을 주류학교에 통합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인 장애 협의 그룹 (the Disability Consultation Group)에 대한 관찰을 보고하면서, 경험을 통한 상호 이해와 이것이 가지는 긍정적 태도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장애가 없는 학생들이 장애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경험하면서, 장애학생들을 어렵게 하는 일상생활의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자각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Allan and I'Anson, 2004: 131-132).

알랜과 이안슨의 대표적 사례인 알리스테어라는 소년의 사례를 보자. 그는 특별한 보살핌에 대한 행동 그룹(Special Needs Action Group)이라는 장애 협의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경험을 한다. 그는 단순히 장애인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룹에 참여했으나 그런 감정적인 접근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들이 특별해(amazing)보였기 때문에, 그들과 친해지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난 그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안됐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애들은 우리와 똑같았고, 그래서 똑같이 대우받아야 해요. 그 애들이 동정 받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그 애들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그 애들을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룹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단지 다르게 보인다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말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인걸요” (Allan and I'Anson, 2004: 133).

"A: 나는 정말 나쁜 애였어요. 매일 싸움만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아이예요. 내가 그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J: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A: 처음에 그 애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내가 좋은 아이가 되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전에 전 매일 싸움질만 하고 바보같은 짓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그들을 알게 되면서 전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 다시 시작하고 싶었고 좋은 아이가 되고 싶

었습니다.

J: 정말?

A: 정말요. 저는 모든 사람이 저를 알리스테어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금 좋은 아이이고 싶은 걸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J: 정말 그 전에 싸움만 했던 말이니?

A: 그래요. 전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 제 스스로가 놀라워요. 이제 아무도 제가 매일 싸움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좋은 아이가 되고 싶은데, 가끔씩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있긴 해요. 전 제가 정말 제 행동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해요. 전 정말 나쁜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나쁜진 않아요. 좋은 아이잖아요, 지금은” (Allan and I'Anson, 2004: 133-134).

"전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똑같이 대할 때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단지 그 사람들의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생각해요. 그건 제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줘요. 그리고 착한 아이가 되게 하죠“ (Allan and I'Anson, 2004: 134).

알리스테어의 사례는 공통의 경험을 통한 상호이해의 과정이 민주적 시민의 도덕적 소양을 개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서로 다름이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상호배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유럽 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지원한 유럽의 배제(Exclusion in Europe) 프로젝트에 참여한 벨기에, 핀란드, 영국의 학생들의 경험도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 프로젝트는 어린 학생들의 사회적 배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 단체들에 참여하고 사회적 배제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학생들은 사회운동단체를 통해 활동가들과 접촉하고,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실업자들, 폭력과 인종차별의 희생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 영국 학생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진(handicapped) 사람들과의 접촉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Osler and Starkey, 1998: 318-319). 이 학생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사회가 그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Osler and Starkey, 1998: 319).

영국의 경제사회연구위원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가 지원한 ‘장애아동으로의 삶’(Life as a Disabled Child)이라는 프로젝트를 연구 보고한 데이비스와 왓슨에 따르면 장애아동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다른 학생들과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Davis and Watson, 2000: 214). 그러나 성찰적인(reflexive) 청자가 장애아동의 필요와 능력에 대해 들어줄 수 있다면 그들이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

혀진다. 문제는 장애아동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대화의 부족인 것이다 (Davis and Watson, 2000: 216-217). 더욱이 랜즈다운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즉 그들의 능동적 의사표현과 최대한의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과보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의 표현처럼 장애를 심화시키는 효과(a disabling impact)가 초래될 수 있다 (Lansdown, 1998: 224)⁷⁾.

데이비스와 왓슨의 연구에서 보고된 윌버(Wilbur)의 사례는 아동의 행동양태를 주의 깊게 해석하고 아동이 자신의 관점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윌버는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s Syndrom, 자폐성을 특징으로 함)을 가진 학생인데, 윌버의 행동은 대다수 선생님들이 특수학교로의 전학을 요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학교당국은 즉각 결정하기 보다는 윌버의 행동양태를 한 학기 동안에 면밀히 관찰하여 그의 행동이 주로 다른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전학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윌버의 행동양태는 장애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Davis and Watson, 2000: 221-222).

같은 연구에 보고된 토미(Tommy)의 사례는 장애학생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려고 시도한 경우다. 새로운 학교에서 급우들에게 자신이 장애를 가지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스스로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동료학생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능동적 자기실현이 가능하기 위해서 교사, 부모와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들의 적극적 지지가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Davis and Watson, 2000: 222-223).

데이비스와 왓슨은 다층적 접근(multi-layered approach)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지침과 입법에 근거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교사의 재교육에 적극 투자하고, 장애학생들의 문제에 대해 성찰적으로 접근하며,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주목하는 등 다양한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Davis and Watson, 2000:225)⁸⁾. 장애아동과의 의사소통과 협의에 기초해서 아동들 스스로를 자기권능화(self-empowerment)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기권능화는 어른과 아동들 사이의 협력(cooperation)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Davis and Watson, 2000: 226).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은 전체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영국정부는 2007년에 제정된 성적지향에 관한 법률(the Sexual

7) 비장애인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장애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접근하기는 하지만 장애발생 원인을 비극적으로 묘사하는 것(tragedy discourse)도 장애학생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MacArthur et al. 2007: 111).

8) 뒤에서 다룰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대책도 이러한 다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영국 정부의 지침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Orientation Regulations)을 통해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차별이 법률적 조치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07년 9월 노동당 정부(아동, 학교 가족 부, the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과 함께 동성애 학생들 또한 “모든 아동은 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s)라는 이름의 일련의 정책 문건에서 제시된 아동복지향상 목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교사용 지침(“학교에서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그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Homophobic Bullying in Schools’)을 출판했다.

지침은 성적 지향성 때문에 발생하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피해학생의 높은 결석률, 학업성적에의 부정적 영향, 자살기도 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것은 정부가 제시한 아동복지에 중대한 장애물임을 인정했다. 지침은 초등학교에서도 (직접적이든 또는 동성애 부모나 가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든) 성적지향성에 따른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언어폭력의 경우 동성애혐오적 발언을 하는 학생에게는 단계적 조치(처음의 약한 조치가 언어폭력을 중지시키지 못하는 경우 좀 더 강도 높은 조치로 옮겨가는 형식)를 취하도록 했다:

1. 동성애 혐오적 언어가 학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주지시킨다; 2. 괴롭힘이 다시 발생했을 때, 동성애적 언어가 모욕적(offensive)임을 분명히 하고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다시 강조한다; 3. 다음 단계는 동성애적 괴롭힘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4. 개선이 없을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내져야 하고, 교사는 그들의 언행이 왜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 더 상세하게 이야기 해야만 한다; 5. 다음 단계는 학생에게 동성애 혐오적 언행을 계속 했을 경우 받게 될 제재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다; 6. 부모나 보호자를 학교에 오도록 하고 학생의 태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지침은 동성애 학생에 대한 괴롭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문제를 밝혀내야한다는 가장 기본적인지만 어려운 원칙을 확인한다. 이것은 일반적 괴롭힘 대책에 동성애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포함시켜야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단지 동성애 학생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이에 관계없이 학생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을 강조한다. 또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교사나 스텝만이 괴롭힘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넘어 모든 교사와 스텝에 대해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 교육할 필요를 명확히 한다. 동시에 성적 소수자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과과정에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폭력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 모든 것과 관련해 외부단체(레즈비언/게이 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 스텝, 부모 등 역할 모델(role models)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교실의 모든 학생이 이성애자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성적지향성에 따른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또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될 수 있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종교와 관련된 통합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많은 수의 학교가 교회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학교의 이름이 성인의 이름을 본 딴 학교가 많고 (예를 들어 St. George Primary School),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의 상징에 십자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조회시간에 기도를 하는 등 종교적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매우 완강해서 동성부부의 입양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운영하는 입양기관의 경우 법률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the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 2007). 그리고 9.11 이후 전반적 사회분위기가 이슬람교도를 잠재적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종교적 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소한 교과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종교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교과과정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시간(RE, religious education)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등 세계 종교에 대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오랜 이민의 역사와 영국 사회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적인 전통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과과정에서의 균형 잡힌 교육이 사회전반의 인종적, 종교적 차별이 완전히 종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아동인권과 관련해 종교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녀의 종교자유 박탈이나 입양에 의한 종교선택의 자유 박탈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아동의 종교선택의 자유라는 논의가 주로 이슬람 신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또 다른 종교적 차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Ⅲ.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⁹⁾

총체적 삶의 돌봄이란 단지 학교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쳐서 아동의 복지와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까지도 포괄한다.

2006년 9월 19일자 가디언(The Guardian)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우울증(depression)과 행동장애(behavioral problems)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2006] 영국 의학 협회(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의 보고에 의하면 11-16세 청소년 중 10% 이상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신적 문제(mental disorder)를 가지고 있다. 백만 명 이상의 아동이 우울증, 폭력, 자해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똑바로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가이다. 어린이의 우울증 문제는 195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1980년대 그 숫자는 2배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그 후 다시 배로 증가했다. 비록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이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보다 세배나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성별과 계급에 관계없이 많은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Jenni Russel)

학생들이 노출된 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사회적 조건, 즉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쟁적 분위기, 끝없는 수업과 시험에 시달리는 한국의 학생들에 더욱 큰 문제일 수 있다. 기본적인 권리의 박탈이 더 큰 권리의 박탈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또는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은 여전히 정신적 건강의 문제를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개인의 부적응으로 접근하고 있다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은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량과 시험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온다는 점에서 감당할 만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의 경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흔히 빈곤 문제에 접근할 때 절대적인 물질적 빈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절대적 빈곤선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제도화된 틀 안에서,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학교라는 공간에서 빈곤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곤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

9) 영국의 경우 현 노동당 정부가 “모든 아이들이 중요하다 (Every Child Matters)”라는 구호 아래 일련의 정책 토론 문건을 발행했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2004년에 아동법 (Children Act 2004)이 개정되었다. 각종 아동복지 조항이 강조되었고, 아동의 참여에 대한 논의도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 노동당 정부의 학교정책은 시장논리에 입각한 경쟁논리를 강요하는 것으로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많은 목표설정 (targets)과 보고서, 그리고 학교 순위표 (league tables)만이 있을 뿐 실제 아동의 교육조건과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닉 데이비스 (이병곤 옮김), 『우기의 학교: 영국의 교육은 왜 실패했는가』, 우리교육 (2007) 참조).

리가 아니라 일종의 낙인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학교 내에서 아동빈곤에 접근할 때 매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에트리는 그녀의 조사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물질적 박탈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외임을 보여 준다 (Attree, 2006: 59).

“에이미: 문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으면 나도 그래야한다고 느끼게 되요. 다른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면 나도 그래야 한다고 느끼죠” (Attree, 2006: 59).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서 물질적 빈곤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에게 이것에 동반되는 사회적 배제는 더 큰 고통이다. 무료급식과 같은 조치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순간 이것에 따른 빈곤의 ‘낙인’은 물질적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권리개념에 아동의 적극적 의사표현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IV. 권리구제 (UN 아동권리협약 12조)

학교현장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되었다. 많은 경우 관료적, 형식적 편의에 의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부당한 편견과 낙인찍기로 특정한 학생을 학교와 사회의 보호 밖으로 밀어내기도 한다. 아동이 아직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객관적’ 이해(interests)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동의 ‘일탈행위’에 대해 그것의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려 하지 않은 채, 즉 아직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쉽게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쉽게 ‘비정상’으로 낙인찍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이러한 성급한 낙인찍기와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 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학교와 교사, 그리고 부모의 관심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동 스스로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이다. 전문가 집단 간 상호 협의는 아동의 입장에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아동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학교와 지역공동체로부터의 접근이기 때문에, 아동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내 권리 구제의 경우 해당 학생의 권리 구제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 침해와 관련을 갖기 때문에 제도화된 구조에서, 전문가 집단의 참여하에 학생의 주장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다. 교육의 관점과 사회복지의 관점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스테드 등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학생인권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 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Stead et al., 2004: 43). 1998년부터 스코틀랜드 정부는 ‘퇴학 조치에 대한 대안’ (Alternatives to School Exclusion)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 간 상호연계(inter-agency cooperation)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학생의 퇴학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교 당국과, 사회복지사, 교육심리학자, 경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관련단체 등이 참여한다.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 간 협의체는 각각의 케이스에만 한정되어 운영되는 경우와 장기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스테드 등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월레스 시(Wallace City)처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양한 대화 창구를 유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와 일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때 좀 더 유연하고 혁신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했다.

“간단히 말하면, 존은 방화를 한 것 때문에 학교로부터 영구히 축출될 위험에 처해 있었고, 전문가 집단 간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가 연루된 세 번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나에게 분명한 것은 존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애정이라는 것이었다.....그것을 하기 위해서 [존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중지했다 (월레스 시티의 한 학교의 교장)” (Stead et al., 2004: 47).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중지한다는 것은 존을 퇴학시키지 않고, 화재 방지 공무원의 정기적인 방문을 받도록 하고, 존과 그의 가족에게 필요한 부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는 것인데, 전문가 집단 간의 장기적이고 개방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축적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지원하는데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다. 특정한 학생, 또는 케이스에 국한된 전문가 협의체(Douglasshire Council의 예)는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접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방된 협의체가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청소년담당 사회복지사(youth worker)가 우리들한테 왔습니다.....저는 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는 그냥 우리 옆에 앉더니 우리하고 게임을 하면서 같이 놀아주더라구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 그리고 저는 지도교사가 우리 그룹 안에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윌러스 시티의 루크)" (Stead et al, 2004: 48).

스코틀랜드는 1995년의 ‘아동 법’(the Children Act)과 1996년의 ‘아동 청문회 규칙’(the Children's Hearings Rule)을 통해 위에서 지적한 특정한 사안에 대한 문제 아동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아동청문회’를 제도화했다. ‘아동청문회’제도를 통해 보장된 아동의 절차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서면을 통해 청문회에 대해 사전에 공지 받을 권리 (아동 청문회 규칙, 1996 ,규칙 6)
2. 청문회의 모든 절차에 출석할 권리 (스코틀랜드 아동법 45조 1항)
3. 청문회를 하게 된 근거를 설명 받고 그것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할 권리 (스코틀랜드 아동법 65조 4항)
4.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 (아동 청문회 규칙 11 1항)
5. 청문회의 결정사항과 그것의 근거에 대해 들을 권리 (아동 청문회 규칙, 규칙 20 5항)
6. 결정사항과 그것의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아동 청문회 규칙 21 1항 b)
7. 청문회 결정에 대해 항소(appeal)할 수 있는 권리 (아동법 51조 1항)
8.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공지 받을 권리 (아동 청문회 규칙, 규칙 20 5항 c)
9. 감독(supervision) 요청에 대한 재검토의 권리 (아동법 73조)¹⁰⁾

제도와 제도 운영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괴리를 좁혀가는 과정이 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다. 스코틀랜드의 아동 청문회 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법규와 규칙에 의해 청문회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공지 받을 권리가 보장되었지만 그것은 부모의 권리이지 아동의 권리가 아니었다. 부모는 아동과 공지 받은 내용을 공유할 의무가 없다. 이것은 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첫 번째의 경우와는 상반된 방향에서, 1996년의 아동법에 의해 아동이 청문회장에 부모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할 때 부모를 청문회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아동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는 마치 우리가 단란한 가족인 것처럼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동작과 시선으로 나에게 가하는 압박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학대한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하죠;

저의 양아빠는 언제나 기침을 하곤 합니다. 저에게 경고를 하는 작은 기침요. 그는 청문회에서 그런 기침을 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Hallett and Murray, 1999: 37).

셋째, 서면으로 된 청문회의 이유와 절차, 그리고 아동의 권리의 공지가 여타의 정보나 지식이 함께 제공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종종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제공되는 정보가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적 전문용어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청문회의 패널들의 자질문제 (그들과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큰 시각차가 존재한다), 법률적 대리인을 세우는 데 따르는 문제 (법률적 대리인을 세우는 것은 아동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청문회 절차를 법률적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아동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절차적(procedural) 권리만을 보장한다고 실질적(substantive)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잘 알려진 사실을 확인해 준다. 권리는 실질적 자원과 서비스, 그리고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즉 권리는 자원과 정보, 그리고 교육을 통한 능력(capabilities)의 배양과 결합되어야 한다.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야 센(Amartya Sen)이 인권을 능력(capabilities)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아동 청문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평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 Hallett and Murray (1999: 35-36).

“저는 종종 우리가 자원과 관련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기관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무단결석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질려버린, 그러나 그것을 다룰 어떠한 자원도 가지고 있지 못한 학교와 같습니다;

어떤 제도도 지금의 청문회 제도처럼 제대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다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필요하지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을 때조차 그 누구도 적절한 자원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제도는 강화될 수 없다;

이것[아동 청문회]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제도이지만, 배분된 자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 잠재력은 극대화되지 않는다“ (Hallet and Murray, 1999: 49).

마이클 프리만의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자원의 배분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지 않으면 향상된 법적 틀을 창출하고 아동의 확장된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궁극적으로 아동 권리의 문제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문제로 해결된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는 편이 낫을 것이다” (Freeman, 1992: 61)

V. 감당할만한 교육

도덕적 시민의 육성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반드시 교육의 직접적 목표인 효율적 지식의 전달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화이트헤드와 클로우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방식은 자율적으로 조직된 소규모 그룹 토론이며 이러한 소규모 그룹은 생각(ideas)과 기술(skills)을 쉽게 공유하게 함으로써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한다. 학생들이 동료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들을 편안하게 하며(기존의 권력관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그들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얻어진 실천적 지식을 교과과정을 이해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은, 교사의 일방적 지식전달에 비해 학생들 스스로가 수업과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Whitehead and Clough, 2004: 220-221, 225).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토론하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나오는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때 가장 학습효과가 높다”
“그룹 안에서 더 잘 이해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Whitehead and Clough, 2004: 221)

학교가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학교의 일차적 목표는 지식의 전달이다. 그러나 지식의 전달에서조차 참여적, 민주적 방식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는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

브래디에 의해 보고된 아일랜드 최대의 아동보호조직인 버나도스(Barnados)의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적 교육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이니셔티브는 어른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학습방식과 내용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와 토론은 높은 출석률과 학습성으로 나타났다 (Brady, 2007). 이것은 교육을 권능부여(empowerment)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브래디의 주장처럼 근래에 유행하고 있는 소비주의적 행위(consumerist activities)와는 차별적이 것이다 (Brady, 2007: 37). 소비주의적 담론에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있을 뿐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능력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앨더슨은 국가적 차원의 교과과정 설정은 학습과정에서의 학생과 교사가 협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조직화한 학습(self-organized learning)과 놀이를 통한 실험(playful experiments)을 통할 때 가장 빠르게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Alderson, 1999: 189).

위의 주장은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모리(MORI, Market &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 영국의 두 번째로 큰 여론 조사기관)가 1998년 실시한

11-16세의 4,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the Campaign for Learning 이 의뢰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 방법을 보여준다. 절반 이상의 학생이 그룹을 통한 학습(learning in group)을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은 학습내용을 실제적인 것에 적용하는 방식(learning by doing practical things)이었다 (Osler and Starkey, 1998: 316-317).

위에서 언급된 참여적인 교육방법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교육이 시험을 위한 (즉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교육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드바인과 그의 동료들은 영국의 교육현실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테스트를 위한 교육(teaching to the test)은 교육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며, 교사와 학생이 미리 정해진 문제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쟁점과 기술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학교의 교과과정이 가진 범위와 활력을 축소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시험결과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성취와 적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사실을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 (Devine, et al., 2007: 58-59).

위의 비판적 논평에도 불구하고 영국 학생들이 받는 학습부담은 우리의 학생들에 비하면 가벼운 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글자 습득과 읽기 학습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의 에식스주에 위치한 켄달 초등학교 (Kendall Church of England Primary School)의 학생평가 자료에 근거했다).

영국의 읽기 교육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a-z까지의 알파벳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일상에게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사물의 이름, 본인의 이름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반복적으로 같은 문자를 여러 단어에서 확인함으로써 그 문자가 가진 음가와 다른 문자와의 조합 방식을 터득한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읽기 교재는 글자보다는 그림이 많은데, 보통 1장의 그림에 짧은 문장 하나가 전부이다. 그런데 그 문장이 세심한 고려에 의해 작성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별로 발전하지만, 초급 단계의 교재는 관사 a, 동사 is 등 기초적인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단계별 단어의 수준과 수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배려되어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모든 알파벳의 음가를 알게 되었을 때(1년 정도가 걸린다) a-z까지의 순서를 읽히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쓰기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상위권 학생들이 학습과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위권 학생이 기준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학생이 교사가 원하는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뒤쳐지는 학생을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모든 학습의 전제는 어린 학생들이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놀이와 학습의 결합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상호작용이 부재한 교육, 시험 위주의 교육의 위기가 거론되는 영국 교육제도의 단

면이 이러하다면, 우리의 교육은 어린 학생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의 더미들을,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그 어떤 고려도 없이,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VI. 개인과 공동체

학교는 의사결정능력(the capacity for decision-making)을 길러주는 곳이지만 중요한 결정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곳이라는 지적이 있다 (Morrow, 1999: 160; Alderson, 1999: 186). 앞에서 학생의 참여를 통한 학습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연구 보고를 인용했다. 오슬러와 스타키는 UN 아동권리협약의 29조 라항(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에 근거해 학습과정에서의 참여를 넘어 학교운영과 의사결정에의 참여로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Osler and Starkey, 1998: 314).

영국은 많은 경우 형식적으로 학생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와이즈가 그레이섬 학교(Graysham School)의 예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학생들은 학생협의회(school council)가 실질적인 정보가 결여된 상태에서 운영되며 협의대상에서 중요한 문제는 제외되고, 설사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해도 실행되는 것은 없다 주장한다(Wyse, 2001: 211-212).

교사들의 경우 학생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 경우 학교의 규율이 무너지고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들이 다양한 실천과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오슬러와 스타키는 일방적으로 제정된 규칙보다는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제정된 학교규칙이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한 프랑스 학교의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Osler and Starkey, 1998: 318). 또한 학생들의 출교조치가 감소하고 학교규율이 향상된 예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학교생활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시킨 학교들임을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한다 (Osler and Starkey, 1998: 320-321). 오슬러와 스타키에 의해 인용된 현직 교장선생님의 증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교운영과 관련된 결정권의 공유(power-sharing)는 초기에 상당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 괴롭힘(bullying)과 인종차별 같은 학교 내 문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Osler and Starkey, 1998: 323-324).

테일러와 그녀의 동료들은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초등학교에서의 토론을 통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중심의 교육이, 교사들의 우려(학생들이 어른들의 권위에 도전적이게 할 수 있다는)와는 달리, 급우들에 대해 더욱 관용적이고 상대를 존중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Taylor et al., 2001: 140).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동료학생이 중재자로 개입해서 서로 화해시키는 동료중재(peer mediation)는 도덕적 책무를 계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9-11세의 어린이들에게 중재의 원리를 소개하고 역할 놀이를 통해 그 원리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어린이들은 다툼을 목격하면 그것에 개입할 의미를 받아들여야 했다. 중재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한 어린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구든 놀이터에서 싸움을 하는 아이들을 발견하면, 나는 그곳으로 가서 실제로 싸우는 것인지 장난인지를 확인합니다. 저는 재가 중재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지만 만약 그들이 정말 싸우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중재를 원하는지의 여부를 물어봅니다” (Osler and Starkey, 1998: 322).

중재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

“일단 중재가 받아들여지면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야 한다.

갈등 당사자 1은 상황을 설명한다.

상황설명 중 그것을 중단시키거나 욕설을 하거나 타자를 잘못을 돌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중재자는 묘사의 요점을 정리해야 한다.

갈등 당사자 2가 상황을 설명하고 당사자 1의 경우와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중재자는 당사자 1에게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본다.

당사자 2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

중재자는 양방으로부터 제기된 문제의 목록을 작성하고 양방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요구한다.

양방은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구받는데 만약 합의에 이룬다면 문서형식의 합의문을 작성한다“ (Osler and Starkey, 1998: 323)

VII. 연대와 네트워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민적 자질의 육성은 교육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특히 학교 교육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교육은 토론을 통한 상호이해의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Devine, et al., 2007: 54-57). 권리에 대한 서구적 개인주의적 담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권리 그 자체도 개인이 아닌 연대(solidarity) 또는 관계적인 것(relative)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Morrow, 1999: 150-151, 166-167). 권리에 대한 어린이들 스스로의 의견을 연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타자와 분리된, 그리고 개별화된 자율적, 합리적 개인으로 행위하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서로 연관된 사회적 모델이라고 개념화될 수 있는 권리개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row, 1999: 166).

이러한 관계적 또는 사회적 모델의 권리개념에 근거한다면 교사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나 학교 행정담당자가 아니라 돌봄의 사회관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Northfield and Sherman, 2004: 292). 교실은 사회성(sociability)을 키워야 하는 공간인 것이다 (Northfield and Sherman, 2004: 293). 앞에서 누누이 지적한 민주적 시민의 양성은 학습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Northfield and Sherman, 2004: 295), 교실은 차이와 타자성을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이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는 장소인 것이다 (Northfield and Sherman, 2004: 296). 그러나 공동체를 통한 사회성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은 온전히 교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학급(역으로 말하면 교사의 증원)과 제반의 지원 시설 제공과 전문인력(교육심리학자, 의사 등등)의 협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뒤의 클리브스 학교의 사례는 학교, 그리고 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협조, 그리고 학부모(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교사의 역할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협력이 권장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경쟁 원리를 학교사회에 도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국은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다. 시장에서의 공급자로서의 교사,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학생이라는 담론이 학교의 재편을 주도하면서 교사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교사들은 교권의 침해를 자신들의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교사로서의 권위가 학생들로부터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에만 주목한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의 지지가 없는 교사의 지위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학생의 지위를 인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교사를 학생이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마디로 교사의 인권은 학생의 인권 신장 없이는 보장되

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 강하게 말하면, 교권은 학교안의 모든 결정이 학생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은 사회적이며 관계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학교당국으로부터의 자율성은 학생과 교사간의 자율적인 토론에 기반할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학생의’ 권리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뉴질랜드에서의 표본조사(학생과 교사의 권리에 대한 인식 비교)에 의하면 교사는 서비스와 자원의 제공(provision)과 보호(protection)에 관한 권리를 우선시하지만, 학생의 경우 참여(participation)의 권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Taylor, et al., 2001: 148). 이러한 차이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문화의 부족에 기인한다 (Taylor, et al., 2001: 153).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결정할 권리가 아니라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바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은 양자 사이의 차이를 긍정적 방향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 (Taylor et al., 2001: 140).

VIII. 사회권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소극적 권리라면 아동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는 적극적 권리이다. 물론 앞에서 지적했듯이 소극적 권리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의사반영이 없는 권리는 매우 제한된 것이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조차 매우 수동적으로 주어지거나 아예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있다.

이러한 적극적 권리 중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보장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드바인 등이 주장하는 바처럼,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우며 사회성을 익히고 자연생태와 자신들이 조화롭게 생존할 수 있다는 생태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Devine, at al. 2007: 56-57).

한국의 학교 현실과 비교하면 영국의 학교는 상대적으로 넓은 놀이공간과 녹지가 확보되어 있고 교과과정 또한 놀이와 결합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증가와 어린이 성추행범의 증가 때문에 방과 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와 지방정부,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이 요청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많은 도시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가에 차량 진입금지를 위한 캠페인, 또는 걸어서 등교하기 캠페인 등)¹¹⁾.

최근 몇 년 동안 영국에서는 학교급식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 중 하나였다. 2006년 교육-기술부는 ‘지속가능한 학교’(sustainable schools)에 관한 협의 문건 (consultation document)을 발간했는데, 그 중 음식과 음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모든 학교는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동물 복지에 대한 확고하게 근거하고, 지역의 공급자들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가능한 한) 현장에서 생산되고 준비된 건강하고, 지역적이며 지속가능한 음식과 음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Sharp, 2007: 16).

2006년 9월부터 정부에 의해 도입된 영양기준(nutritional standards)은 정크푸드 또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점심시간에 판매하는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아침의 쉬는 시간에 정크 푸드를 사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는데 어려움을

11) 최근 영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어린이 비만이다. 단순히 개인 또는 가족의 식습관 또는 유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많다. 패스트 푸드, 정크 푸드로 대표되는 거대 식품업체의 지배뿐만 아니라 개인소유의 차량의 증가로 도보와 자전거에 의한 이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원인중의 하나다. 자전거 타기 또는 걷기를 권장하는 각종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Cahill, 2007).

겪고 있다. 2007년 9월 부터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 그 결과를 알기에는 이르다.

문제는 정부의 위의 방침과 학교로의 시장원리 도입에 따른 자금압박, 그리고 이에 따라 외부음식 업체와 공급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이의 모순이다. 일단 현행 공급업자들은 학교에의 공급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크푸드가 아니면 이윤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이다(Sharp, 2007).

서로 모순된 정부의 정책결정 사이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로컬 푸드 운동 같은 환경운동과의 적극적 연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실제로 영국 각지에는 로컬 푸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클리브스 학교(the Cleves School)의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 사례>¹²⁾

런던의 뉴햄(Newham, 매우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보통 초등학교. 이 지역은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학교의 목표

모든 인종, 성, 계급의 개개 아동과 학습의 필요가 제대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며 가치 부여되는 환경의 조성

각각의 학생에게 그들의 공간을 제공하고 소속감을 길러주는 환경 조성

모든 아동과 어른들에게 긍정적인 자기존중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학생들에게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학습

교육방법

4개의 구획된 공간(wings)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은 120명 한도의 저학년 학생들에게 배정된다. 120명 학생에 대해 선생님을 비롯한 스텝은 12명. 각각의 구획된 공간은 4명의 교사 외에 7명의 보조교사를 두고 있는데, 특별한 돌봄의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돕는 역할을 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필요가 요구되는 학생에게 일대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집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방식의 팀 교육(team teaching)은 통합적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별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고립되어 있지만 개방적 형태의 팀교육 하에서는 비슷한 조건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다. 백인 학생들이 사이의 흑인 학생의 경우도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습을 스스로 조직하고 자연스럽게 그룹을 만든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은 쉽고 효율적으로 각각의 그룹을 만들었다. 각각의 윙의 12-13명의 교사는 팀으로 작업하는데, 교사들은 혼자 모든 영역의 교과과정을 준비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뉴햄지역 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y)은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 돕는 전문가들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도움을 준다. 때때로 자폐증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들처럼 교육심리학자 학교 간호사와 의사가 배치되어 있다.

각각의 구획된 공간은 중앙에 교실을 중심으로 네 개의 교실로 연결되어 있다. 각각

12) Alderson ed. (1999)를 참조했음.

의 교실은 가구를 많이 배치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능동적 학습

학생들은 매일 아침 하루의 계획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몇 개의 과목 중에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교실을 옮겨 다니며 그룹을 형성하고 학습에 참여한다. 만약 한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다른 교실로 옮기게 한다. 한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만 계속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역시 교사의 지도를 통해 수정하도록 한다.

모든 학습이나 활동은 둘 또는 그룹 별로 이루어진다.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쓰고 읽을 수 있을 뿐인데, 토론을 통해서 서로간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확장시키며 서로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스스로가 좀 더 분명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말하기는 대단히 중요한 학습의 방법으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서로 도울 수 있게 한다. 대화를 통해 학습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결론이다. 시끄러움을 인내할 수 있고 그러한 조건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컴퓨터는 개인이 아닌 조별로 배당되며 제시된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서로 순서대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통합교육의 원리

클리브스 학교는 통합적 교육을 목표로 하는데, 통합적 교육은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수행되고 발생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 원칙이다. 즉 조희나 점심시간, 도구나 가구등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접근 등 모든 면에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차이가 존중되고 고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종교교육에서는 세계종교에 대해 명확히 가르치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유사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클리브스 학교의 교육은 경쟁이 아닌 협력과 협동을 높이 평가한다. 개인이 아닌 그룹별 학습 활동은 협동의 원리를 실현하는 좋은 방법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모들 중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음악가, 예술가, 배우, 축구선수 등-이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의 역할을 하며 학교 공간은 성인 스포츠 클럽으로 활용되며, 교사가 특별한 필요가 요구되는 학생들의 부모와 개별적 면담을 할 수 있는 부모 면담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같은 공간은 여성 지원 그룹(the women's support group)과 학부모 지원 그룹(parents' support group)이 함께 사용한다.

참고문헌

Alderson, Priscilla (1999),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Schools: Do They Mean More Than 'Picking Up Litter and Not Killing Whal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7

Alderson, Priscilla ed.(1999), *Learning and Inclusion: The Cleves School Experience*, London: David Fulton Publishers Ltd

Allan, Julie and John I'Anson (2004), "children's Rights in School: Power, Assemblies and Assemblag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2

Attree, Pamela (2006), "The Social Costs of Child Poverty: A Systematic Review of the Qualitative Evidence," *Children & Society* 20

Brady, Bernadine (2007), "Developing Children's Participation: Lessons from a Participatory IT Project," *Children & Society* 21

Cahill, Michael (2007), "Why the U-Turn on Sustainable Transport?" *Draft for Capitalism, Nature, Socialism*

Davis, John and Nick Watson (2000), "Disabled children's Rights in Every Day Life: Problematising Notions of Competency and Promoting Self-Empower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8

Devine, Pat et al. (2007), "Feel Bad Britain,"

<http://hegemonics.co.uk/docs/feelbad-britain.pdf>

Freeman, Michael (2000), "The Future of Children's Rights," *Children & Society* 14

Hallett, Christine and Cathy Murray (1999), "Children's Rights and The Scottish Children's Hearings Syste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7

Lansdown, Gerison (1998), "Practice and Implementation: The Rights of Disabled Childre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6

MacArthur, Jude et al. (2007), "Disabled Children Negotiating School life: Agency, Difference and Teaching Practi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5

Morrow, Virginia (1999), "'We Are People Too: Children's and Young People's Perspective on Children's Rights and Decision-Making in Englan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7

Northfield, Shawn and Ann Sherman (2004), "Acceptance and Community Building in Schools Through Increased Dialogue and Discussion," *Children & Society* 18

Osler, Audrey and Hugh Starkey (1998), "Children's Rights and Citizenship: Some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School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6

Sharp, Graham (2007), "School Meals in England and the Contradictions of Capital, Draft for Capitalism, Nature, Socialism

Stafford, Anne et al. (2003), "'Having a Say: children and Young People Talk about Consultation," *Children & Society* 17

Stead, Joan et al. (2004), "Participation or Practice Innovation: Tensions in Inter-Agency Working to Address Disciplinary Exclusion from School," *Children & Society* 18

Taylor, Nicola et al. (2001), "Rights Important to Young People: Secondary Student and Staff Perspectiv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9

Whitehead, Joan and Nick Clough (2004), "Pupils, the Forgotten Partners in Education Action Zones,"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9(2)

Willow, Carolyne and Tina Hyder (2004), *It Hurts You Inside: Young Children Talk About Smacking*,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Wyse, Dominic (2001), "Felt Tip Pens and School Councils: Children's Participation Rights in Four English Schools," *Children & Society* 15

영국 정부 발행 문서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7),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Homophobic Bullying in Schools*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7), *The Equality Act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